

목 차

주주총회소집공고.....	1
주주총회 소집공고.....	2
I.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4
1.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4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4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6
2. 사외이사 등의 보수현황	8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9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9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9
III. 경영참고사항	10
1. 사업의 개요.....	10
가. 업계의 현황	10
나. 회사의 현황	11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16
□ 재무제표의 승인.....	16
□ 정관의 변경.....	88
□ 이사의 선임.....	89
□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107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111
□ 기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	111
※ 참고사항.....	113

주주총회소집공고

2020년 03월 10일

회 사 명 : 롯데케미칼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김 교 현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00
(전 화) 02-829-4114
(홈페이지) <http://www.lottechem.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상 무 (성 명) 조 성 택
(전 화) 02-829-4035

주주총회 소집공고

(제44기 정기)

주주님의 깊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 드립니다.

당사는 상법 제363조 및 제542조의 4와 정관 제19조에 의거 제44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 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20년 3월 25일(수), 오전 9시

2.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00
롯데월드타워 31층 오디토리움(Auditorium)

3. 회의의 목적사항

가. 보고사항

- 감사보고
- 외부감사인 선임보고
- 영업보고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나. 의결사항

- 제1호 의안 : 제44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포함) 승인의 건
- 제2호 의안 : 정관 변경의 건
-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사내이사 1명, 사외이사 5명, 기타비상무이사 1명)
- 제4호 의안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임의 건(총 2명)
- 제5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제6호 의안 :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 변경의 건

4. 주주총회 소집통지 공고사항 등의 비치

상법 제542조의4 등 관련법규에 따라, 주주총회 소집통지·공고사항 및 의결 권대리행사에 관한 사항을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lottechem.com>) 와 전자공시시스템에 게재 하고, 당사의 본점,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및 하나은행 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직접참석>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대리참석>

- 개인주주 : 위임장(주주 인감 날인), 대리인 신분증
- 법인주주 :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대리인 신분증

※ 위 사항이 충족되지 못한 경우에는 주주총회 입장이 불가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3월 10일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00
롯데케미칼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교 현

I.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1.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회차	개최일자	의안내용	사외이사 등의 성명						
			사외이사					기타비상주이사	
			박경희	김영수	김원하	박동석	조석	임병민	원종민
			(출석률 : 100%)	(출석률 : 100%)	(출석률 : 100%)	(출석률 : 81%)	(출석률 : 94%)	(출석률 : 100%)	(출석률 : 65%)
찬 반 여 부									
제1회	2019.01.28.	제1호 의안 : 이사회 의장 선임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해당 사항 없음 (신규선임)
		제2호 의안 :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제3-1호 의안 : LC USA 운영자금 차입에 대한 자금보증(안)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제3-2호 의안 : LC USA 자금보증 수수료 계약(안)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제2회	2019.02.12.	제1호 의안 : 제43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불참	찬성	찬성	
		제2호 의안 : 제43기 영업보고서(안)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제3호 의안 : 최대주주등과의 거래총액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제4호 의안 : 대표이사 성과급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제5호 의안 : HDO 합작 신규사업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제6호 의안 : 여수1공장 경관녹지 개발사업 계약공기 연장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제7호 의안 : LVE 운영 자금 확보를 위한 유상증자 참여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제8-1호 의안 : 롯데문화재단 거래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제8-2호 의안 : 아시아소사이머티 코리아센터 거래(안)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제9-1호 의안 : 기업 PR 컨설팅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제9-2호 의안 : 차이나플라스 2019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제9-3호 의안 : 그룹 스포츠 후원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제9-4호 의안 : 말레이시아 공항로 옥외광고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제9-5호 의안 : 로티로리제형관 시스템 관리 및 운영계약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제9-6호 의안 : 2019 롯데케미칼 웹사이트 유지운영 계약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제10-1호 의안 : 품질서버 구축(안)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제10-2호 의안 : 그룹 공통 시스템 사용 계약(안)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제10-3호 의안 : 월드타워 통합 전산실 이전 계약(안)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제10-4호 의안 : 월드타워 통합 전산실 관리 용역 변경 계약(안)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제10-5호 의안 : 주52시간 근로관련 시스템 추가 구축(기능추가)(안)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제10-6호 의안 : 정보시스템 업무 종합관리운영 계약(안)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보고사항]							
		2018년 컴플라이언스 활동 보고							
		2018년 광고 결과 보고							
제3회	2019.02.26.	제1호 의안 : LVE 운영 자금 확보를 위한 유상증자 참여 승인에 대한 변경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불참	찬성	찬성	
제4회	2019.03.05.	제1호 의안 : 제43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안)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제2호 의안 : 제43기 정기주주총회 회의 목적사항 결정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제3호 의안 : 대표이사 보수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제4호 의안 : POE-PJT 2 Year Spare parts 구매 계획(안)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제5호 의안 : 여수공장 BD/BTX/UC 증설, NC 분해로 및 GTG 1기 신설을 위한 EPC 계약 변경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제6호 의안 : 채용AI서비스 이용 계약(안)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보고사항]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보고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보고 2018 사업년도 회계 및 업무에 대한 감사보고서								
제5회	2019.03.18.	제1호 의안 : 계열회사(롯데글로벌로지스) 지분 매각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제6회	2019.03.27.	제1호 의안 : 대표이사 선임(안) 승인의 건 제2-1호 의안 : 이사 겸임(안) 승인의 건(대표이사 김교현) 제2-2호 의안 : 이사 겸임(안) 승인의 건(대표이사 임병연) 제3호 의안 : 사외이사추보추천위원회 위원 선임(안) 승인의 건 제4호 의안 : 내부거래위원회 위원 선임(안)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제7회	2019.04.11.	제1호 의안 : 2019년 회사채 발행(안)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LC상장 운영자금한도 지급보증 갱신(안) 승인의 건 제3호 의안 : 임원 보수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제8회	2019.05.14.	제1호 의안 : 내부거래위원회 규정 개정(안)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감사위원회 규정 개정(안) 승인의 건 제3호 의안 : 내부회계관리 규정 개정(안) 승인의 건 제4호 의안 : 롯데제과와의 공동 연구 계약 체결 승인의 건 제5호 의안 : HPC 프로젝트 BD/PE/PP License 공급 계약(안) 승인의 건 제6호 의안 : 4EOA 프로젝트 EPC 업체 선정(안) 승인의 건 제7호 의안 : 부산 국제 빌딩 매각 관련 컨설팅 계약(안) 승인의 건 제8호 의안 : 원격 업무지원 보안 시스템 교체 계약(안) 승인의 건 제9호 의안 : Maas(Material as a Service)용 텍스트 마이닝 분석 소프트웨어 도입 계약(안) 승인의 건 [보고사항] 신규 합작사업건 보고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불참	
제9회	2019.06.20.	제1호 의안 : 액화유류, PET 판매 계약(안)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LC UK 운영자금한도 지급보증 갱신(안) 승인의 건 제3호 의안 : 롯데지주 및 BU 인태리아공사 공동계약 변경(안) 승인의 건 제4호 의안 : HPC 프로젝트 지원 계약(안) 승인의 건 제5호 의안 : 롯데미래전략연구소와의 산업군 분석을 위한 컨설팅 용역 계약(안) 승인의 건 [보고사항] 투명경영위원회 결과 보고 전자증권제도 보고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해당사항 없음 (사임)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제10회	2019.07.15.	제1호 의안 : GS에너지 합작사업 투자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LVE 운영 자금 확보를 위한 유상증자 참여 승인의 건 제3호 의안 : 롯데첨단소재 지분 매입(안) 승인의 건 제4호 의안 : 예지정비, RPA, 내부회계 시스템 운영 장비 등의 구매를 위한 거래(안) 승인의 건 제5호 의안 : 반부패경영시스템(ISO37001)인증을 위한 반부패 방침 승인의 건 [보고사항] 투명경영위원회 결과 보고의 건 인니 크래커 사업 현황 보고 '19년 상반기 경영실적 보고(감사진)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제11회	2019.08.09.	제1호 의안 : LINE 프로젝트 지분 참여(안)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롯데정보통신과의 인력 파견 계약(안)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불참		불참
제12회	2019.08.22.	제1-1호 의안 : 롯데첨단소재와의 합병계약서 체결 승인의 건 제1-2호 의안 : 롯데첨단소재와의 소유조합병 반대 의사 통지 접수 를 위한 주주확정 기준일 결정 및 주주명부폐쇄 기간 설정의 건 제2호 의안 : 화력BU 공동업무 추진비 분담계약 변경(안) 승인의 건 제3-1호 의안 : 롯데첨단소재와의 합병 지원을 위한 IT 시스템 변경 구축(안) 승인의 건 제3-2호 의안 : 롯데첨단소재와의 합병 지원을 위한 IT 시스템 변경 구축을 위한 장소 임대(안)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불참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불참	

		제4호 의안 : IT 시스템 운영을 위한 장비 구매(안) 승인의 건 [보고사항] ISO37001 인증 관련 경영 검토 보고							
제13회	2019.09.26	제1호 의안 : 롯데미래전략연구소와의 산업군 분석을 위한 컨설팅 용역 계약(안)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선택적 복지 향상을 위한 복지포인트 계약 업체 변경 승인의 건 제3호 의안 : 그룹 공용 회의실 사용료 분담 약정서 체결(안) 승인의 건 [보고사항] 동반성장지수 개선(안) 보고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불참
제14회	2019.10.11	제1호 의안 : LC UK 주식매매계약 체결의 건 제2-1호 의안 : 4EOA 프로젝트 예산 증액 승인의 건 제2-2호 의안 : 4EOA 프로젝트 EPC 계약 변경 승인의 건 제3-1호 의안 : WAN(Wide Area Network) 가속기 및 QoS(Quality of Service) 장비 교체 제3-2호 의안 : 웹 시스템 운영 위한 보안장비 교체 [보고사항] 투명경영위원회 결과 보고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불참
제15회	2019.11.29	제1호 의안 : 합병 승인 주주총회 갈음 이사회 결의 제2호 의안 : LC UK 증자의 건 제3호 의안 : HPC 프로젝트 시설대 자금보충약정 체결의 건 제4호 의안 : 비업무용자산(국제빌딩) 매각 [보고사항] 투명경영위원회 결과 보고의 건 W&L Call Option 행사에 따른 LAOC 지분 매각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제16회	2019.12.19	제1호 의안 : 2020년 임원 승진(안)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2020년 경영계획(안) 승인의 건 제3호 의안 : 조직 및 업무분장 규정 개정(안) 승인의 건 제4호 의안 : 2020년 운영자금 한도(안) 승인의 건 제5호 의안 : 외화차입금 만기연장 검토(안) 승인의 건 제6-1호 의안 : 보상위원회 신설 및 규정 제정(안) 승인의 건 제6-2호 의안 : 임원보수규정 개정(안) 승인의 건 제6-3호 의안 : 이사회규정 개정(안) 승인의 건 제7-1호 의안 : LVE 시설대 상환을 위한 유상증자(안) 참여 승인의 건 제7-2호 의안 : LVE 시설대 Refinancing을 위한 자금보충약정(안) 체결 승인의 건 제8호 의안 : 여수공장 인프라 FEED 업체선정(안) 승인의 건 [보고사항] 투명경영위원회 결과 보고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위원회명	구성원	활 동 내 역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여부
감사위원회	위원장 박경희 위 원 김철수 위 원 김윤하	2019.03.05.	- 보고 사항 1) 2018년 기말 감사 결과 보고 (한영회계법인) 2)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보고 - 부의 사항 1)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서 2) 2018사업년도 회계 및 업무에 대한 감사보고서 3) 내부감시장치의 가동현황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의견서	가결 (전원출석 전원찬성)

		2019.05.10.	- 보고 사항 1) 2019년 1분기 검토 결과 보고 (한영회계법인) 2) 내부회계관리제도 재구축 3) 내부회계관리제도 연간 운영 계획 - 부의 사항 1) 감사위원장 선임의 건 2) 내부회계관리 규정 개정(안) 승인의 건 3) 감사위원회 규정 개정(안) 승인의 건	가결 (전원출석 전원찬성)
		2019.08.09.	- 보고 사항 1) 2019년 반기 검토 결과 보고 (한영회계법인) 2)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평가 보고	- (전원 출석)
		2019.11.07	- 보고 사항 1) 2019년 3분기 검토 결과 보고 (한영회계법인) 2) 내부회계관리제도 중간 평가 결과 보고	- (전원 출석)
		2019.11.29.	- 보고 사항 1) 지정 감사인 계약 진행 사항 보고	- (전원 출석)
		2019.12.19.	- 부의 사항 1) 지정 감사인 계약 사항 승인	가결 (전원출석 전원찬성)
투영경영위원회 (구 내부거래위원회)	위원장 김철수 위 원 박경희 위 원 김윤하	2019.02.11.	- 부의 사항 1) 최대주주등과의 거래총액 승인(안) 2) 기업 PR 캠페인을 위한 광고 대행 계약(안) 3) LVE 운영 자금 확보를 위한 유상증자 참여(안) - 보고 사항 1) 차이나플러스 2019 승인의 건 2) 그룹 스포츠 후원(롯데디자인츠, LPGA광고, KPGA광고, 김효주 후원) 3) 말레이시아 공항로 옥외광고 4) 로티로리체험관 시스템 관리 및 운영계약 5) 2019 롯데케미칼 웹사이트 유지운영 계약 6) HDO 합작 신규 사업 7) 전산시스템 사용, 관리, 구축을 위한 이사 등과 회사간의 거래(안)	심의함 (전원 출석)
		2019.02.26.	- 부의 사항 1) LVE 운영 자금 확보를 위한 유상증자 참여 승인에 대한 변경 승인의 건	심의함 (전원 출석)
		2019.03.18.	- 부의 사항 1) 계열회사(롯데글로벌로지스) 지분 매각(안)	심의함 (전원 출석)
		2019.05.10.	- 부의 사항 1) 4EOA 프로젝트 EPC 업체 선정(안) - 보고 사항 1) 내부거래위원회 규정 개정(안)	심의함 (전원 출석)
		2019.06.20.	- 부의 사항 1) 백학음료, PET 판매 계약(안) 승인의 건 2) 2019년 재산종합보험 갱신(안) 승인의 건	가결 (전원출석 전원찬성)
		2019.07.15.	- 부의 사항	가결

			1) LVE 운영 자금 확보를 위한 유상증자 참여 승인의 건	(전원출석 전원찬성)
		2019.10.10.	- 부의 사항 1) 4EOA 프로젝트 EPC 계약 변경(안)	가결 (전원출석 전원찬성)
		2019.11.29.	- 부의 사항 1) LC UK 유상증자 승인의 건	가결 (전원출석 전원찬성)
		2019.12.19.	- 부의 사항 1) LVE 시설대 상환을 위한 유상증자 참여 승인의 건 2) LVE 시설대 Refinancing을 위한 자금보충약정 체결 승인의 건	가결 (전원출석 전원찬성)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위원장 임병연 위 원 박용석 위 원 조 석	2019.03.05.	- 부의 사항 제1호 의안 : 사외이사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제2호 의안 : 사외이사 후보 추천의 건	가결 (전원출석 전원찬성)

※ 보상위원회는 당사 이사회 규정에 근거, 2019년 12월 19일에 이사회 의결을 통하여 신설되었으나, 2019년 위원회 개최는 없음.

2. 사외이사 등의 보수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인원수	주총승인금액	지급총액	1인당 평균 지급액	비 고
사외이사	5	44,100	353	71	
기타비상무이사 (비상임이사)	1		-	-	

※ 상기 사외이사 및 기타비상무이사 인원수는 공시기준일 현재 인원수 기준입니다.

※ 주총승인금액은 사내이사를 포함한 등기이사 및 미등기임원 전원의 보수한도 총액입니다

.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거래종류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	-	-	-	-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 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종류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현대케미칼(주) (해당 상장회사의 특수관계인(관계기업))	원재료 구매 및 제품 판매	2019.01.01~ 2019.12.31	12,659	13.8

*해당 비율은 별도 매출액 기준임

III. 경영참고사항

1. 사업의 개요

가. 업계의 현황

(1) 산업 특성

석유화학산업은 나프타와 천연가스를 원료로 하여 에틸렌, 프로필렌 등의 올레핀제품과 벤젠, 톨루엔, 자일렌 등의 방향족계 제품 및 이들 기초유분을 원료로 하여 합성수지, 합섬원료, 합성고무 등 각종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기초소재 산업으로 자본집약적 대규모 장치 산업입니다.

가) 기초유분 부문

기초유분 제품은 납사 분해설비를 통해 생산되는 에틸렌, 프로필렌, C4유분, 벤젠, 톨루엔 등의 제품과 M-X를 원료로 하는 P-X 등의 제품을 말합니다. 이 제품을 다시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의 폴리머 제품과 스타이렌모노머(SM), 부타디엔(BD), 에틸렌글리콜(EG), 고순도 이소프탈산(PIA), 고순도테레프탈산(PTA) 등의 모노머 제품의 주원료로 사용하며, 잉여제품 및 부산물 등을 판매합니다.

나) 모노머 부문

모노머 제품은 납사 분해설비를 통하여 생산되는 기초유분을 원료로 생산되는 액체상태의 제품입니다. 합성수지, 합섬원료, 합성고무, 기타 화학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며, 탱크로리와 선박을 이용하여 주로 화학업체에 판매 되고 있습니다. 제품의 시황은 수요와 공급 외에도 유가, 나프타 가격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다) 폴리머 부문

폴리머 제품은 기초유분을 원료로하여 생산되는 고체상태의 제품이며 주로 플라스틱가공업에 사용되는 원료입니다. 합성수지는 가공을 통하여 생활용품, 포장재, 산업재, 가전제품, 자동차부품 등 다양한 산업에 필요한 원료로서, 모노머와 마찬가지로 나프타 가격과 경기변동에 따라 시황 변동성을 갖고 있습니다.

(2) 산업의 성장성 및 경기변동의 특성

석유화학산업은 전방산업(전기, 전자, 자동차, 기계 등)에 기초소재를 제공하는 산업으로 매년 글로벌 에틸렌 수요는 약5~6백만톤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석유화학산업의 사이클은9 ~ 10년 정도이며, 경기변동에 민감하고 GDP 성장률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3) 경쟁요소

범용제품 위주로 되어 있는 기존의 석유화학 산업에서는 규모의 경제와 가격 경쟁력이 중요한 경쟁요소이며, 점차 고부가가치 제품의 개발로 제품생산 기술과 품질 경쟁력이 중요한 경쟁요소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4) 자원조달상의 특성

석유화학산업은 에탄계 가스원료나 나프타를 기초원료로 사용하고 있으며, 미국이나 중동 등의 산유국에서는 에탄계 가스원료의 사용 비중이 높지만 국내 석유화학업체들은 기초원료로 거의 전량 나프타를 사용하고 있는 바, 기초원료인 나프타는 국내의 정유업체나 해외에서 수입을 통해 조달하고 있으며 나프타의 수급이나 가격, 원유가, 환율 등에 따라 경쟁력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관련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

1970년부터 한시적으로 제정/시행해 오던 '석유화학공업 육성법'이 1986년 '공업발전법'의 발효로 폐지됨에 따라 투자 자유화의 여건이 조성되었으며, 1995년 이후 설비투자가 완전히 자유화되어 업계자율에 맡겨지게 되었습니다.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가) 영업개황

미중 무역분쟁 장기지속에 따라 세계 수요 성장의 둔화되고, 미국과 중국의 석유화학제품 공급 증가로 업황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급 증가는 주로 미국의 셰일가스 기반 신증설과 중국 설비의 증가로 2023년까지 지속될 전망입니다.

i) 모노머 부문

2019년 EG 시황은, 전년에 이어 약세 기조 지속되었습니다. 상반기 중국 춘절 연휴 후 수요 개선되며 가격 상승하였으나, 중국 로칼 CTMEG 업체들의 공격적 가동으로 중국내 연안재고 증가하며 가격 약세 전환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9월말 사우디 석유설비 피폭 영향으로 일시적으로 가격 급등하였으나 예상보다 빨리 가동 정상화 되었고, 수요 성장세 둔화 및 MEG 신규 증설 물량 출회 우려감으로 시장가격 재차 하락하였습니다.

EOA의 경우, 국내 건설 수요 부진에도 불구하고, 수출 수요 견조로 전년에 이어 양호한 시황을 보였습니다. 상반기 경쟁사 가동차질에 따른 공급 감소로 시황 강세보였으나, 하반기 들어,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중국 수출확대 정책으로 저가 중국산과의 수출 경쟁심화되며, 보합세 전환하였습니다.

BD의 경우, 1분기 중국지역 유도품 저율가동에 따른 수요감소로 시황약세를 보였으나, 2분기 국내 일부 Maker들의 정기보수기간 파업에 따른 Cracker 재가동 지연, Cracker Trouble영향으로 시황 반등하였습니다. 3분기는 동남아 정기보수 및 유럽 Cracker Trouble에 따른 Deep-sea 유입 감소로 시황 강보합세를 나타냈으나, 4분기 들어와 유럽 유도품 업체의 정기보수 이후 재가동 지연에 따른 Deep-sea 유입 증대로 국제가 급락하였습니다. 그러나 11월경 미국 TPC Port Neches 공장 (BD 430KTA) 화재에 따른 미주지역 공급 감소 영향으로 국제가는 소폭 반등 후 보합세를 보였습니다.

SM의 경우, 상반기 미-중 무역분쟁 심화 및 6월 관세 부과 등으로 중국 유도품(PS, ABS) 시황은 악화됐으나, 한국 중심 동북아 지역 T/A 집중과 국내 동종사의 Trouble에 따른 한국 공급 타이트로 국제가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3분기 공급 안정 및 미-중 무역협상 난항에 따른 중국 유도품 시황 악화로 국제가는 약세로 전환하였습니다. 특히, 4분기 들어 중국 내 대규모 신증설 물량 출회 우려 등 수요 대비 공급 우위로 국제가는 큰폭으로 하락했으나, 12월 원료가 강세 및 중국 신증설 가동 지연으로 국제가는 소폭 반등 후 보합세를 보였습니다.

ii) 폴리머 부문

2019년 4Q는 납사 등 원료가가 보합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사 폴리머 제품 또한 약보합세 시황이 지속되었습니다.

국내 시장의 경우 PE 할당관세가 전년과 동일하게 적용됨에 따라 저가 수입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가격 하락을 초래하였습니다. 특히, LDPE/LLDPE 제품뿐만 아니라 HDPE까지 수입량이 증가되며 내수 시장 가격의 약세를 주도하였습니다. 또한 PP 국내 신증설 물량의 영향으로 인한 공급 과잉으로 시장 가격의 약세는 불가피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국내 경기의 침체로 수요는 여전히 부진한 채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국외 시장의 경우 중국 및 미국 무역 분쟁의 장기화 뿐만 아니라 사우디 석유 시설 피습 등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구매 심리가 악화되어 시장은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중국, 아시아 등 역내 신증설 물량의 출회로 경쟁이 심화되고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전방산업의 침체로 폴리머 시장은 전반적으로 고전을 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국내를 포함하여 전세계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환경규제 정책에 따라 석유화학 산업의 성장성이 다소 정체될 가능성이 있으며, 최근에는 국내 정유사까지 폴리머 사업에 뛰어들면서 공급 증가가 예상되어, 국내뿐 아니라 세계 경제의 저성장 환경 하에서 석유화학 산업은 여러가지 도전적인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고정적인 유통망을 확보하여 범용 제품의 안정적 판매를 유지하고 또한 중장기적으로 경쟁력 있는, 시장 선도적인 특화 제품의 개발 및 판매를 확대하여 수익 창출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노력은 어려운 영업 환경을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수익 창출 모델을 구축해가는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나) 공시대상 사업부문의 구분

당사 및 종속회사의 사업부문별 현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대상회사	주요생산품목	주요고객
기초 유분	롯데케미칼(주), Lotte Chemical Titan Holding Berhad (말레이시아), Lotte Chemical USA Corp.	에틸렌, 프로필렌, 벤젠, 톨투엔, 파라자일렌, 올소자일렌 등	국내 제조업체 및 국외 제조업체
모노머 부문	롯데케미칼(주), Lotte Chemical Titan Holding Berhad (말레이시아), Lotte Chemical (Jiaxing) Corp.(중국), Lotte Chemical Pakistan Limited (파키스탄), Lotte Chemical USA Corp.	스타이렌모노머, 부타디엔, 에틸렌 옥사이드, 에틸렌옥사이드, 글리콜, 고순도이소프탈산, 고순도 테레프탈산, 메틸메타크릴레이트 등	국내 제조업체 및 국외 제조업체
폴리머 부문	롯데케미칼(주), 롯데첨단소재(주), 케이피캠텍(주), 삼박엘에프티(주), 데크항공(주), Lotte Chemical Titan Holding Berhad (말레이시아), Lotte Chemical Trading(Shanghai) Corp.(중국), Lotte Chemical Engineering Plastics(Jiaxing) Co., Ltd.(중국), Lotte Chemical Engineering Plastics(Hefei) Co., Ltd.(중국), Lotte Chemical Alabama Corp.(미국)	고밀도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저밀도 폴리에틸렌,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선형저밀도 폴리에틸렌, 폴리카보네이트, ABS, EPS, LFT, EPP 등	국내 제조업체 및 국외 제조업체
기 타	롯데케미칼(주), 케이피캠텍(주), 데크항공(주),	임대사업, 파견 용역 등	

(2) 시장점유율

(단위: 천톤)

주요제품	당사 CAPA'	주요경쟁사 CAPA'		비 고
HDPE	630	대한유화	530	-
LLDPE	290	LG화학	456	-
PP	1,100	폴리미래	730	-
EG	1,130	대한유화	200	-
PTA	600	한화종합화학	2,000	-
PX	750	한화토탈	2,000	-
PET	520	TK 케미칼	218	-
ABS	670	LG화학	950	-
PC	460	LG화학	170	-

주1) 한국석유화학협회 자료 참조

(3) 시장의 특성

합성수지 및 합섬원료 등의 제품을 가공성형하여 완제품을 생산하는 국내·외 가공성형업체를 주시장으로 하여 판매 및 영업활동을 하고 있으며, 석유화학의 기초원료인 나프타의 수급 및 가격 변동에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석유화학산업은 대표적인 보통재(Commodity) 산업으로 경기변동형(Cyclical) 및 Globalized된 산업 특성을 가지고 있는 바, 석유화학산업이 경기변동을 갖게 되는 주요 원인은 수요·공급 상황에 있습니다. 제품별 수요의 증가량과 생산능력의 증가량 사이에는 반복적인 불일치가 발생하기 쉬우며 수요 증가량에 비하여 공급량이 작을 때는 산업의 수익성이 상승하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수익성이 하락하는 경향을 갖습니다. 또한 석유화학산업은 특정 국가 또는 지역의 경쟁 요소 보다는 Global 산업환경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석유화학산업이 최종 제품이 아닌 재료를 공급 하는 특성을 갖고 있으며 지역간에 운임 등을 고려한 가격 차이 이외에는 제품 물성 등에서 차별화 하기 어려운 보통재 산업의 특성을 갖기 때문입니다.

또한 석유화학산업은 대규모 설비투자를 필요로 하는 대표적인 장치산업의 하나이므로 이로 인해 신규사업자의 시장진입이 쉽지 않으며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이 매우 중요한 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 기초유분 부문

당사 및 당사 자회사인 Titan에서 납사를 주원료로 하는 에틸렌, 프로필렌, 벤젠, 톨루엔 등의 기초유분 제품과 M-X를 주원료로 하는 P-X, 벤젠 등의 기초유분 제품을 생산하여 대부분 당사의 모노머, 폴리머 제품의 주원료로 사용하며 잉여제품 및 부산물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나) 모노머 부문

모노머 제품은 기본적으로 제품물성의 차별화가 어려운 제품으로 순도 등의 일정한 물리적 특성을 만족시키면 가격과 납기가 가장 중요한 경쟁요소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노머 제품은 대부분 액체 제품이 많아 운송 및 저장이 자유롭지 않고, 특히 에틸렌과 부타디엔 등 운송을 하기 위해서는 압력과 온도 유지를 위한 특수 설비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어 지역간 가격 차이가 커질 수도 있고 운송이 불가능한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모노머 제품은 안정적인 판매처 확보가 매우 중요하여 폴리머 제품에 비해 장기계약 등으로 안정적인 판매처를 확보해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 폴리머 부문

폴리머 제품은 모노머(단량체)를 중합하여 생산하는 제품으로 대부분 펠렛 또는 파우더 형태의 고체 제품입니다. 당사는 석유화학산업의 대표적인 폴리머 제품인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폴리카보네이트(PC)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폴리머 제품은 일반적 석유화학 제품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나 모노머와 달리 제품에 다양한 Grade가 존재하여 실질적으로는 다른 제품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또한, 각각의 제품은 그 용도에 따라 다양한 석유화학 제품의 원료로 사용되고 있고, 가격도 시장 내에서 다르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노머 제품에 비해 운반과 보관이 용이하여 전세계로 수출이 가능하며 재고 운용의 탄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에서 제품의 경쟁이 매우 치열하여, 일부 범용 제품을 제외하고는 단순한 가격 경쟁으로 시장을 확보하기는 쉽지 않으며 고객의 Needs 및 용도를 만족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경쟁 요소입니다. 사회가 발전해 감에 따라 고객의 Needs는 더욱 다양해지고 수준이 높아 지고 있으며, 그런 시장의 요구에 맞는 제품을 개발함으로써 미래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원료 가격 변동에 따라 수익이 직접 영향을 받는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4)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가) 미국 에탄 크래커 합작사업

미국 세일가스 기반 에탄크래커 설비투자를 위해 롯데케미칼과 美 Westlake Chemical社('16년 8월 Westlake社는 당사의 기존 파트너사인 Axial社를 인수)와 합작계약을 체결하여 사업 추진 (19년 4분기말 현재 당사, Westlake社 지분구조 53.23:46.77임). 해당 사업을 통해서 확보한 저가의 에틸렌을 활용한 에틸렌글리콜 사업은 당사 단독으로 추진 함.

- 투자목적물 : 에탄크래커(에탄을 원료로 하여 에틸렌생산), 에틸렌글리콜 생산설비
- 사업위치 : 미국 루이지애나주
- 주요제품 : 에틸렌(100만톤/년), 에틸렌글리콜(70만톤/년)
- 총사업비 : 약 USD 31억
- 당사 투자금액 : 약 USD 7.7억

(자회사 LOTTE-Chemical Titan Holding Berhad. 투자금액 USD 5.1억 미포함)

- 투자기간 : 2014년 ~ 2018년 (에탄크래커 2019년 8월 상업생산, EG 2019년 5월 상업생산)
- 예상효과 : 미국 공장 상업 가동으로 롯데케미칼 에틸렌 총 생산 규모는 연간 약 450 만톤으로 늘어났으며, 원료, 생산기지 및 판매지역 다변화를 통해 당사의 장기적인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시장의 주요 특성, 규모 및 성장성 : 에틸렌 제품가격은 주 원료인 원유기반 납사의 가격에 연동되어 있어, 저가 에탄 기반 에틸렌 제조 업체가 납사 기반 에틸렌 제조업체 보다 경쟁력을 유지할 것으로 보임. 에틸렌글리콜은 최대 수입국인 중국을 중심으로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나) 여수 PC 증설 사업

여수 PC 공장을 연산 11만톤 증설하는 사업임.

- 투자목적물 : PC(폴리카보네이트) 증산 설비
- 사업위치 : 한국 여수
- 주요제품 : PC(11만톤/년)
- 총사업비 : 3,675 억원(울산Meta-Xylene 증설 사업 포함)
- 투자기간 : 2017년 ~ 201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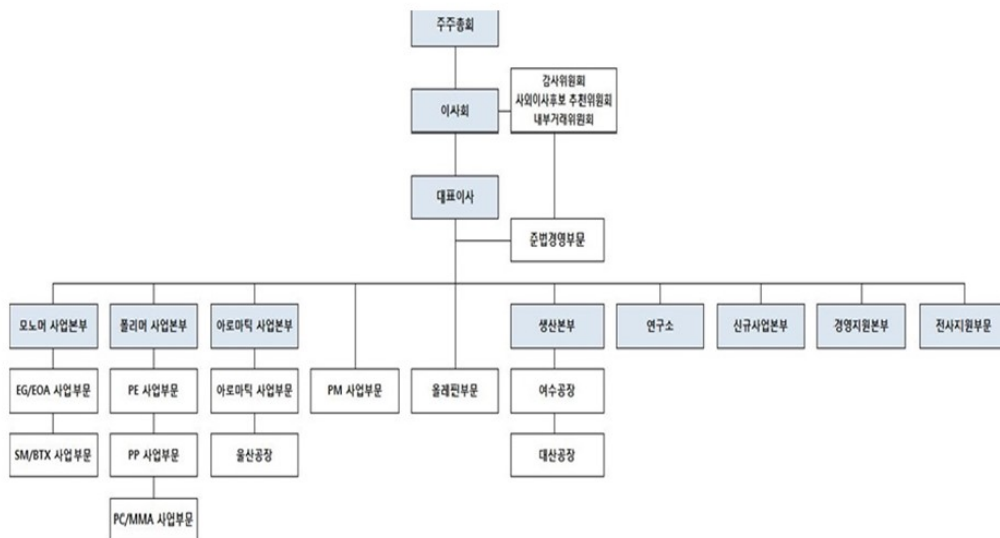
- 예상효과 : 2020년부터 연간 2,900억원의 매출증대 예상. 롯데케미칼의 이번 PC 공장 증설은 규모의 경제 실현을 통해 원가경쟁력을 확보하여, 수익성을 극대화 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시장의 주요 특성, 규모 및 성장성 : 글로벌 수요의 40%를 차지하는 최대 시장인 중국 시장은 연평균 4%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신증설 프로젝트가 여러 건 추진 중에 있으나, 단기간 내에 중국 PC 공급 부족이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 다) 울산 Meta-Xylene 증설 사업
- 당사 PIA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안정적 원료 조달을 위해 울산공장에 Meta-Xylene(MeX) 20만톤/년 증설을 추진 완료함.
- 투자목적물 : Meta-Xylene공장 증설
 - 사업위치 : 한국 울산
 - 주요제품 : Meta-Xylene(20만톤/년)
 - 투자기간 : 2017년 ~ 2019년
 - 예상효과 : MeX (Meta Xylene)는 고수익 제품인 PIA(Purified Isophthalic Acid)의 원료가 되는 제품으로서, 롯데케미칼은 세계 1위 PIA 생산 규모를 기록 중에 있으나, 원료 부족으로 약 70% 수준의 가동율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MeX 공장 증설로 통해 안정적인 원료 공급과 PIA시장 경쟁력 강화가 예상되어, 세계 1위의 PIA 공급업체로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할 것으로 기대 됨
 - 시장의 주요 특성, 규모 및 성장성: PIA(Purified Isophthalic Acid)는 PET, 도료, 불포화수지 등의 원료로 쓰이는 제품으로, 전 세계에서 7곳의 업체만이 생산하고 있는 고부가 제품임
- 라) 울산PIA 증설 사업
- 세계 1위의 PIA(Purified Isophthalic Acid, 고순도이소프탈산) 공급업체로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제품의 증산(기존 46 → 84만톤/년) 설비 구축을 추진중 임.
- 투자목적물 : PIA 공장 증설
 - 사업위치 : 한국 울산
 - 주요제품 : PIA(38만톤/년 증산)
 - 총사업비 : 500억원
 - 투자기간 : 2018년 ~ 2020년
- 마) HDO 합작 신규사업
- 2014년 국내 정유사인 현대오일뱅크와 혼합자일렌 및 경질납사 생산을 위해 설립한 합작회사 현대케미칼을 통하여 에틸렌 공장 및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등의 석유화학 콤플렉스 건설에 투자하는 신규 합작사업임.
- 투자목적물 : 에틸렌 공장(납사 및 탈황중질유, C3LPG를 원료로 에틸렌 생산), 부타디엔,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생산 설비
 - 사업위치 : 한국 대산
 - 주요제품 : 폴리에틸렌(85만톤/년), 폴리프로필렌(50만톤/년)
 - 당사 투자금액 : 2,960억원(지분율 : 40%)
 - 투자기간 : 2019년 ~ 2021년
 - 예상효과 : 기존 에틸렌 공장 원료인 납사보다 저렴한 탈황중질유(원유를 정제하고 남은 정유 잔사유)를 기반으로 에틸렌을 생산하여 원가 경쟁력 우위를 확보하는 것은 물론, 롯데케미칼은 미국과 중앙아시아 에탄 크래커 사업, 동남아 납사 크래커 사업과 더불어 국내에 대규모 정유 잔사유 크래커 사업에 투자함으로써 원료 다변화 및 지역 거점 강화를 도모.
 - 시장의 주요 특성, 규모 및 성장성 : 납사보다 저렴한 탈황중질유를 기반으로 한 원가 경쟁력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이익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됨.

바) GS에너지 합작 신규사업

당사 PC제품의 안정적인 원료 확보 및 C4 유분 사업 확대를 위해 GS에너지와 추진하는 신규 합작사업임. 원료는 GS에너지가 자회사인 GS 칼텍스를 통해 프로필렌, 벤젠, C4유분을 합작사에 공급하고, 합작사는 BPA 및 C4 유분 제품 생산할 예정임.

- 투자목적물 : BPA 및 C4유분 제품 생산 설비
- 사업위치 : 한국 여수
- 주요제품 : BPA연간 20만톤, Phenol 35만톤, Acetone 22만톤, C4유분 제품(연간 BD 9만톤, TBA 7만톤, BN-1 4만톤, MTBE 1.5만톤)
- 당사 투자금액 : 1,632억원(지분율 : 51%)
- 투자기간 : 2020년 ~ 2023년
- 예상효과 : PC제품의 생산 원료인 BPA를 합작사로부터 공급받아 PC의 가격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 기존의 C4유분 제품 사업을 확장.
- 시장의 주요 특성, 규모 및 성장성 : PC 사업의 수직계열화 구축 및 C4 유분 제품의 생산 능력 증대를 통한 지속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됨.

(5) 조직도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재무제표의 승인

가.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 Ⅲ. 경영참고사항의 1. 사업의 개요를 참조하시기 바람.

나. 해당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 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 · 자본변동표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 · 현금흐름표

■ 연결 재무제표

- 연결재무상태표

연 결 재 무 상 태 표

제 44(당) 기말 2019년 12월 31일 현재

제 43(전) 기말 2018년 12월 31일 현재

롯데케미칼 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단위 : 원)

과목	제44(당) 기말		제43(전) 기말	
자 산				
I. 유동자산		7,220,858,878,213		8,143,917,538,954
1. 현금및현금성자산	1,351,954,868,848		1,329,974,466,103	
2. 단기금융상품	1,606,579,519,102		3,306,356,089,721	
3.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843,603,427,108		61,228,839,825	
4.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34,810,000		4,544,530,000	
5. 매출채권및기타채권	1,512,052,951,782		1,536,464,504,902	
6. 재고자산	1,679,720,619,364		1,777,344,107,136	
7. 금융리스채권	138,598,084		138,598,084	
8. 당기법인세자산	45,549,391,256		23,703,051,222	
9. 기타금융자산	26,655,588,650		31,091,183,088	
10. 기타유동자산	94,932,222,007		73,072,168,873	
11. 매각예정비유동자산	59,636,882,012		-	
II. 비유동자산		12,822,246,278,915		12,655,221,294,150
1. 장기금융상품	67,512,500,000		67,512,500,000	
3.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2,681,475,011		10,477,026,362	
4.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52,528,464,045		105,494,703,734	
5. 금융리스채권	2,634,857,432		2,761,874,442	
6. 관계기업투자	2,036,156,543,768		1,610,446,273,728	
7. 공동기업투자	1,025,578,345,526		990,502,713,594	
8. 유형자산	7,505,115,476,923		8,036,093,695,375	
9. 사용권자산	282,945,728,094		-	
10. 투자부동산	50,738,229,837		112,015,364,493	
11. 영업권	672,123,719,852		723,796,856,918	
12. 기타무형자산	1,052,988,414,792		929,231,047,968	
13. 기타금융자산	21,100,868,512		21,961,882,770	

14. 기타비유동자산	9,308,643,780		12,351,445,832	
15. 이연법인세자산	40,833,011,343		32,575,908,934	
자 산 총 계		20,043,105,157,128		20,799,138,833,104
부 채				
I. 유동부채		2,740,030,326,653		3,961,420,261,244
1. 매입채무및기타채무	1,213,444,206,257		1,102,408,993,149	
2.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부채	4,380,487,916		223,020,520	
3. 차입금및사채	1,179,502,553,224		2,185,774,111,188	
4. 유동성금융리스부채	25,028,253,981		-	
5. 당기법인세부채	30,713,058,241		369,321,658,376	
6. 기타금융부채	86,904,570,086		126,034,288,844	
7. 기타유동부채	176,048,308,768		168,474,654,674	
8. 충당부채	24,008,888,180		9,183,534,493	
II. 비유동부채		3,249,944,438,951		3,293,391,331,347
1.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부채	10,148,669,271		43,310,577,157	
2. 차입금및사채	2,322,906,756,552		2,600,624,849,061	
3. 비유동성금융리스부채	104,133,223,144		-	
4. 순확정급여부채	10,226,148,343		34,038,128,999	
5. 이연법인세부채	628,580,123,669		512,169,390,749	
6. 기타금융부채	66,661,432,127		13,765,745,922	
7. 기타비유동부채	11,676,587,844		14,162,651,831	
8. 충당부채	95,611,498,001		75,319,987,628	
부 채 총 계		5,989,974,765,604		7,254,811,592,591
자 본				
I. 지배기업의 소유주지분		13,204,399,243,017		12,734,717,751,049
1. 자본금	171,377,095,000		171,377,095,000	
2. 기타불입자본	880,837,946,542		880,861,285,570	
3. 이익잉여금	12,158,354,451,643		11,784,662,256,446	
4. 기타자본구성요소	(6,170,250,168)		(102,182,885,967)	
II. 비지배지분		848,731,148,507		809,609,489,464
자 본 총 계		14,053,130,391,524		13,544,327,240,513
부 채 및 자 본 총 계		20,043,105,157,128		20,799,138,833,104

- 연결포괄손익계산서

연 결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 44(당) 기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제 43(전) 기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롯데케미칼 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단위 : 원)

과목	제 44(당) 기		제 43(전) 기	
I. 매출		15,123,477,947,655		16,073,061,465,123
II. 매출원가		13,208,748,237,908		13,368,922,712,367
III. 매출총이익		1,914,729,709,747		2,704,138,752,756
판매비와관리비		807,470,800,524		757,961,371,256
IV. 영업이익		1,107,258,909,223		1,946,177,381,500
금융수익		178,096,327,674		184,348,488,102
금융비용		237,353,470,829		189,387,947,129
지분법투자이익		184,901,952,786		202,316,945,067
기타영업외수익		352,712,288,568		277,791,521,332
기타영업외비용		337,061,163,039		212,746,274,036
V.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1,248,554,844,383		2,208,500,114,836
법인세비용		389,970,380,485		608,677,598,112
VI. 계속영업연결순이익		858,584,463,898		1,599,822,516,724
VII. 중단영업연결순손실		(101,918,470,012)		42,111,621,112
VIII. 연결순이익		756,665,993,886		1,641,934,137,836
지배회사순이익		714,978,059,663		1,579,194,571,925
비지배회사순이익		41,687,934,223		62,739,565,911
VII. 기타포괄손익		148,864,875,233		357,886,562,423
1.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28,727,317,041		65,534,097,813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9,587,881,616)		7,894,341,773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평가손실	(1,529,917,133)		(3,701,718,317)	
지분법이익잉여금	39,765,848,624		44,145,429,369	
해외사업환산이익	28,752,844,580		56,081,877,691	
지분법자본변동	(23,015,732,472)		(29,315,496,353)	
법인세효과	(5,657,844,942)		(9,570,336,350)	
2.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항목		120,137,558,192		292,352,464,610
과생상품평가이익	47,322,074		(39,302,347)	
해외사업환산이익	104,344,567,411		249,052,312,877	
지분법자본변동	15,758,682,278		43,328,645,935	
법인세효과	(13,013,571)		10,808,145	
VIII. 총포괄이익		905,530,869,119		1,999,820,700,259
당기순이익의 귀속				
지배기업의 소유주	714,978,059,663		1,579,194,571,925	
계속영업당기순이익(손실)		816,896,529,675		1,537,082,950,813
중단영업당기순이익(손실)		(101,918,470,012)		42,111,621,112
비지배지분	41,687,934,223		62,739,565,911	
계속영업당기순이익(손실)		41,687,934,223		62,739,565,911
총포괄이익의 귀속				

지배기업의 소유주	835,101,554,081		986,558,614,099	
비지배지분	70,429,315,038		82,960,539,404	
IX. 주당이익				
계속기본및희석주당이익(손실)		23,833		44,845
중단기본및희석주당이익(손실)		(2,973)		1,229

- 연결자본변동표

연 결 자 본 변 동 표

제 44(당) 기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제 43(전) 기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롯데케미칼 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단위 : 원)

과 목	지배주주지분				비지배주주지분	총 계
	자본금	기타불입자본	이익잉여금	기타자본구성요소		
I. 2018.01.01.(전기초)	171,377,095,000	880,743,872,602	10,582,113,942,798	(144,606,746,249)	765,138,897,280	12,254,767,061,431
회계정책의 변경(주석 45)	-	-	15,901,537,848	(65,547,482,690)	-	(49,645,944,842)
II. 2018.01.01.(변경 후)	171,377,095,000	880,743,872,602	10,598,015,480,646	(210,154,228,939)	765,138,897,280	12,205,121,116,589
1. 배당금의 지급	-	-	(366,591,899,500)	-	(44,902,733,105)	(411,494,632,605)
2. 종속기업 소유지분 변동	-	117,412,968	-	-	(1,363,561,529)	(1,246,148,561)
3. 관계기업처분	-	-	-	2,293,042,572	-	2,293,042,572
4. 총포괄이익	-	-	1,553,238,675,300	105,678,300,400	90,736,886,818	1,749,653,862,518
당기순이익	-	-	1,579,194,571,925	-	62,739,565,911	1,641,934,137,836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15,093,183,472)	-	100,015,084	(14,993,168,388)
지분법이익잉여금	-	-	(10,862,713,153)	-	(63,721,638)	(10,926,434,791)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 평가이익	-	-	-	549,683,788	-	549,683,788
지분법자본변동	-	-	-	(417,459,406)	21,797,974	(395,661,432)
과생상품평가손실	-	-	-	(94,064,583)	-	(94,064,583)
해외사업환산이익	-	-	-	105,640,140,601	27,939,229,487	133,579,370,088
III. 2018.12.31.(전기말)	171,377,095,000	880,861,285,570	11,784,662,256,446	(102,182,885,967)	809,609,489,464	13,544,327,240,513
IV. 2019.01.01.(당기초)	171,377,095,000	880,861,285,570	11,784,662,256,446	(102,182,885,967)	809,609,489,464	13,544,327,240,513
1. 배당금의 지급	-	-	(365,396,723,085)	-	(31,258,220,515)	(396,654,943,600)
2. 자기주식 거래로 인한 증감	-	(23,339,028)	-	-	(49,435,480)	(72,774,508)
3. 총포괄이익	-	-	739,088,918,282	96,012,635,799	70,429,315,038	905,530,869,119
당기순이익	-	-	714,978,059,663	-	41,687,934,223	756,665,993,886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7,817,038,470)	-	(11,463,765)	(7,828,502,235)
지분법이익잉여금	-	-	31,927,897,089	-	-	31,927,897,089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평가이익	-	-	-	(1,109,189,921)	-	(1,109,189,921)
지분법자본변동	-	-	-	(7,257,050,194)	-	(7,257,050,194)
과생상품평가이익	-	-	-	34,308,503	-	34,308,503
해외사업환산이익	-	-	-	104,344,567,411	28,752,844,580	133,097,411,991
V. 2019.12.31.(당기말)	171,377,095,000	880,837,946,542	12,158,354,451,643	(6,170,250,168)	848,731,148,507	14,053,130,391,524

- 연결현금흐름표

연 결 현 금 흐 림 표

제 44(당) 기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제 43(전) 기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롯데케미칼 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단위 : 원)

과목	제 44(당) 기		제 43(전) 기	
I.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282,967,141,732		1,380,927,825,833
1.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흐름	1,947,917,598,561		2,205,944,751,828	
(1) 당기순이익	756,665,993,886		1,641,934,137,836	
(2) 조정사항	1,073,809,111,665		1,107,240,718,652	
법인세비용	389,970,380,485		610,717,958,486	
이자비용	113,221,897,070		83,188,521,615	
이자수익	(103,434,178,084)		(104,646,195,750)	
배당금수익	(974,476,409)		(1,244,349,109)	
외화환산손실	38,785,963,004		43,506,353,890	
외화환산이익	(33,543,241,728)		(31,497,841,889)	
지분법손실	127,739,802,739		58,565,152,508	
지분법이익	(312,641,755,525)		(260,882,097,575)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부채평가손실	29,349,804,980		18,155,958,263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평가이익	(535,729,139)		(7,554,505,733)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부채처분손실	404,824,974		1,108,873,923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처분이익	(79,619,400)		(542,889,772)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평가손실	118,524,989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처분손실	595,726,342		846,922,406	
금융보증비용	663,000,000		-	
금융보증수익	(906,592,402)		-	
파생상품평가손실	718,835,171		181,960,253	
파생상품평가이익	(2,687,132,384)		(8,791,198,846)	
파생상품거래손실	7,830,962,743		2,463,791,718	
파생상품거래이익	(8,367,225,378)		(8,734,670,000)	
관계기업투자처분이익	-		(42,360,969,063)	
공동영업처분이익	(120,845,260,517)		-	
유형자산처분손실	10,162,422,290		2,211,475,103	
유형자산처분이익	(11,887,236,823)		(3,596,358,101)	
유형자산손상차손	37,336,761,100		712,396,323	
사용권자산처분손실	344,146,380		-	
사용권자산처분이익	(123,547)		-	
무형자산처분손실	15,484,544		69,536,875	
무형자산처분이익	(18,288,000)		-	
영업권손상차손	102,367,196,929		-	
투자부동산처분이익	-		(1,959,762,639)	
재고자산평가손실(환입)	(7,060,501,600)		25,807,307,675	
대손상각비	135,729,568		1,269,316,901	
기타의대손상각비환입	1,770,647,558		(157,244)	

감가상각비	636,277,797,515		602,930,424,737	
무형자산상각비	95,284,131,205		82,106,847,161	
충당부채의 환입	33,172,120,295		(1,641,240,747)	
퇴직급여	49,531,881,044		44,890,369,915	
장기종업원급여	992,431,676		1,959,787,368	
(3) 운전자본의 변동	117,442,493,010		(543,230,104,660)	
매출채권	44,957,002,143		122,316,172,909	
기타채권	(13,283,325,727)		28,635,280,493	
재고자산	60,524,879,558		(258,120,135,736)	
기타금융자산	(34,098,016,230)		36,723,785,569	
기타자산	(3,694,927,688)		(3,469,690,441)	
매입채무	170,133,369,648		(328,062,063,371)	
기타채무	(17,371,735,727)		(13,866,314,581)	
기타금융부채	(43,356,426,735)		(53,768,588,414)	
기타부채	22,882,858,762		(29,369,436,532)	
순확정급여채무	(69,251,184,994)		(44,249,114,556)	
2. 법인세의 납부	(664,950,456,829)		(825,016,925,995)	
II.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669,653,879,110		(1,763,101,864,188)
1.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3,472,376,932,727		452,310,173,431	
단기금융상품의 감소	2,236,389,717,083		27,859,488,633	
기타금융자산의 감소	8,144,948,921		861,548,735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의 처분	25,859,795,610		144,335,202,551	
공동영업의 처분	951,714,704,930		-	
관계기업투자의 처분	-		67,117,896,437	
유형자산의 처분	21,713,543,877		14,897,907,398	
무형자산의 처분	718,597,098		-	
투자부동산의 처분	-		2,882,610,000	
이자수취	105,581,063,400		99,105,488,469	
배당금수취	122,207,775,892		91,861,513,219	
파생상품거래의 정산	46,785,916		3,388,517,989	
2.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2,802,723,053,617)		(2,215,412,037,619)	
단기금융상품의 증가	507,221,033,731		168,220,213,812	
장기금융상품의 증가	300,000,000		-	
기타금융자산의 증가	3,437,654,728		172,609,554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의 취득	784,676,200,000		1,600,000,000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의 취득	12,119,873,353		-	
유형자산의 취득	892,236,381,094		1,846,449,598,620	
무형자산의 취득	143,104,213,928		1,399,497,676	
종속기업투자의 처분	2,031,898,928			
관계기업투자의 취득	296,000,000,000		195,995,686,650	
공동기업투자의 취득	50,000,000,000		-	
파생상품거래의 정산	-		1,574,431,307	
사업결합으로 인한 순현금유출	111,595,797,855			

III.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905,083,001,974)		44,829,295,983
1.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2,072,378,402,508		3,467,394,773,216	
단기차입금의 차입	1,499,539,862,749		2,238,849,812,196	
장기차입금의 차입	170,779,004,358		1,026,132,701,248	
사채의 발행	398,949,640,000		199,440,060,000	
금융리스부채의 증가	1,025,872,671		-	
파생상품거래의 정산	2,064,022,730		2,972,199,772	
유상증자	20,000,000			
2.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3,977,461,404,482)		(3,422,565,477,233)	
단기차입금의 상환	1,642,564,899,430		2,130,915,765,241	
장기차입금의 상환	1,213,191,465,715		23,956,180,000	
사채의 상환	590,000,000,000		776,210,120,000	
이자의 지급	96,745,721,591		68,527,662,015	
배당금의 지급	396,654,943,600		411,494,632,605	
종속기업소유지분변동	72,774,509		-	
금융리스부채의 감소	36,347,233,016		-	
파생상품거래의 정산	1,884,366,621		10,204,081,750	
비지배지분의 감소	-		1,257,035,622	
IV. 현금및현금성자산의 감소 (I + II + III)		47,538,018,868		(337,344,742,372)
V. 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1,329,974,466,103		1,685,211,989,030
VI. 외화표시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		(18,257,867,997)		(17,892,780,555)
VII. 중단영업관련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조정		(7,299,748,126)		-
VIII. 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		1,351,954,868,848		1,329,974,466,103

-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1. 일반사항

1-1 지배기업의 개요

롯데케미칼 주식회사(이하 "지배기업")는 1976년 3월 16일 석유화학제품의 제조·판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어 여수, 대산 및 울산 석유화학단지 내에 공장을 두고 있으며, 서울본사·부산·대구·대전지점에서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지배기업은 1991년 5월30일에 주식을 한국거래소(구,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개설한 KRX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였습니다.

지배기업은 2009년 1월 1일을 합병기일로 하여 주식회사 롯데대산유화를 흡수합병하였으며, 2012년 12월 27일을 합병기일로 하여 주식회사 케이피케미칼을 흡수합병하고 사명을 호남석유화학 주식회사에서 롯데케미칼 주식회사로 변경하였습니다.

한편, 당기말 현재 지배기업의 주요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주명	소유주식수	지분율
롯데지주(주)	8,145,201 주	23.76%
롯데물산(주)	6,855,084 주	20.00%

Lotte Holdings Co., Ltd.	3,186,000 주	9.30%
기 타	16,089,134 주	46.94%
계	34,275,419 주	100.00%

1-2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에 속한 종속기업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에 따른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에 속한 종속기업(이하 "종속기업"이라 함)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말)

회사명	결산일	업종	연결실체 지분율	비지배지분 지분율	소재지
Lotte Chemical Trading (Shanghai) Corp.	12.31.	판매	100.00%	-	중국
Lotte Chemical Engineering Plastics (Jiaxing) Co., Ltd.	12.31.	화학제조	100.00%	-	중국
Lotte Chemical (Jiaxing) Corp.	12.31.	화학제조	100.00%	-	중국
Lotte Chemical Titan Holding Berhad와 그 종속기업	12.31.	화학제조	76.01%	23.99%	말레이시아 등
삼박엘에프티(주)	12.31.	화학제조	100.00%	-	국내
테크항공(주)	12.31.	부품제조	100.00%	-	국내
Lotte Chemical Alabama Corp.	12.31.	화학제조	100.00%	-	미국
Lotte Chemical Engineering Plastics (Hefei) Co., Ltd.	12.31.	화학제조	100.00%	-	중국
(주)케이피캡텍	12.31.	화학제조	100.00%	-	국내
Lotte Chemical Pakistan Limited	12.31.	화학제조	75.01%	24.99%	파키스탄
Lotte Chemical Poland Sp. zo.o.	12.31.	판매	100.00%	-	폴란드
Lotte Chemical USA Corp.와 그 종속기업	12.31.	화학제조	90.41%	9.59%	미국
Lotte Chemical Engineering Plastics (Shenyang) Co., Ltd.	12.31.	화학제조	100.00%	-	중국
롯데첨단소재(주)와 그 종속기업	12.31.	화학제조	100.00%	-	국내
Lotte Chemical Nigeria Limited	12.31.	판매	100.00%	-	나이지리아
롯데케미칼이노베이션펀드1호 (주1)	12.31.	투자	98.00%	2.00%	국내

(주1) 당기 중 신규설립되었습니다.

(전기말)

회사명	결산일	업종	연결실체 지분율	비지배지분 지분율	소재지
Lotte Chemical Trading (Shanghai) Corp.	12.31.	판매	100.00%	-	중국
Lotte Chemical Engineering Plastics (Jiaxing) Co., Ltd.	12.31.	화학제조	100.00%	-	중국
Lotte Chemical (Jiaxing) Corp.	12.31.	화학제조	100.00%	-	중국
Lotte Chemical Titan Holding Berhad와 그 종속기업	12.31.	화학제조	76.01%	23.99%	말레이시아 등
삼박엘에프티(주)	12.31.	화학제조	99.84%	0.16%	국내
테크항공(주)	12.31.	부품제조	100.00%	-	국내
Lotte Chemical Alabama Corp.	12.31.	화학제조	100.00%	-	미국

Lotte Chemical Engineering Plastics (Hefei) Co., Ltd.	12.31.	화학제조	100.00%	-	중국
(주)케이피캡텍	12.31.	화학제조	100.00%	-	국내
Lotte Chemical Pakistan Limited	12.31.	화학제조	75.01%	24.99%	파키스탄
Lotte Chemical UK Limited	12.31.	화학제조	100.00%	-	영국
Lotte Chemical Poland Sp. zo.o.	12.31.	판매	100.00%	-	폴란드
Lotte Chemical USA Corp.와 그 종속기업	12.31.	화학제조	90.41%	9.59%	미국
Lotte Chemical Engineering Plastics (Shenyang) Co., Ltd.	12.31.	화학제조	100.00%	-	중국
롯데첨단소재(주)와 그 종속기업	12.31.	화학제조	100.00%	-	국내
Lotte Chemical Nigeria Limited	12.31.	판매	100.00%	-	나이지리아

(2) 당기 중에 신규로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거나 연결대상에서 제외된 종속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 기)

구 분	종속기업명	사 유
신규포함	PEKER SURFACE DESIGNS INDUSTRY AND TRADE JOINT STOCK COMPANY (주1)	신규취득
신규포함	롯데케미칼이노베이션펀드1호	신규설립
제외	Lotte Chemical UK Limited	매각

(주1) 해당 종속기업은 롯데첨단소재(주)와 그 종속기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 기)

구 분	종속기업명	사 유
신규포함	Lotte Chemical Nigeria Limited	신규설립

(3)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각 종속기업의 요약 재무상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말)

(단위: 천원)						
회사명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지배지분	비지배지분
Lotte Chemical Trading (Shanghai) Corp.	61,730,842	2,736,111	25,935,769	-	38,531,184	-
Lotte Chemical Engineering Plastics (Jiaxing) Co., Ltd.	46,491,031	5,651,208	16,625,170	-	35,517,069	-
Lotte Chemical (Jiaxing) Corp.	45,619,743	33,685,284	39,922,234	36,999,532	2,383,261	-
Lotte Chemical Titan Holding Berhad와 그 종속기업	1,733,787,660	2,145,041,102	217,615,350	228,290,046	3,344,561,679	88,361,687
삼박엘에프티(주)	38,161,793	20,579,460	17,605,710	429,315	40,706,228	-
테크항공(주)	9,541,568	10,758,561	8,400,035	12,552,913	(652,819)	-
Lotte Chemical Alabama Corp.	17,218,705	17,379,399	7,083,092	11,860,321	15,654,691	-
Lotte Chemical Engineering Plastics (Hefei) Co., Ltd.	9,150,999	7,736,872	9,071,852	-	7,816,019	-
(주)케이피캡텍	37,479,889	11,229,171	17,316,239	571,139	30,821,682	-
Lotte Chemical Pakistan Limited	164,603,442	41,292,483	86,771,696	999,687	118,124,542	-

Lotte Chemical Poland Sp. zo.o.	19,940,042	51,946	20,365,685	-	(373,697)	-
Lotte Chemical USA Corp.와 그 종속기업	456,908,057	2,608,032,641	535,522,029	959,500,683	1,569,917,986	-
Lotte Chemical Engineering Plastics (Shenyang) Co., Ltd.	7,885,517	8,439,452	5,858,159	-	10,466,810	-
롯데첨단소재주와 그 종속기업	1,300,854,860	1,115,719,131	480,917,858	157,527,557	1,774,822,473	3,306,103
Lotte Chemical Nigeria Limited	229,649	-	23,298	-	206,351	-
롯데케미칼이노베이션펀드1호	995,896	-	-	-	995,896	-

(전기말)

(단위: 천원)						
회사명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지배지분	비지배지분
Lotte Chemical Trading (Shanghai) Corp.	69,640,566	6,069,493	38,282,502	-	37,427,557	-
Lotte Chemical Engineering Plastics (Jiaxing) Co., Ltd.	41,824,695	7,234,719	7,666,489	-	41,392,925	-
Lotte Chemical (Jiaxing) Corp.	54,069,772	63,393,135	66,353,757	17,872,870	33,236,280	-
Lotte Chemical Titan Holding Berhad와 그 종속기업	1,611,934,505	2,043,824,166	226,419,686	182,719,224	3,241,894,022	4,725,739
삼박엘에프티주	38,225,384	22,081,873	21,453,307	2,072,493	36,781,457	-
테크항공주	9,498,469	10,933,595	4,405,715	16,611,927	(585,578)	-
Lotte Chemical Alabama Corp.	16,182,395	17,806,485	8,615,976	11,182,520	14,190,384	-
Lotte Chemical Engineering Plastics (Hefei) Co., Ltd.	8,509,373	11,966,542	7,966,093	-	12,509,822	-
주케이피캡텍	41,548,871	12,213,186	24,313,777	722,210	28,726,070	-
Lotte Chemical Pakistan Limited	124,402,580	45,574,433	68,945,803	1,002,600	100,028,610	-
Lotte Chemical UK Limited	217,870,650	86,599,443	218,757,618	137,771,039	(52,058,564)	-
Lotte Chemical Poland Sp. zo.o.	24,881,054	104,948	24,657,272	2,604	326,126	-
Lotte Chemical USA Corp.와 그 종속기업	181,501,863	3,016,042,581	402,262,697	1,386,072,136	1,409,209,611	-
Lotte Chemical Engineering Plastics (Shenyang) Co., Ltd.	5,928,152	11,652,683	3,672,867	-	13,907,968	-
롯데첨단소재주와 그 종속기업	1,352,982,881	894,915,259	527,410,880	15,282,359	1,702,564,689	2,640,212
Lotte Chemical Nigeria Limited	270,754	-	62,608	-	208,146	-

(4) 당기와 전기 중 각 종속기업의 요약 경영성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 기)

(단위: 천원)						
회사명	매출액	영업손익	당기순손익	총포괄손익	비지배지분 손익	비지배지분 총포괄손익
Lotte Chemical Trading (Shanghai) Corp.	189,517,972	4,138,554	3,927,001	1,103,627	-	-
Lotte Chemical Engineering Plastics (Jiaxing) Co., Ltd.	59,670,939	(470,448)	(939,056)	(465,101)	-	-
Lotte Chemical (Jiaxing) Corp.	114,118,888	3,419,346	(32,000,649)	(30,853,019)	-	-
Lotte Chemical Titan Holding Berhad와 그 종속기업	2,372,814,807	65,062,893	80,352,418	216,216,104	790,376	952,848
삼박엘에프티주	100,410,050	8,832,145	7,123,512	6,987,247	-	-
테크항공주	19,742,866	577,792	(214,489)	(67,241)	-	-
Lotte Chemical Alabama Corp.	44,244,777	2,365,872	966,966	1,464,307	-	-

Lotte Chemical Engineering Plastics (Hefei) Co., Ltd.	11,384,440	(1,394,572)	(5,007,202)	(4,693,803)	-	-
㈜케이피캠텍	171,736,441	2,447,927	2,458,728	2,095,611	-	-
Lotte Chemical Pakistan Limited	470,393,890	57,108,555	43,063,900	35,108,050	-	-
Lotte Chemical Poland Sp. zo.o.	57,754,932	(648,473)	(705,423)	(699,823)	-	-
Lotte Chemical USA Corp.와 그 종속기업	310,031,104	74,702,614	111,422,411	160,708,374	-	-
Lotte Chemical Engineering Plastics (Shenyang) Co., Ltd.	8,244,660	(849,379)	(3,759,129)	(3,441,157)	-	-
롯데첨단소재㈜와 그 종속기업	2,936,744,684	181,176,622	137,938,035	127,923,675	321,443	665,891
Lotte Chemical Nigeria Limited	372,242	(9,247)	(9,247)	(1,794)	-	-
롯데케미칼이노베이션펀드 1호	-	(4,104)	(4,104)	(4,104)	-	-

(전 기)

(단위: 천원)						
회사명	매출액	영업손익	당기순손익	총포괄손익	비지배지분 손익	비지배지분 총포괄손익
Lotte Chemical Trading (Shanghai) Corp.	219,607,770	1,616,327	540,122	326,536	-	-
Lotte Chemical Engineering Plastics (Jiaxing) Co., Ltd.	68,943,079	3,599,781	2,554,119	2,422,275	-	-
Lotte Chemical (Jiaxing) Corp.	139,943,544	(2,110,062)	(6,723,741)	(6,794,363)	-	-
Lotte Chemical Titan Holding Berhad와 그 종속기업	2,526,570,315	184,556,712	216,193,245	334,827,381	552,669	768,664
삼박엘에프티㈜	101,324,672	5,968,400	5,497,332	5,248,571	-	-
테크항공㈜	20,753,045	868,787	404,495	(103,409)	-	-
Lotte Chemical Alabama Corp.	28,223,254	1,429,751	956,385	1,523,942	-	-
Lotte Chemical Engineering Plastics (Hefei) Co., Ltd.	11,268,058	(699,026)	(845,772)	(900,200)	-	-
㈜케이피캠텍	218,906,026	3,089,167	2,514,715	2,515,933	-	-
Lotte Chemical Pakistan Limited	520,620,182	62,506,241	40,190,085	18,536,602	-	-
Lotte Chemical UK Limited	471,952,412	21,222,028	42,111,621	41,990,315	-	-
Lotte Chemical Poland Sp. zo.o.	59,594,096	145,547	(165,409)	(176,735)	-	-
Lotte Chemical USA Corp.와 그 종속기업	-	(6,266,822)	(1,533,208)	57,365,921	-	-
Lotte Chemical Engineering Plastics (Shenyang) Co., Ltd.	6,247,029	(817,689)	(842,315)	(904,445)	-	-
롯데첨단소재㈜와 그 종속기업	3,070,694,673	235,784,703	183,722,606	182,492,878	524,565	626,502
Lotte Chemical Nigeria Limited	110,675	(157,962)	(158,267)	(147,660)	-	-

(5) 당기와 전기 중 각 종속기업별로 비지배지분이 보유한 소유지분율과 재무상태, 경영성과 및 배당 금액 중 비지배지분에 귀속되는 몫의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당 기)

(단위: 천원)					
회사명	비지배지분 소유지분율	누적 비지배지분	비지배지분 귀속 당기순손익	비지배지분 귀속 총포괄손익	비지배지분 지급 배당금
Lotte Chemical Titan Holding Berhad와 그 종속기업 (주1)	23.99%	665,127,195	19,919,472	42,525,959	27,006,893
Lotte Chemical Pakistan Limited	24.99%	29,655,329	10,756,903	11,769,012	4,251,328
Lotte Chemical USA Corp.와 그 종속기업	9.59%	150,622,604	10,690,198	15,812,983	-
롯데첨단소재㈜와 그 종속기업 (주2)	-	3,306,103	321,443	321,443	-

롯데케미칼이노베이션펀드 1호	2.00%	19,918	(82)	(82)	-
합 계		848,731,149	41,687,934	70,429,315	31,258,221

(전 기)

(단위: 천원)					
회사명	비지배지분 소유지분율	누적 비지배지분	비지배지분 귀속 당기순손익	비지배지분 귀속 총포괄손익	비지배지분 지급 배당금
Lotte Chemical Titan Holding Berhad와 그 종속기업 (주1)	23.99%	646,578,157	52,308,119	74,787,637	39,425,500
삼박엘에프티㈜	0.16%	49,435	8,914	8,513	14,756
Lotte Chemical Pakistan Limited	24.99%	25,137,921	10,045,068	10,881,904	5,462,477
Lotte Chemical USA Corp.와 그 종속기업	9.59%	135,203,764	(147,100)	4,534,268	-
롯데첨단소재㈜와 그 종속기업 (주2)	-	2,640,212	524,565	524,565	-
합 계		809,609,489	62,739,566	90,736,887	44,902,733

(주1) Lotte Chemical Titan Holding Berhad와 그 종속기업의 비지배지분에 귀속되는 재무정보입니다.

(주2) 롯데첨단소재㈜와 그 종속기업의 비지배지분에 귀속되는 재무정보입니다.

(6) 당기와 전기 중 지배력을 상실하지 않으면서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기업의 소유지분율이 증가하거나 감소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 기)

(단위: 천원)					
회사명	거래전 지분율	거래후 지분율	지분대가	비지배지분증감	기타불입자본의증감
삼박엘에프티㈜	99.84%	100.00%	(72,775)	(49,435)	(23,340)

(전 기)

(단위: 천원)					
회사명	거래전 지분율	거래후 지분율	지분대가	비지배지분증감	기타불입자본의증감
삼박엘에프티㈜	99.51%	99.84%	(440,550)	(114,086)	(326,464)

2. 재무제표 작성기준 및 유의적 회계정책

2-1 재무제표 작성기준

지배기업과 그 종속기업(이하 '연결실체')의 재무제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은 아래 기술되어 있으며, 당기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은 아래에서 설명하는 기준서나 해석서의 도입과 관련된 영향을 제외하고는 전기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채택한 회계정책과 동일합니다.

연결재무제표는 매 보고기간말에 재평가금액이나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특정 비유동자산과 금융자산

을 제외하고는 역사적 원가주의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역사적 원가는 일반적으로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대가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1) 당기에 새로 도입된 기준서 및 해석서와 그로 인한 회계정책의 변경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는 기준서 제1017호 '리스', 해석서 제2104호 '약정에 리스가 포함되어 있는지의 결정', 해석서 제2015호 '운용리스: 인센티브', 해석서 제2027호 '법적 형식상의 리스를 포함하는 거래의 실질에 대한 평가'를 대체합니다. 이 기준서는 리스의 인식, 측정, 표시, 공시 원칙을 제시하며, 리스이용자가 대부분의 리스에 대하여 자산과 부채를 인식하는 단일모형에 따라 회계처리하도록 요구합니다.

기준서 제1116호에서 리스제공자의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에서와 유의적으로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리스제공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에서와 유사한 원칙을 사용하여 리스를 운용리스 또는 금융리스로 계속 분류할 것입니다.

연결실체는 2019년 1월 1일을 최초 적용일로 하여 수정소급법을 사용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를 적용하였습니다. 수정소급법에 따르면 최초 적용일에 이 기준서의 최초 적용 누적효과를 소급 적용합니다. 연결실체는 최초 적용일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 및 해석서 제2104호에 따라 최초 적용일 이전에 이미 리스로 식별된 계약에 대하여만 이 기준서를 적용하는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연결실체는 리스개시일에 리스기간이 12개월 이하이고 매수선택권이 존재하지 않는 리스('단기리스')와 리스계약의 기초자산이 소액인 리스('소액자산')에 대하여는 인식 면제를 적용하기로 선택하였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최초 적용에 따라 2019년 1월 1일 재무상태표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증가(감소)
자산	
사용권자산	274,020,721
유형자산	(139,250,047)
무형자산	(10,042,509)
선급비용	(3,003,678)
총자산	121,724,487
부채	
이자부차입금	124,261,780
기타부채	(2,537,293)
총부채	121,724,487
자본	
이익잉여금	-
총자본	-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최초 채택 효과

기준서 제1116호를 채택하기 전에 연결실체는 연결실체가 리스이용자인 각 리스에 대해 리스약정일을 기준으로 금융리스 또는 운용리스로 분류하였습니다.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이 연결실체에 이전되는 리스는 금융리스로 분류되었으며 그 외의 리스는 운용리스로 분류되었습니다. 금융리스의 경우 리스약정일에 측정된 최소리스료의 현재가치와 리스자산의 공정가치 중 작은 금액을 리스기간개시일에 금융리스자산과 금융리스부채로 각각 인식하였습니다. 매기 지급되는 최소리스료는 금융원가와 리스부채의 상환액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운용리스에서 리스료는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손익계산서에 비용으로 인식하였습니다. 선급되었거나 미지급된 리스료는 선급금 또는 기타 미지급금으로 각각 인식하였습니다. 연결실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를 적용함에 따라 단기리스와 소액자산리스를 제외하고 연결실체가 리스이용자인 모든 리스에 대해 단일의 인식 및 측정 방법을 적용합니다. 동 기준서는 연결실체가 적용한 구체적인 경과규정 요구사항 및 실무적 간편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 종전에 금융리스로 분류한 리스

연결실체가 종전에 금융리스로 분류하였던 리스의 최초 적용일 현재 사용권자산 및 리스부채의 장부금액은 해당일 직전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를 적용하여 측정된 리스자산 및 리스부채의 장부금액입니다. 연결실체는 그 리스에 대하여 최초 적용일부터 이 기준서를 적용하여 회계처리합니다.

- 종전에 운용리스로 분류한 리스

연결실체는 종전에 운용리스로 분류하였던 리스에 대해 단기리스와 소액자산리스를 제외하고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인식하였습니다. 대부분의 리스에 대한 사용권자산은 최초적용일 현재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로 할인한 것을 제외하고는 리스개시일부터 이 기준서를 적용해 온 것처럼 측정한 장부금액으로 인식되었습니다. 일부 리스의 경우 사용권자산은 리스부채와 동일한 금액으로 인식하고 최초 적용일 직전에 재무상태표에 인식된 리스와 관련하여 선급하거나 발생한 리스료 금액을 조정하였습니다. 리스부채는 최초 적용일 현재 증분차입이자율로 할인한 나머지 리스료의 현재가치로 측정되었습니다.

연결실체가 적용한 실무적 간편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특성이 상당히 비슷한 리스 포트폴리오에 단일 할인율을 적용
- 최초적용일 직전에 리스가 손실부담계약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으로써 손상 검토 수행 대체
- 최초적용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리스기간에 종료되는 리스에 대해 단기리스 인식면제를 적용
- 최초적용일의 사용권자산 측정에서 리스개설직접원가를 제외
- 연장 또는 종료 선택권을 포함하는 리스계약의 리스기간을 산정하는 경우 사후판단을 사용

(2) 새로운 회계정책의 요약

연결실체가 최초 적용일부터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를 채택하면서 적용하는 새로운 회계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용권자산

연결실체는 리스개시일(즉, 기초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 날)에 사용권자산을 인식합니다. 사용권자산은 원가로 측정하고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측정하며, 리스부채의 재측정이 발생하는 경우 조정합니다. 사용권자산의 원가에는 리스부채 인식금액, 리스개설직접원가 발생액이 포함되며, 리스개시일이나 그 전에 지급한 리스선급금이나 인센티브는 가감합니다. 연결실체는 리스기간 종료시점에 리스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얻을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예측되지 않는다면, 사용권자산은 추정내용연수와 리스기간 중 더 짧은 기간에 걸쳐 정액 기준으로 감가상각합니다. 연결실

체는 사용권자산에 대한 손상 검토를 수행합니다.

- 리스부채

연결실체는 리스개시일에 그날 현재 지급하지 않은 리스료의 현재가치로 리스부채를 측정합니다. 리스료에는 받을 리스 인센티브를 제외한 고정리스료(실질적인 고정리스료를 포함),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와 잔존가치 보증에 따라 연결실체가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이 포함됩니다. 또한 연결실체는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 그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리스기간이 연결실체의 종료선택권 행사 반영하는 경우에 그 리스를 종료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을 리스료에 포함합니다.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 변동리스료는 리스료를 지급하는 사건이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연결실체는 리스료의 현재가치를 계산할 때,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리스개시일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합니다. 연결실체는 리스개시일후에 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를 반영하여 리스부채의 장부금액을 증액하고, 지급한 리스료를 반영하여 리스부채의 장부금액을 감액합니다. 또한 연결실체는 리스의 변경을 반영하거나 실질적인 고정리스료의 변경을 반영하거나 리스 기간의 변경 또는 기초자산 매수선택권 평가의 변경이 있는 경우 이 변경을 반영하여 리스부채를 재측정합니다.

- 단기리스 및 소액자산리스

연결실체는 단기리스(예, 리스 기간이 리스개시일로부터 12개월 이하이고 매수선택권이 없는 리스)에 대해 인식면제를 적용합니다. 또한, 가치가 낮은 장비(예, US\$ 5,000 이하인리스)에 대해 소액자산리스로 인식면제를 적용합니다. 단기리스와 소액자산리스에 대한 리스료는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 기준으로 비용을 인식합니다.

- 연장선택권이 있는 계약에서 계약기간을 결정할 때 중요한 판단

연결실체는 리스의 해지불능기간에 리스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 그 선택권의 대상 기간과 리스 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 그 선택권의 대상 기간을 포함하여 리스기간을 산정합니다. 연결실체는 일부 리스에 대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연장선택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이 선택권의 행사가능성이 상당히 확실한지를 평가할 때 판단을 적용합니다. 즉,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경제적 유인이 생기게 하는 모든 관련 요소를 고려합니다. 리스개시일 이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나 상황이 변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상황에 변화가 발생하여 선택권의 행사가능성(또는 행사하지 않을 가능성)에 영향을 미친다면(예를 들어, 사업 전략의 변경), 연결실체는 리스 기간을 재평가합니다.

2)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3호 '법인세 처리의 불확실성' (제정)

이 해석서는 법인세 처리에 불확실성이 있을 때 기준서 제1012호의 인식 및 측정 요구사항을 어떻게 적용할지를 다룹니다. 그러나 이 해석서는 기준서 제1012호의 적용범위가 아닌 세금 또는 부담금에 적용되지 않으며 불확실한 법인세 처리와 관련되는 이자와 벌과금에 관련된 요구사항을 다루지 않습니다. 이 해석서는 다음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 기업이 불확실한 법인세처리를 개별적으로 고려할지
- 법인세 처리에 대한 과세당국의 조사에 관한 기업의 가정
- 기업이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 세무기준액, 미사용 세무상결손금, 미사용 세액공제, 세율을 어떻게 산정할지
- 기업이 사실 및 상황의 변화를 어떻게 고려할지

연결실체는 불확실한 법인세처리 각각을 개별적으로 고려할지 아니면 하나 이상의 다른 불확실한 법인세처리와 함께 고려할지를 판단합니다. 접근법 중 불확실성의 해소를 더 잘 예측하는 접근법을 사용합니다. 동 해석서는 연결실체의 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개정) - 부의 보상을 수반하는 중도상환특성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고(SPPI 요건) 분류에 적절한 사업모형에서 보유되는 채무상품은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될 수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개정은 계약의 조기청산을 발생시키는 사건이나 상황과 무관하고, 당사자가 계약의 조기청산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을 하거나 받는지와 관계없이 SPPI 조건을 충족하는 금융자산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사항이 연결실체의 연결 재무상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4)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 (개정) - 확정급여제도의 개정, 축소, 정산
개정사항은 보고기간 중 제도의 개정, 축소, 청산이 일어났을 때의 회계처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연결실체가 보고기간 중 확정급여제도의 개정, 정산, 축소, 정산이 발생한 경우 제도의 변경 이후 잔여기간에 대한 당기근무원가는 순확정급여부채(자산)를 재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보험수리 적가정을 사용하여 결정하여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순확정급여부채(자산)를 재측정하는 경우 제도의 개정, 축소, 정산 후 잔여 연차보고기간에 대한 순이자 재측정한 순확정급여부채(자산) 금액과 이를 재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할인율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연결실체에 제도의 개정, 축소, 청산이 발생한 경우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연결실체의 연결 재무상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5)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개정) -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장기투자지분
개정사항은 기업이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해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는 금융상품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하여야 하며 이러한 금융상품에는 실질적으로 기업의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순투자의 일부를 구성하는 장기투자지분이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의 기대신용손실모델이 그러한 장기투자지분에 적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또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하면서 기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의 적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장기투자지분의 장부금액 조정사항인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의 손실이나 순투자에 대한 손상차손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연결실체는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장기투자지분이 없으므로 동 개정사항이 연결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6) 2015-2017 연차개선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개정)

이 개정은 공동약정의 한 당사자가 공동영업과 관련된 자산에 대한 권리와 부채에 대한 의무를 보유하다가 해당 공동영업(사업의 정의 충족)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할 경우 해당 거래는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결합에 대한 요구사항을 적용하여야 하며, 이 때 취득자는 공동영업에 대하여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지분 전부를 재측정하여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 이후에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결합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으며, 조기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동 개정사항이 연결실체의 연결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 '공동약정' (개정)

공동영업에 참여는 하지만 공동지배력을 보유하지 않은 공동영업 당사자가 그 공동영업(활동이 기업 회계기준서 제1103호에서 정의하는 사업에 해당)에 대한 공동지배력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이 개정은 이러한 경우 그 공동영업에 대해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지분은 재측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 이후에 공동지배력을 획득하는 거래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으며, 조기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동 개정사항이 연결실체의 연결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개정)

이 개정은 배당의 법인세효과는 소유주에 대한 분배보다는 분배가능한 이익을 창출하는 과거의 거래나 사건에 보다 직접적으로 연관된다는 것을 명확히 합니다. 따라서 기업은 과거의 거래나 사건과 관련하여 원래 인식하였던 항목에 따라 배당의 법인세효과를 당기손익, 기타포괄손익 또는 자본으로 인식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개정 내용을 최초로 적용하는 경우, 가장 이른 비교기간 이후에 인식된 배당의 법인세효과에 이 개정 내용을 적용합니다. 연결실체의 현행 회계처리는 개정 내용과 차이가 없으므로, 연결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3호 '차입원가' (개정)

이 개정은 기업이 적격자산을 후속적으로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할 준비가 되었을 때, 그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모든 차입금이 일반적인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에 포함되는 것을 명확히 합니다. 기업은 처음 이 개정 내용을 적용하는 회계연도 이후에 생기는 차입원가에 적용합니다. 이 개정 내용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처음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연결실체의 현행 회계처리는 개정 내용과 차이가 없으므로, 연결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2) 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은 회계기준

연결실체의 연결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현재 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아 연결실체가 채택하지 않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기준서 및 해석서의 제·개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개정- 사업의 정의

2018년 10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기업이 취득한 활동과 자산의 집합이 사업인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의 '사업의 정의'를 개정하였습니다. 개정 사항은 사업의 정의를 충족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사항을 명확히 하고 '시장참여자'가 누락된 투입물을 대체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취득한 '과정'이 실질적인지를 기업이 평가할 수 있는 지침을 추가하였으며, 사업 및 산출물의 정의를 좁히고 선택적 집중테스트를 신설하였습니다. 동 개정에 따라 새로운 적용사례가 추가되었습니다. 동 개정 사항은 최초적용일 이후에 발생하는 거래 또는 사건에 대하여 전진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개정일에 이 개정사항이 연결실체의 연결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와 제1008호 개정 - 중요성의 정의

2018년 10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와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의 중요성 정의를 일치시키고 정의의 특정 측면을 명확하게 개정하였습니다. 새 정의에 따르면, 특정 보고기업에 대한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일반목적재무제표에 정보를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하거나 불분명하게 하여, 이를 기초로 내리는 주요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다면 그 정보는 중요합니다. 이 중요성의 정의 개정 사항이 연결실체의 연결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2-2 연결기준

연결재무제표는 지배기업과 지배기업(또는 그 종속기업)이 지배하고 있는 다른 기업(특수목적기업 포함)의 재무제표를 통합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1) 피투자자에 대한 힘, 2) 피투자자에 대한 관여로 인한 변동이익에 대한 노출 또는 권리, 3) 투자자의 이익금액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피투자자에 대하여 자신의 힘을 사용하는 능력의 3가지 요소를 모두 충족할 때 지배력이 존재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기 지배력의 3가지 요소 중 하나 이상에 변화가 있음을 나타내는 사실과 상황이 존재하는 경우, 피투자자를 지배하는지 재평가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가 피투자자 의결권의 과반수 미만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피투자자의 관련활동을 일방적으로 지시할 수 있는 실질적인 능력을 가지기에 충분한 의결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피투자자에 대한 힘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가 보유하고 있는 의결권이 피투자자에게 대한 힘을 부여하기에 충분한지 여부를 평가할 때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모든 관련 사실과 상황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 보유 의결권의 상대적 규모와 다른 의결권 보유자의 주식 분산 정도
- 연결실체, 다른 의결권 보유자 또는 다른 당사자가 보유한 잠재적 의결권
- 계약상 약정에서 발생하는 권리
- 과거 주주총회에서의 의결양상을 포함하여, 결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시점에 연결실체가 관련 활동을 지시하는 현재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다른 추가적인 사실과 상황

당기 중 취득 또는 처분한 종속기업과 관련된 수익과 비용은 취득이 사실상 완료된 날부터또는 처분이 사실상 완료된 날까지 연결포괄손익계산서에 포함됩니다. 비지배지분의 장부금액은 최초 인식한 금액에 취득 이후 자본 변동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비례지분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비지배지분이 부(-)의 잔액이 되더라도 총포괄손익은 비지배지분에 귀속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를 구성하는 기업이 유사한 상황에서 발생한 동일한 거래나 사건에 대하여 연결재무제표에서 채택한 회계정책과 다른 회계정책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 재무제표를 적절히 수정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 내의 거래, 이와 관련된 자산과 부채, 수익과 비용 등은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모두 제거하고 있습니다.

지배력을 상실하지 않는 종속기업에 대한 연결실체의 소유지분변동은 자본거래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의 지배지분과 비지배지분의 장부금액은 종속기업에 대한 상대적 지분변동을 반영하여 조정하고 있습니다. 비지배지분의 조정금액과 지급하거나 수취한대가의 공정가치의 차이는 자본으로 직접 인식하고 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시키고 있습니다.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한 경우, (i) 수취한 대가 및 보유한 지분의 공정가치의 합계액과 (ii) 종속기업의 자산(영업권 포함)과 부채, 비지배지분의 장부금액의 차이금액을 처분손익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종속기업과 관련하여 기타포괄손익으로 이전에 인식한 금액에 대하여 관련 자산이나 부채를 직접 처분한 경우의 회계처리(즉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거나 직접 이익잉여금으로 대체)와 동일한 기준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전의 종속기업에 대한 잔여 투자는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3 사업결합

사업결합은 취득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사업결합 이전대가는 피취득자에 대한 지배력을 대가로 이전하는 자산, 연결실체가 발행하였거나 부담하는 부채 및 발행한 지분의 취득일의 공정가치(교환일예)의 합계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취득관련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취득일에 식별가능한 취득자산, 인수부채 및 우발부채는 다음을 제외하고는 취득일에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이연법인세자산이나 부채와 종업원급여약정과 관련된 자산이나 부채는 각각 기업회계 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에 따라 인식하고 측정하고 있습니다.
- 연결실체가 피취득자의 주식기준보상을 자신의 주식기준보상으로 대체하면서 발생한 부채나 지분상품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에 따라 측정하고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에 따라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된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에 따라 측정하고 있습니다.

영업권은 이전대가,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금액, 연결실체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공정가치의 합계금액이 취득일 현재 식별가능한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의 공정가치순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취득일에 식별가능한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의 공정가치순액이 이전대가,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금액, 연결실체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공정가치의 합계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재검토 후에도 존재하는 경우에, 그 초과금액은 즉시 영업매수차익으로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취득일에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요소가 현재의 지분이며 청산시에 보유자에게 기업 순자산의 비례적 몫에 대하여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비지배지분은 취득일에 공정가치나 피취득자의 식별가능한 순자산에 대하여 인식한 금액 중 현재의 지분상품의 비례적 몫 중 하나의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측정기준의 선택은 각 취득거래별로 이루어집니다. 그 밖의 모든 비지배지분 요소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측정기준을 달리 요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사업결합으로 인한 연결실체의 이전대가는 조건부 대가 약정으로 인한 자산과 부채를 포함하고 있으며 조건부대가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사업결합으로 인한 이전대가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취득일 이후 공정가치의 변동액은 측정기간 조정사항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소급하여 조정하고 해당 영업권에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측정기간 조정사항이란 '측정기간'(취득일로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음) 동안 취득일 현재 존재하던 사실과 상황에 대한 추가적 정보를 획득하여 발생하는 조정사항을 말합니다.

취득자가 피취득자에게 조건부 대가를 제공한 경우 동 대가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이전대가에 포함하고 있으며 자산이나 부채로 분류된 조건부 대가의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당기손익이나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본으로 분류된 조건부 대가는 재측정하지 않고 정산시 자본내에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조건부 대가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적용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적절한 기업회계기준서에 따라 측정하고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결합에서, 연결실체는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지분을 취득일(즉 연결실체가 지배력을 획득한 날)의 공정가치로 재측정하고 그결과 차손익이 있다면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취득일 이전에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가치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

식한 금액은 이전에 보유한 지분을 직접 처분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사업결합에 대한 최초 회계처리가 사업결합이 발생한 보고기간 말까지 완료되지 못한다 면, 연결실체는 회계처리가 완료되지 못한 항목의 잠정 금액을 재무제표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측정기간 동안에, 취득일 현재 존재하던 사실과 상황에 대하여 새롭게 입수한 정보가 있는 경우 연결실체는 취득일에 이미 알았더라면 취득일에 인식된 금액의 측정에 영향을 주었을 그 정보를 반영하기 위하여 취득일에 인식한 잠정금액을 소급하여 조정하거나 추가적인 자산과 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2-4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관계기업은 지배기업이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는 기업입니다. 유의적인 영향력은 피투자회사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이지만 그러한 정책에 대한 지배력이나 공동지배력은 아닙니다.

공동기업은 약정의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당사자들이 그 약정의 순자산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는 공동약정입니다. 공동지배력은 약정의 지배력에 대한 계약상 합의된 공유로서, 관련활동에 대한 결정에 지배력을 공유하는 당사자들 전체의 동의가 요구될 때에만 존재합니다.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에 의하여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의 당기순이익, 자산과 부채는 지분법을 적용하여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됩니다. 연결실체는 지분법을 적용함에 있어 관계기업과 공동기업투자는 취득원가에서 지분취득 후 발생한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의 순자산에 대한 지분변동액을 조정하고, 각 관계기업과 공동기업투자에 대한 손상차손을 차감한 금액으로 연결재무상태표에 표시하였습니다.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연결실체의 지분(실질적으로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연결실체의 순투자의 일부분을 구성하는 장기투자항목을 포함)을 초과하는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의 손실은 연결실체가 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를 지고 있거나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을 대신하여지급하여야 하는 경우에만 인식합니다.

취득일 현재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의 식별가능한 자산, 부채 그리고 우발부채의 공정가치순액 중 연결실체의 지분을 초과하는 매수원가는 영업권으로 인식하였습니다. 영업권은 투자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되며 투자자산의 일부로서 손상여부를 검토합니다. 매수원가를 초과하는 식별가능한 자산, 부채 그리고 우발부채의 순공정가치에 대한 연결실체의 지분 해당이 재검토 후에도 존재하는 경우에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연결실체는 관계기업에 대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을 상실하거나 공동기업에 대한 공동지배력을 상실한 때에 종전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잔여 보유 지분이 있다면 그 잔여 지분을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으며, 유의적인 영향력 및 공동지배력을 상실한 때의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의 장부금액과 잔여지분의 공정가치 및 처분대가와와의 차이는 당기손익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분법의 사용이 중단된 경우, 그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과 관련하여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모든 금액에 대하여,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이 관련자산이나 부채를 직접 처분한 경우의 회계처리와 동일한 기준으로, 당기손익으로 회계처리합니다. 그러므로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이 이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손익을관련 자산이나 부채의 처분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게되는 경우, 투자자는 관계기업과공동기업에 대한 유의적인 영향력을 상실한 때에 손익을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재분류 조정)합니다.

그리고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소유지분이 감소하지만 지분법을 계속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했던 손익이 관련 자산이나 부채의 처분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경우라면, 그 손익 중 소유지분의 감소와 관련된 비례적 부분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또한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의 일부가 매각예정분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지분법을 적용한 이후, 연결실체는 관계기업과 공동기업투자에 대하여 추가적인 손상차손을 인식할 필요가 있는지 결정합니다. 연결실체는 매 보고기간말에 관계기업과 공동기업투자가 손상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 판단하고, 그러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관계기업과 공동기업투자의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과의 차이를 손상차손으로 하여 연결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손상징후가 있는 경우, 관계기업과 공동기업투자의 전체 장부금액(영업권 포함)을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에 따라 회수가능액(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과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인식된 손상차손은 관계기업과 공동기업투자의 장부금액의 일부를 구성하는 어떠한 자산(영업권 포함)에도 배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손상차손의 환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에 따라 이러한 투자자산의 회수가능액이 후속적으로 증가하는 만큼 인식하고 있습니다.

관계기업투자가 공동기업투자가 되거나 반대로 공동기업투자가 관계기업투자로 되는 경우, 연결실체는 지분법을 계속 적용하며 잔여 보유지분을 재측정하지 않습니다.

연결실체가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과 거래를 하는 경우,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의 거래에서발생한 손익은 연결실체와 관련이 없는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연결실체의 연결재무제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2-5 공동영업에 대한 투자

공동영업은 약정의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당사자들이 그 약정의 자산에 대한 권리와 부채에 대한 의무를 보유하는 공동약정입니다. 공동지배력은 약정의 지배력에 대한 계약상 합의된 공유로서, 관련 활동에 대한 결정에 지배력을 공유하는 당사자들 전체의 동의가 요구될 때에만 존재합니다.

연결실체가 공동영업 하에서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연결실체는 공동영업자로서 공동영업에 대한 자신의 지분과 관련하여 다음을 인식합니다.

- 자신의 자산. 공동으로 보유하는 자산 중 자신의 몫을 포함
- 자신의 부채. 공동으로 발생한 부채 중 자신의 몫을 포
- 공동영업에서 발생한 산출물 중 자신의 몫의 판매 수익
- 공동영업의 산출물 판매 수익 중 자신의 몫
- 자신의 비용. 공동으로 발생한 비용 중 자신의 몫을 포함

연결실체는 공동영업에 대한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자산, 부채, 수익 및 비용을 특정 자산, 부채, 수익 및 비용에 적용하는 기준서에 따라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공동영업자인 연결실체가 공동영업에 자산을 판매하거나 출자하는 것과 같은 거래를 하는 경우, 그것은 공동영업의 다른 당사자와의 거래를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연결실체는 거래의 결과인 손익을 다른 당사자들의 지분 한도까지만 인식하고 있습니다.

공동영업자인 연결실체가 공동영업과 자산의 구매와 같은 거래를 하는 경우, 연결실체는 자산을 제3자에게 재판매하기 전까지는 손익에 대한 자신의 몫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2-6 영업권

사업결합에서 발생하는 영업권은 지배력을 획득하는 시점(취득일)에 원가에서 누적손상차손을 차감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손상검사를 위하여 영업권은 사업결합으로 인한 시너지효과가 예상되는 연결실체의 현금창출단위(또는 현금창출단위집단)에 배분됩니다.

영업권이 배분된 현금창출단위에 대해서는 매년 그리고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마다 손상검사를 수행합니다.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할 경우, 손상차손은 먼저 현금창출단위에 배분된 영업권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잔여손상차손은 현금창출단위를 구성하는 다른 자산들의 장부금액에 비례하여 배분하고 있습니다. 영업권의 손상차손은 연결당기손익으로 직접 인식되어 있습니다. 영업권에 대해 인식한 손상차손은 추후에 환입할 수 없습니다.

관련 현금창출단위를 처분할 경우 관련 영업권 금액은 처분손익의 결정에 포함됩니다.

관계기업을 취득함에 따라 발생하는 영업권에 대한 연결실체의 회계정책은 주석 2-4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2-7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연결실체는 석유화학제품을 제조 및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고객과의 계약에서 연결실체는 재화나 용역의 통제가 고객에 이전되었을 때, 해당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받을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 대가를 반영하는 금액으로 수익을 인식합니다. 연결실체는 고객과의 계약에서 재화나 용역을 고객에게 제공하기 전에 정해진 각 재화나 용역을 통제하므로 본인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1) 변동대가

계약이 변동대가를 포함한 경우에 연결실체는 고객에 약속한 재화를 이전하고 그 대가로 받을 금액을 추정합니다. 변동대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나중에 해소될 때, 이미 인식한 누적 수익 금액 중 유의적인 부분을 되돌리지(환원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정도까지만 변동대가를 계약의 개시 시점에 추정하고 거래가격에 포함합니다.

(2) 유의적인 금융요소

일반적으로 연결실체는 고객으로부터 단기선수금을 수령합니다. 기준서 제1115호의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여, 연결실체는 계약을 개시할 때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는 시점과 고객이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시점 간의 기간이 1년 이내일 것이라고 예상된다면 약속한 대가(금액)에 유의적인 금융요소의 영향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3) 보증 의무

연결실체는 법의 요구에 따라 판매 시점에 결함이 존재하는 제품을 수리하는 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확신 유형의 보증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에 따라 회계처리합니다.

(4) 계약 잔액

- 계약자산

계약자산은 고객에게 이전한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그 대가를 받을 권리입니다. 고객이 대가를 지급하기 전이나 지급기일 전에 연결실체가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는 경우 그 대가를 받을 기업의 권리로 그 권리에 시간의 경과 외의 조건이 있는 자산은 계약자산입니다.

- 매출채권

수취채권은 무조건적인 연결실체의 권리를 나타냅니다. 시간의 경과에 따라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금융자산 관련 회계정책은 주석 2-15 참고).

- 계약부채

계약부채는 연결실체가 고객에게서 이미 받은 대가(또는 지급기일이 된 대가)에 상응하여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여야 하는 기업의 의무입니다. 만약 연결실체가 재화나 용역을 고객에 이전하기 전에 고객이 대가를 지불한다면, 지급이 되었거나 지급기일 중 이른시점에 계약부채를 인식합니다. 계약부채는 연결실체가 계약에 따라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2-8 리스

연결실체는 계약에서 대가와 교환하여,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 통제권을 일정기간 이전하게 하는지를 고려하여 계약의 약정시점에, 계약자체가 리스인지, 계약이 리스를 포함하는지를 판단합니다.

(1) 리스이용자

연결실체는 단기리스와 소액 기초자산 리스를 제외한 모든 리스에 대하여 하나의 인식과 측정 접근법을 적용합니다. 연결실체는 리스료 지급의무를 나타내는 리스부채와 기초자산의 사용권을 나타내는 사용권자산을 인식합니다.

· 사용권자산

연결실체는 리스개시일(즉, 기초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 날)에 사용권자산을 인식합니다. 사용권자산은 원가로 측정하고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측정하며, 리스부채의 재측정이 발생하는 경우 조정합니다. 사용권자산의 원가에는 리스부채 인식금액, 리스개설직접원가 발생액이 포함되며, 리스개시일이나 그 전에 지급한 리스선금금이나 인센티브는 가감합니다. 연결실체는 리스기간 종료시점에 리스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얻을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예측되지 않는다면, 사용권자산은 추정내용연수와 리스기간 중 더 짧은 기간에 걸쳐 정액 기준으로 감가상각합니다. 연결실체는 사용권자산에 대한 손상 검토를 수행합니다.

· 리스부채

연결실체는 리스개시일에 그날 현재 지급하지 않은 리스료의 현재가치로 리스부채를 측정합니다. 리스료에는 받을 리스 인센티브를 제외한 고정리스료(실질적인 고정리스료를 포함),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와 잔존가치 보증에 따라 연결실체가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이 포함됩니다. 또한 연결실체는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 그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리스기간이 연결실체의 종료선택권 행사를 반영하는 경우에 그 리스를 종료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을 리스료에 포함합니다.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 변동리스료는 리스료를 지급하는 사건이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연결실체는 리스료의 현재가치를 계산할 때,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리스개시일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합니다. 연결실체는 리스개시일후에 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를 반영하여 리스부채의 장부금액을 증액하고, 지급한 리스료를 반영하여 리스부채의 장부금액을 감액합니다. 또한 연결실체는 리스의 변경을 반영하거나 실질적인 고정리스료의 변경을 반영하거나 리스 기간의 변경 또는 기초자산 매수선택권 평가의 변경이 있는 경우 이 변경을 반영하여 리스부채를 재측정합니다.

- 단기리스 및 소액자산리스

연결실체는 단기리스(예, 리스 기간이 리스개시일로부터 12개월 이하이고 매수선택권이 없는 리스)에 대해 인식면제를 적용합니다. 또한, 가치가 낮은 장비(예, US\$ 5,000 이하인리스)에 대해 소액자산리스로 인식면제를 적용합니다. 단기리스와 소액자산리스에 대한 리스료는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 기준으로 비용을 인식합니다.

- 연장선택권이 있는 계약에서 계약기간을 결정할 때 중요한 판단

연결실체는 리스의 해지불능기간에 리스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 그 선택권의 대상 기간과 리스 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 그 선택권의 대상 기간을 포함하여 리스기간을 산정합니다. 연결실체는 일부 리스에 대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연장선택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이 선택권의 행사가능성이 상당히 확실한지를 평가할 때 판단을 적용합니다. 즉,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경제적유인이 생기게하는 모든 관련 요소를 고려합니다. 리스개시일 이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나 상황이 변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상황에 변화가 발생하여 선택권의 행사가능성(또는 행사하지 않을 가능성)에 영향을 미친다면(예를 들어, 사업 전략의 변경), 연결실체는 리스 기간을 재평가합니다.

(2) 리스제공자

연결실체는 기초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 않는 리스를 운용리스로 분류합니다. 리스료 수익은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 기준으로 인식하며, 영업 성격에 따라 손익계산서에서 매출에 포함됩니다. 운용리스 체결과정에서 부담하는 리스개설 직접원가를 기초자산의 장부금액에 더하고 리스료 수익과 같은 기준으로 리스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조건부 임대료는 임대료를 수취하는 시점에 매출로 인식합니다.

2-9 외화환산

연결실체는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의 통화(기능통화)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해 연결실체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는 연결실체의 기능통화이면서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표시통화인 '원'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의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기능통화 외의 통화(외화)로 이루어진 거래는 거래일의 환율로 기록됩니다. 매 보고기간 종료일에 화폐성 외화항목은 보고기간 종료일의 환율로 재환산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공정가치가 결정된날의 환율로 재환산하지만, 역사적 원가로 측정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재환산하지 않습니다.

화폐성 항목의 외환차이는 다음을 제외하고는 발생하는 기간의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미래 생산에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중인 자산과 관련되고, 외화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 조정으로 간주되는 자산의 원가에 포함되는 외환차이
- 특정 외화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위험회피회계정책에 대해서는 주석 2-15 참고)
- 해외사업장과 관련하여 예측할 수 있는 미래에 결제할 계획도 없고 결제될 가능성도 없는 채권이나 채무로서 해외사업장순투자의 일부를 구성하는 화폐성항목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

이러한 외환차이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순투자의 전부나 일부 처분시점에서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2-10 차입원가

연결실체는 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제조와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를 적격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이를 때까지 당해 자산원가의 일부로 자본화하고 있습니다. 적격자산이란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될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 상당한기간을 필요로 하는 자산을 말합니다.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차입한 당해 차입금에서 발생하는 일시적 운용 투자수익은 자본화가능차입원가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기타 차입원가는 발생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11 정부보조금

연결실체는 정부보조금에 부수되는 조건의 준수와 보조금 수취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경우에만 정부보조금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인 정부대여금의 효익은 정부보조금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해당 정부보조금은 시장이자율에 기초하여 산정된 정부대여금 공정가치와 수취한 대가의 차이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자산관련 정부보조금은 자산의 장부금액을 결정할 때 차감하여 연결재무상태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정부보조금은 관련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비를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수익관련 정부보조금은 보상하도록 의도된 비용에 대응시키기 위해 체계적인 기준에 따라해당 기간에 걸쳐 수익으로 인식하며, 이미 발생한 비용이나 손실에 대한 보전 또는 향후 관련원가의 발생 없이 연결실체에 제공되는 즉각적인 금융지원으로 수취하는 정부보조금은 수취할 권리가 발생하는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12 퇴직급여비용과 해고급여

확정기여형퇴직급여제도에 대한 기여금은 종업원이 이에 대하여 지급받을 자격이 있는 용역을 제공한 때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확정급여형퇴직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확정급여채무는 독립된 보험계리법인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을 이용하여 매 보고기간말에 보험수리적 평가를 수행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보험수리적손익과 사외적립자산의 수익(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 제외) 및 자산인식상한효과의 변동으로 구성된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는 재측정요소가 발생한 기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재무상태표에 즉시 반영하고 있습니다.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한 재측정요소는 이익잉여금으로 즉시 인식하며, 후속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아니합니다.

과거근무원가는 제도의 개정이 발생한 기간에 인식하고, 순이자는 기초시점에 순확정급여부채(자산)에 대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출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원가의 구성요소는 근무원가(당기근무원가와 과거근무원가 및 정산으로 인한 손익)와 순이자비용(수익) 및 재측정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근무원가와 순이자비용(수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제도의 축소로 인한 손익은 과거근무원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상 확정급여채무는 확정급여제도의 실제 과소적립액과 초과적립액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산으로 산출된 초과적립액은 제도로부터 환급받거나 제도에 대한 미래 기여금이 절감되는 방식으로 이용가능한 경제적효익의 현재가치를 가산한 금액을 한도로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해고급여에 대한 부채는 연결실체가 해고급여의 제안을 더 이상 철회할 수 없게 된 날 또는 연결실체가 해고급여의 지급을 수반하는 구조조정에 대한 원가를 인식한 날 중 이른날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2-13 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당기법인세

당기 법인세부담액은 당기의 과세소득을 기초로 산정됩니다. 다른 과세기간에 가산되거나차감될 손익항목 및 비과세항목이나 손금불인정항목 때문에 과세소득과 포괄손익계산서상 세전손익은 차이가 발생합니다. 연결실체의 당기 법인세와 관련된 부채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 및 세법에 근거하여 계산됩니다.

(2) 이연법인세

이연법인세는 재무제표상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과세소득 산출시 사용되는 세무기준액과의 차이인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인식됩니다. 이연법인세부채는 모든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인식됩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모든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인식됩니다.

그러나 가산할 일시적차이가 영업권을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거나,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가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에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경우 이연법인세부채는 인식하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차감할 일시적

차이가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가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거래에서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인식하지 않습니다.

연결실체가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으며,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속기업과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의 투자지분에 관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합니다. 또한 이러한 투자자산 및 투자지분과 관련된 차감할 일시적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일시적차이의 혜택을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인식합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말에 검토하고, 이연법인세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회수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않은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 및 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부채가 결제되거나 자산이 실현되는 회계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합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측정할 때에는 보고기간말 현재 연결실체가 관련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에 따른 법인세효과를 반영하였습니다.

연결실체는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권리를 가지고 있고 과세대상기업이 동일한 경우 혹은 과세대상기업은 다르지만 당기법인세부채와 자산을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거나, 유의적인 금액의 이연법인세부채가 결제되거나 이연법인세자산이 회수될 미래의 각 회계기간마다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가 동일한 과세당국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만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상계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3)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의 인식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는 동일 회계기간 또는 다른 회계기간에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으로 직접 인식되는 거래나 사건 또는 사업결합으로부터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익이나 비용으로 인식하여 당기손익에 포함합니다. 사업결합시에는 법인세효과는 사업결합에 대한 회계처리에 포함되어 반영됩니다.

2-14 재고자산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원가는 미착품(개별법)을 제외하고는 평균법에 따라 결정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전환원가 및 재고자산을 이용가능한 상태로 준비하는데 필요한 기타 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순실현가능가치는 정상적인 영업과정의 예상판매가격에서 예상되는 추가완성원가와 판매비용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매출원가는 재고자산 판매에 따른 수익을 인식하는 기간에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으로 인식하며, 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한 평가손실과 모든 감모손실은 감액이나 감모가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의 상승으로인한 재고자산평가손실의 환입은 환입이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된 재고자산의 매출원가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2-15 금융상품 - 최초 인식과 후속 측정

금융상품은 거래당사자 어느 한쪽에게는 금융자산이 생기게 하고 거래상대방에게 금융부채나 지분상품이 생기게 하는 모든 계약입니다.

(1) 금융자산

1) 최초 인식과 측정

금융자산은 최초 인식 시점에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그리고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됩니다.

최초 인식 시점에 금융자산의 분류는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과 금융자산을 관리하기 위한 연결실체의 사업모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포함되지 않거나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는 매출채권을 제외하고는, 연결실체는 금융자산을 최초에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경우가 아니라면 거래원가를 가감합니다.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포함되지 않거나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는 매출채권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결정된 거래가격으로 측정합니다.

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SPPI)되어야 합니다. 이 평가는 SPPI 테스트라고 하며, 개별 상품 수준에서 수행됩니다.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연결실체의 사업모형은 현금흐름을 발생시키기 위해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방법과 관련됩니다. 사업모형은 현금흐름의 원천이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인지, 매도인지 또는 둘 다 인지를 결정합니다.

시장의 합의나 규제에 의해 설정된 기간 프레임 내에서 금융자산을 이전하는 것이 요구되는 금융자산의 매입 또는 매도(정형화된 거래)는 거래일에 인식됩니다. 즉, 연결실체가 금융자산을 매입하거나 매도하기로 약정한 날을 의미합니다.

2) 후속 측정

후속 측정을 위해 금융자산은 아래 네 가지의 범주로 분류됩니다.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채무상품)
- 누적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재순환하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채무상품)
- 제거시 누적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재순환하지 않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지분상품)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①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채무상품)

연결실체는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
- 금융자산의 계약 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 잔액에 대한 이자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 발생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은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EIR)법을 사용하여 측정되며, 손상을 인식합니다. 자산의 제거, 변경 또는 손상에서 발생하는 이익과 손실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②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채무상품)

연결실체는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채무상품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으로 측정합니다.

-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
- 금융자산의 계약 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 발생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에서, 이자수익, 외화환산손익, 그리고 손상 또는 환입은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과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되어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나머지 공정가치 변동 부분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금융자산의 제거 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공정가치 누적 변동분은 당기손익으로 재순환됩니다.

③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지분상품)

최초 인식 시점에, 연결실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에서의 지분의 정의를 충족하고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지 않은 지분상품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하는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재순환되지 않습니다. 배당은 연결실체가 금융자산의 원가 중 일부를 회수하여 이익을 얻는 경우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되며, 이를 제외하고는 받을 권리가 확정되었을 때 손익계산서상 기타수익으로 인식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은 손상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연결실체는 비상장지분상품에 대해서도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④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은 단기매매항목, 최초 인식 시에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지정된 금융자산 또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요구되는 금융자산을 포함합니다. 단기간 내에 매도하거나 재구매할 목적으로 취득한 금융자산은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됩니다. 분리된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한 파생상품은 효과적인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됩니다. 현금흐름이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지 않은 금융자산은 사업모형에 관계없이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 및 측정됩니다. 상기 문단에서 서술된 것과 같이 채무상품이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됨에도 불구하고 회계 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유의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면 채무상품을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은 재무상태표에 공정가치로 표시되며, 공정가치의 순변동은 손익계산서에서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이 범주는 파생상품과 공정가치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하는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하지 않은 상장 지분상품을 포함합니다. 상장 지분상품에 대한 배당은 권리가 확정된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복합계약에 내재된 파생상품은 경제적인 특성과 위험이 주계약에 밀접하게 관련되지 않고, 내재파생상품과 동일한 조건인 별도의 상품이 파생상품의 정의를 충족하며, 복합계약이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는다면 주계약으로부터 분리하여 별도의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합니다. 내재파생상품은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공정가치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현금흐름을 유의적으로 변경시키는 계약 조건의 변경이 있거나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범주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만 재평가가 발생합니다.

주계약이 금융자산인 복합계약에서 내재파생상품은 분리하여 회계처리하지 않습니다. 주계약인 금융자산과 내재파생상품은 상품 전체를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합니다.

3) 제거

금융자산 (또는, 금융자산의 일부 또는 비슷한 금융자산의 집합의 일부)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제거됩니다.

-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을 수취할 권리 소멸
- 연결실체가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을 수취할 권리를 양도하거나 양도(pass-through) 계약에 따라 수취한 현금흐름 전체를 중요한 지체 없이 제3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에 연결실체는 금융자산의 보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거나 금융자산의 보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도 보유하지도 않으나 자산에 대한 통제를 이전

연결실체가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을 수취할 권리를 이전하거나 양도(pass-through) 계약을 체결할 때, 자산을 소유함에 따른 위험과 보상을 유지하는지를 평가합니다. 연결실체가 금융자산의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지도 이전하지도 않았다면, 해당 금융자산에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까지 그 금융자산을 계속 인식합니다. 이 경우에, 연결실체는 관련된 부채를 인식합니다. 양도된 자산과 관련된 부채는 연결실체가 보유한 권리와 의무를 반영하여 측정합니다.

보증을 제공하는 형태인 지속적 관여는, 양도된 자산의 장부금액과 수취한 대가 중 상환을 요구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됩니다.

4) 금융자산의 손상

금융자산의 손상과 관련된 자세한 공시 사항은 아래 주석에 제공됩니다.

- 유의적인 가정에 대한 공시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채무상품
- 계약자산을 포함한 매출채권

연결실체는 당기손익-공정가치 항목을 제외한 모든 채무상품에 대하여 기대신용손실(ECL)에 대한 충당금을 인식합니다. 기대신용손실은 계약상 수취하기로 한 현금흐름과 연결실체가 수취할 것으로 예상하는 모든 현금흐름의 차이를 최초의 유효이자율로 할인하여 추정합니다. 예상되는 현금흐름은 보유한 담보를 처분하거나 계약의 필수 조건인 그 밖의 신용 보강으로부터 발생하는 현금흐름을 포함합니다.

기대신용손실은 두 개의 stage로 인식합니다. 최초 인식 이후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가 없는 신용 익스포저에 대하여, 기대신용손실은 향후 12개월 내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채무불이행 사건으로부터 발생하는 신용손실(12개월 기대신용손실)을 반영합니다. 최초 인식 이후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가 있는 신용 익스포저에 대하여, 손실충당금은 채무불이행 사건이 발생하는 시기와 무관하게 익스포저의 남은 존속기간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도록 요구됩니다.

매출채권과 계약자산에 대하여, 연결실체는 기대신용손실 계산에 간편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결실체는 신용위험의 변동을 추적하지 않는 대신에, 각 결산일에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인식합니다. 연결실체는 특정 채무자에 대한 미래전망정보와 경제적 환경을 반영하여 조정된 과거 신용손실 경험에 근거하여 충당금 설정률표를 설정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에 대하여, 연결실체는 낮은 신용위험 간편법을 적용합니다.

매 결산일에, 연결실체는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사용하여 채무상품이 낮은 신용위험을 가지고 있다고 고려되는지를 평가합니다. 이러한 평가를 위해서, 연결실체는 채무상품의 내부 신용 등급을 재평가합니다. 또한, 연결실체는 계약상의 지급이 30일을 초과하였을 때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가 있는지를 고려합니다.

연결실체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이 최상위 투자등급에 해당하는 상장채권만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낮은 신용 위험 투자자산으로 평가됩니다. 연결실체의 정책은 이러한 상품을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측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초 인식 이후에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가 있다면 손실충당금은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근거하여 산출됩니다. 연결실체는 채무상품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했는지를 결정하고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기 위해 신용평가기관의 등급을 사용합니다.

연결실체는 계약상 지급이 90일을 초과하여 연체되는 경우에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특정 상황에서, 연결실체는 내부 또는 외부 정보가 연결실체에 의한 모든 신용보강을 고려하기 전에는 연결실체는 계약상의 원금 전체를 수취하지 못할 것을 나타내는 경우에 금융자산에 채무불이행 사건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금융자산은 계약상 현금흐름을 회수하는 데에 합리적인 기대가 없을 때 제거됩니다.

(2) 금융부채

1) 최초 인식과 측정

금융부채는 최초 인식 시점에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대출과 차입, 미지급금 또는 효과적인 위험회피 수단으로 지정된 파생상품으로 적절하게 분류됩니다.

모든 금융부채는 최초에 공정가치로 인식되고, 대여금, 차입금 및 미지급금의 경우에는 직접 관련된 거래원가를 차감합니다.

연결실체의 금융부채는 매입채무와 기타 미지급금 및 기타 금융부채를 포함합니다.

2) 후속 측정

금융부채의 측정은 아래에서 언급된 분류에 따릅니다.

①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는 단기매매금융부채와 최초 인식 시점에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지정된 금융부채를 포함합니다.

금융부채가 단기간 내에 재매입되는 경우에는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됩니다. 이 범주는 또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 정의된 위험회피관계에 있는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은 파생상품을 포함합니다. 또한 분리된 내재파생상품은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됩니다.

단기매매항목인 금융부채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항목으로 지정된 금융부채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최초 인식 시점에만 지정됩니다. 연결실체는 어떤 금융부채도 당기손익-공정가치항목으로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② 대여금 및 차입금

최초 인식 이후에, 이자부 대여금과 차입금은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됩니다. 부채가 제거되거나 유효이자율 상각 절차에 따라 발생하는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상각후원가는 유효이자율의 필수적인 부분인 수수료나 원가에 대한 할인이나 할증액을 고려하여 계산됩니다. 이 범주는 일반적으로 이자부 대여나 차입에 적용됩니다.

3) 제거

금융부채는 지급 의무의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에 제거됩니다. 기존 금융부채가 대여자는 동일하지만 조건이 실질적으로 다른 금융부채에 의해 교환되거나, 기존 부채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이러한 교환이나 변경은 최초의 부채를 제거하고 새로운 부채를 인식하게 합니다. 각 장부금액의 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3) 금융상품의 상계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는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 가능한 상계 권리를 현재 가지고 있거나, 차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 재무상태표에서 상계하여 순액으로 표시됩니다.

2-16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원가로 측정하고 있으며 최초 인식 후에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원가는 당해 자산의 매입 또는 건설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발생한 지출로서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와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최초에 추정되는 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상적인 수선·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 중 토지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이를 제외한 유형자산은 아래에 제시된 개별자산별로 추정된 경제적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구 분	내용연수
건 물	10~50년
구 축 물	15~40년
기 계 장 치	7~15년
차 량 운 반 구	4년
비 품	4년
공 구 와 기 구	4년
기타의유형자산	1~5년

유형자산을 구성하는 일부의 원가가 당해 유형자산의 전체원가에 비교하여 중요하다면, 해당 유형자산을 감가상각할 때 그 부분은 별도로 구분하여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을 처분하거나 사용이나 처분을 통한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해당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을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유형자산이 제거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17 투자부동산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을 얻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은 취득시 발생한 거래원가를 포함하여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하며, 최초 인식 후에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후속지출에 의해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상적인 수선·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 중 토지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토지를 제외한 투자부동산은 경제적 내용연수에 따라 40~50년을 적용하여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을 처분하거나, 투자부동산의 사용을 영구히 중지하고 처분으로도 더 이상의 미래경제적 효익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 투자부동산의 장부금액을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투자부동산이 제거되는 시점의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18 무형자산

(1) 개별취득하는 무형자산

내용연수가 유한한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인식하며, 추정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의 내용연수 및 상각방법은 매 보고기간 종료일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인식합니다.

(2)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 - 연구 및 개발원가

연구활동에 대한 지출은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개발활동(또는 내부프로젝트의 개발단계)과 관련된 지출은 해당 개발계획의 결과가 새로운 제품의 개발이나 실질적 기능 향상을 위한 것이며 연결실체가 그 개발계획의 기술적, 상업적 달성가능성이 높고 소요되는 자원을 신뢰성있게

측정가능한 경우에만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그 무형자산이 위에서 기술한 인식조건을 최초로 충족시킨 시점 이후에 발생한 지출의 합계이며,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으로 인식되지 않는 개발원가는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은 최초 인식 후에 취득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3) 무형자산의 제거

무형자산을 처분하거나 사용이나 처분을 통한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해당 무형자산의 장부금액을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 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무형자산이 제거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4) 무형자산의 내용연수

무형자산 중 회원권은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이를 제외한 무형자산은 아래에 제시된 개별자산별로 추정된 경제적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구 분	내용연수
산업재산권	5~10년
기타의 무형자산	4~5년

2-19 영업권을 제외한 유·무형자산의 손상

영업권을 제외한 유·무형자산은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매 보고기간말마다 검토하고 있으며,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 경우에는 손상차손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개별 자산별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으며, 개별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자산은 합리적이고 일관된 배분기준에 따라 개별 현금창출단위에 배분하며, 개별 현금창출단위로 배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합리적이고 일관된 배분기준에 따라 배분될 수 있는 최소 현금창출단위집단에 배분하고 있습니다.

비한정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 또는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은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와 관계없이 매년 손상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개별 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으로 측정하며, 자산(또는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자산(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감소시키고 감소된 금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과거기간에 인식한 손상차손을 환입하는 경우 개별자산(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은 수정된 회수가능액과 과거기간에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다면 현재 기록되어 있을 장부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손상차손환입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20 충당부채

충당부채는 과거의 사건으로 인한 현재의무(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로서, 당해 의무를 이행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의무의 이행에 소요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을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관련된 사건과 상황에 대한 불가피한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현재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각 보고기간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입니다.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가 중요한 경우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할인율은 부채의 고유한 위험과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세전 이자율입니다. 시간경과에 따른 충당부채의 증가는 발생시 금융비용으로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를 결제하기 위해 필요한 지출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 3 자가 변제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연결실체가 의무를 이행한다면 변제를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하고 그 금액을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변제금액을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말마다 충당부채의 잔액을 검토하고, 보고기간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여 조정하고 있습니다. 의무이행을 위하여 경제적효익이 내재된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더이상 높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충당부채를 환입하고 있습니다.

2-21 파생금융상품과 위험회피회계

(1) 최초 인식 및 후속 측정

연결실체는 외화위험, 이자율위험, 상품 가격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통화선도계약, 이자율스왑, 상품선도계약과 같은 파생금융상품을 이용합니다. 이러한 파생금융상품은 파생계약이 체결된 시점인 최초 인식일에 공정가치로 인식되고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재측정됩니다. 파생상품은 공정가치가 0보다 클 때 금융자산으로 인식되며, 공정가치가 0보다 작을 때는 금융부채로 인식됩니다.

위험회피회계의 목적에 따라 위험회피는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 인식한 자산이나 부채 또는 미인식된 확정계약의 공정가치 변동에 대한 위험을 회피하는 공정가치 위험회피
- 인식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특정위험에 기인하는 현금흐름의 변동,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 예상 거래의 현금흐름 변동 또는 미인식된 확정계약의 외화위험에 대한 위험을 회피하는 현금흐름위험회피
- 해외사업장순투자의 위험회피

위험회피관계의 개시 시점에 연결실체는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고자 하는 위험회피관계와 위험관리 목적 및 위험회피전략을 공식적으로 지정하고 문서화합니다.

2018년 1월 1일 이전에, 문서화는 위험회피수단, 위험회피대상항목, 회피대상위험의 성격 및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나 현금흐름의 변동위험을 위험회피수단이 상쇄하는 효과를 평가하는 방법 등을 포함하였습니다. 이 위험회피는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공정가치나 현금흐름의 변동을 상쇄하는 데 있어 높은 위험회피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위험회피효과를 위험회피기간에 계속적으로 평가하며 위험회피로 지정된 재무보고기간 전체에 걸쳐 실제로 높은 위험회피효과가 있었는지 결정하였습니다.

2018년 1월 1일부터 문서화는 위험회피수단, 위험회피대상항목, 회피대상위험의 특성 및 위험회피관계가 위험회피효과에 대한 규정을 충족하는지를 평가하는 방법(위험회피에 비효과적인 부분의 원인 분석과 위험회피비율을 결정하는 방법을 포함)을 포함합니다. 위험회피관계는 다음의 위험회피효

과에 대한 규정을 모두 충족합니다.

-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 사이에 '경제적 관계'가 있습니다.
- 신용위험의 효과가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의 경제적 관계에서 생긴 '가치 변동의 대부분'을 차지하지 않는다.
- 위험회피관계의 위험회피비율은 기업이 실제로 위험을 회피하는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수량과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수량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연결실체가 실제 사용하는 위험회피수단의 수량의 비율과 같다.

위험회피회계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위험회피는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됩니다.

1) 공정가치위험회피

위험회피수단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회피대상위험에 기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변동은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장부금액에 포함되며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항목에 대한 공정가치위험회피에서 장부금액 조정액은 위험회피가 존속하는 기간에 걸쳐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됩니다. 유효이자율 상각은 조정액이 생긴 직후에 시작할 수 있으며, 늦어도 위험회피 손익에 대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조정을 중단하기 전에는 시작해야 합니다.

위험회피대상항목이 제거된 경우에 상각되지 않은 공정가치는 즉시 제거하고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미인식된 확정계약이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되었다면, 회피대상 위험에 기인한 확정계약의 공정가치 누적 변동분을 자산이나 부채로 인식하고, 이에 상응하는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 현금흐름위험회피

위험회피수단에서 발생한 손익의 효과적인 부분은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 범위 내에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며, 비효과적인 부분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은 위험회피수단의 손익 누계액과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 변동 누계액 중 적은 금액으로 조정합니다.

연결실체는 미래의 예상거래나 확정계약의 외화위험 익스포저에 대한 통화선도계약과 상품 가격의 변동성에 대한 상품선도계약을 통해 위험회피할 수 있습니다. 통화선도계약과 관련된 비효과적인 부분은 기타비용으로 인식되며, 상품선도계약과 관련된 비효과적인 부분은 기타영업수익 또는 기타영업비용으로 인식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석 22를 참조합니다.

2018년 1월 1일 이전에, 연결실체는 모든 선도계약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했습니다.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변동에서 발생하는 모든 손익은 현금흐름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을 제외하고는 즉시 당기손익으로 처리되었으며, 현금흐름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되고 위험회피대상항목이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때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었습니다.

2018년 1월 1일부터 연결실체는 선도계약의 특정 요소를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선도요소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되며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으로서 별도 자본 항목으로 인식됩니다.

기타포괄손익에 누적된 금액(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은 위험회피거래의 특성에 따라 회계처리됩니다. 위험회피대상 거래가 후속적으로 비금융항목을 인식하게 된다면,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은 제

거되고 관련된 자산이나 부채의 최초 인식 금액에 포함합니다. 이것은 재분류조정이 아니며, 기타포괄손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것은 비금융자산 또는 비금융부채에 대한 위험회피대상 거래가 후속적으로 공정가치위험회피 회계를 적용하는 확정계약이 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현금흐름위험회피에서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은 위험회피대상 현금흐름이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조정됩니다.

만약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가 중단된 경우에, 위험회피대상 예상현금흐름이 여전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은 기타포괄손익에 남겨 둡니다. 그렇지 않다면,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은 재분류조정으로 즉시 당기손익으로 처리됩니다. 중단 이후에 위험회피대상 예상현금흐름이 발생한다면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은 위에서 설명된것과 같이 기초 거래의 특성에 따라 회계처리되어야 합니다.

3) 해외사업장순투자의 위험회피

해외사업장순투자의 위험회피는 순투자의 일부분으로 회계처리되는 화폐성항목에 대한 위험회피를 포함하며, 현금흐름위험회피와 유사한 방법으로 회계처리됩니다. 위험회피수단에서 발생하는 손익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되며, 비효과적인 부분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해외사업장의 제거 시, 자본으로 인식된 누적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이전됩니다.

2-22 공정가치

공정가치는 가격이 직접 관측가능한지 아니면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여 추정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면서 수취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하게 될 가격입니다.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추정함에 있어 연결실체는 시장참여자가 측정일에 자산이나 부채의 가격을 결정할 때 고려하는 자산이나부채의 특성을 고려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주식기준보상거래,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 '리스'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리스거래,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 및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의 사용가치와 같이 공정가치와 일부 유사하나 공정가치가 아닌 측정치를 제외하고는 측정 또는 공시목적상 공정가치는 상기에서 설명한 원칙에 따라 결정됩니다. 또한 재무보고목적상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의 관측가능한 정도와 공정가치측정치 전체에 대한 투입변수의 유의성에 기초하여 다음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공정가치측정치를 수준 1, 2 또는 3으로 분류합니다.

- | | |
|--|---|
| (수준 1) 측정일에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접근 가능한 활성시장의(조정되지 않은) 시가 | 공 |
| (수준 2) 수준 1의 공시가격 이외에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관 | 측 |
| 가능한 투입변수 | |
| (수준 3)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 |

2-23 중요한 판단과 추정불확실성의 주요 원천

주석 2에서 기술된 연결실체의 회계정책을 적용함에 있어서, 경영진은 다른 자료로부터 쉽게 식별할 수 없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에 대한 판단, 추정 및 가정을 하여야 합니다. 퇴직급여부채 등의 추정과 관련 가정은 역사적 경험과 관련성이 있다고 간주되는 기타 요인들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결과는 이러한 추정치들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추정과 기초적인 가정은 계속하여 검토됩니다. 회계추정에 대한 수정은 그러한 수정이 오직 당해 기간에만 영향을 미칠 경우 수정이 이루어진 기간에 인식되며, 당기와 미래 기간 모두 영향을 미칠 경우 수정이 이루어진 기간과 미래 기간에 인식됩니다.

별도 재무제표

재무상태표

재 무 상 태 표

제 44(당) 기말 2019년 12월 31일 현재

제 43(전) 기말 2018년 12월 31일 현재

롯데케미칼 주식회사

(단위 : 원)

과목	제44(당) 기말		제43(전) 기말	
자 산				
I. 유동자산		3,480,640,267,580		4,623,398,035,816
1. 현금및현금성자산	531,959,814,081		457,664,455,133	
2. 단기금융상품	445,000,012,174		2,281,389,729,257	
3.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610,000,000,000		59,800,000,000	
4.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34,810,000		4,544,530,000	
5. 매출채권및기타채권	913,896,731,024		946,101,563,222	
6. 재고자산	819,407,334,460		824,630,562,837	
7. 금융리스채권	138,598,084		297,322,429	
8. 당기법인세자산	28,920,474,373			
9. 기타금융자산	19,255,368,722		17,498,724,885	
10. 기타유동자산	52,390,242,650		31,471,148,053	
11. 매각예정비유동자산	59,636,882,012		-	
II. 비유동자산		10,915,586,518,631		10,578,491,243,169
1. 장기금융상품	67,506,500,000		67,506,500,000	
2.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2,011,106,256		1,200,000,000	
3.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40,114,862,325		105,221,892,898	
4. 금융리스채권	2,634,857,432		4,186,397,772	
5. 종속기업투자	5,299,148,205,529		5,253,093,042,614	
6. 관계기업투자	1,926,903,520,691		1,625,454,858,540	
7. 공동기업투자	642,444,126,460		770,944,131,460	
8. 유형자산	2,783,213,825,882		2,585,550,757,092	
9. 사용권자산	60,692,684,409		-	
10. 투자부동산	35,455,634,648		96,497,778,104	
11. 무형자산	23,096,170,020		24,499,657,292	
12. 기타금융자산	30,558,024,979		41,928,227,397	
13. 기타비유동자산	1,807,000,000		2,408,000,000	
자 산 총 계		14,396,226,786,211		15,201,889,278,985
부 채				
I. 유동부채		1,448,968,625,814		2,564,885,825,816
1. 매입채무및기타채무	738,958,172,534		655,545,644,155	
2. 차입금및사채	541,372,614,059		1,379,202,067,544	
3. 유동성리스부채	15,559,949,370		-	
4. 당기법인세부채	17,864,869,909		344,288,807,564	

5. 기타금융부채	38,701,361,468		51,365,072,475	
6. 기타유동부채	72,679,131,232		125,955,983,934	
7. 총당부채	23,832,527,242		8,528,250,144	
II. 비유동부채		1,487,929,182,471		1,206,445,208,437
1.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부채	-		43,310,577,157	
2. 차입금및사채	1,335,409,392,902		1,044,486,559,155	
3. 비유동성리스부채	44,210,165,229		-	
4. 순확정급여부채	170,324,407		22,128,398,564	
5. 이연법인세부채	85,632,873,279		50,173,127,797	
6. 기타금융부채	11,091,452,922		32,353,621,905	
7. 기타비유동부채	7,299,290,725		9,918,395,766	
8. 총당부채	4,115,683,007		4,074,528,093	
부 채 총 계		2,936,897,808,285		3,771,331,034,253
자 본				
I. 자본금	171,377,095,000		171,377,095,000	
II. 기타불입자본	968,318,556,590		968,318,556,590	
III. 이익잉여금	10,341,239,817,353		10,311,394,202,741	
IV. 기타자본구성요소	(21,606,491,017)		(20,531,609,599)	
자 본 총 계		11,459,328,977,926		11,430,558,244,732
부 채 및 자 본 총 계		14,396,226,786,211		15,201,889,278,985

- 포괄손익계산서

포괄손익계산서

제 44(당) 기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제 43(전) 기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롯데케미칼 주식회사

(단위 : 원)

과 목	제44(당) 기		제43(전) 기	
I. 매출		9,179,765,913,688		10,133,832,338,956
II. 매출원가		8,020,198,218,680		8,218,868,872,654
III. 매출총이익		1,159,567,695,008		1,914,963,466,302
판매비와관리비		383,863,297,778		392,155,313,423
IV. 영업이익		775,704,397,230		1,522,808,152,879
금융수익		92,834,704,502		99,835,304,481
금융비용		257,960,329,378		134,049,634,979
기타영업외수익		379,006,273,975		558,450,296,856
기타영업외비용		329,723,902,326		119,331,403,366
V.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659,861,144,003		1,927,712,715,871
법인세비용		265,485,266,067		501,434,674,642
VI. 당기순이익		394,375,877,936		1,426,278,041,229
VII. 기타포괄손익		(5,713,245,242)		(13,109,156,436)
1.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5,747,553,745)		(13,015,091,853)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6,397,743,205)		(18,709,860,72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평가손익	(1,529,917,133)		758,009,889	
법인세효과	2,180,106,593		4,936,758,980	
2.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항목		34,308,503		(94,064,583)
파생상품평가손익	47,322,074		(129,744,253)	
법인세효과	(13,013,571)		35,679,670	
VIII. 총포괄이익		388,662,632,694		1,413,168,884,793
IX. 주당이익				
기본및희석주당이익		11,506		41,612

- 자본변동표

자 본 변 동 표

제 44(당) 기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제 43(전) 기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롯데케미칼 주식회사

(단위 : 원)

과 목	자 본 금	기타불입자본		이익잉여금	기타자본구성요소		총 계
		주식발행초과금	기타 자본잉여금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금융자산 평가손익	파생상품 평가손익	
I. 2018.01.01. (전기초)	171,377,095,000	22,913,227,871	945,405,328,719	9,211,371,437,921	26,133,556,156	80,613,772	10,377,281,259,439
회계정책의 변경				47,201,272,114	(47,201,272,114)		
I. 2018.01.01. (변경 후)	171,377,095,000	22,913,227,871	945,405,328,719	9,258,572,710,035	(21,067,715,958)	80,613,772	10,377,281,259,439
1. 배당금의 지급				(359,891,899,500)			(359,891,899,500)
2. 총포괄이익				1,412,713,392,206	549,557,170	(94,064,583)	1,413,168,884,793
당기순이익				1,426,278,041,229			1,426,278,041,229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13,564,649,023)			(13,564,649,023)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평가손익					549,557,170		549,557,170
파생상품평가손익						(94,064,583)	(94,064,583)
II. 2018.12.31. (전기말)	171,377,095,000	22,913,227,871	945,405,328,719	10,311,394,202,741	(20,518,158,788)	(13,450,811)	11,430,558,244,732
I. 2019.01.01. (당기초)	171,377,095,000	22,913,227,871	945,405,328,719	10,311,394,202,741	(20,518,158,788)	(13,450,811)	11,430,558,244,732
1. 배당금의 지급				(359,891,899,500)			(359,891,899,500)
2. 총포괄이익				389,737,514,112	(1,109,189,921)	34,308,503	388,662,632,694
당기순이익				394,375,877,936			394,375,877,936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4,638,363,824)			(4,638,363,824)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평가손익					(1,109,189,921)		(1,109,189,921)
파생상품평가손익						34,308,503	34,308,503
II. 2019.12.31. (당기말)	171,377,095,000	22,913,227,871	945,405,328,719	10,341,239,817,353	(21,627,348,709)	20,857,692	11,459,328,977,926

- 현금흐름표

현 금 흐 름 표

제 44(당) 기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제 43(전) 기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롯데케미칼 주식회사

(단위 : 원)

과목	제44기(당) 기		제43(전) 기	
I.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521,557,562,363		1,074,455,204,941
1.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흐름	1,104,760,401,954		1,772,550,723,706	
(1) 당기순이익	394,375,877,936		1,426,278,041,229	
(2) 조정사항	751,872,853,435		489,441,082,199	
법인세비용	265,485,266,067		501,434,674,642	
이자비용	47,454,831,704		60,748,988,775	
이자수익	(47,722,883,925)		(59,399,719,560)	
배당금수익	(258,139,456,094)		(284,638,949,742)	
외화환산손실	8,801,893,121		13,744,436,261	
외화환산이익	(15,564,448,314)		(5,469,715,583)	
파생상품평가손실	718,835,171		181,960,253	
파생상품평가이익	(2,687,132,384)		(8,791,198,846)	
파생상품거래손실	7,830,962,743		2,463,791,718	
파생상품거래이익	(8,367,225,378)		(8,734,670,000)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평가손실	88,893,744		-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부채평가이익	(507,138,777)		-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부채평가손실	-		18,072,182,367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처분손실	330,870,892		846,922,406	
종속기업투자손상차손	51,190,531,193		12,598,423,527	
종속기업투자손상차손환입	-		(18,796,000,000)	
지분법적용주식처분손실	2,031,898,928		-	
관계기업투자손상차손	-		-	
관계기업투자손상차손환입	(5,448,662,151)		(88,727,337,849)	
관계기업투자처분이익	-		(27,737,323,176)	
공동기업투자손상차손	178,500,005,000		6,760,767,868	
공동기업투자손상차손환입	-		(5,764,718,185)	
유형자산처분이익	(11,293,858,116)		(3,162,479,034)	
유형자산처분손실	9,601,715,842		1,876,953,463	
무형자산처분손실	-		69,536,875	
투자부동산처분이익	-		(1,959,762,639)	
금융리스자산처분손실	344,146,380		-	
재고자산평가손실(환입)	(1,445,000,000)		12,307,000,000	
대손상각비	42,374,067		631,160,954	
기타의대손상각비(환입)	-		(27,565,964,811)	
감가상각비	320,440,777,710		365,829,558,478	
무형자산상각비	2,032,864,254		1,431,748,565	
퇴직급여	28,666,442,159		26,402,439,906	
장기종업원급여	976,607,459		1,943,364,966	
금융보증수익	(9,176,777,882)		-	
금융보증비용	166,198,136,170		-	
충당부채의 전입	21,488,383,853		2,845,010,600	
(3) 운전자본의 변동	(41,488,329,418)		(143,168,399,722)	
매출채권	34,696,920,827		130,361,051,042	
기타채권	(43,228,051,901)		93,039,337,229	
재고자산	6,668,228,377		(35,666,706,034)	

기타자산	(8,107,035,196)		(917,552,986)	
매입채무	113,280,511,164		(213,093,231,450)	
기타채무	(47,166,743,647)		(42,488,674,874)	
기타금융부채	(13,399,865,944)		(10,706,045,607)	
기타부채	(28,736,480,510)		(25,018,159,822)	
순확정급여부채	(55,495,812,588)		(38,678,417,220)	
2. 법인세의 납부	(583,202,839,591)		(698,095,518,765)	
II.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677,761,208,964		(406,572,622,848)
1.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2,185,728,032,995		554,401,888,468	
단기금융상품의 감소	1,836,389,717,083		-	
기타금융자산의 감소	2,645,120,658		530,068,20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의 처분	25,290,270,060		144,335,202,551	
관계기업투자의 처분	-		67,117,896,437	
유형자산의 처분	12,432,673,445		14,309,031,594	
투자부동산의 처분	-		2,882,610,000	
이자의 수취	50,830,795,655		54,899,967,269	
배당금의 수취	258,139,456,094		270,327,112,415	
2.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1,507,966,824,031)		(960,974,511,316)	
단기금융상품의 증가	-		130,036,087,790	
기타금융자산의 취득	1,924,880,752		56,514,063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의 취득	551,100,000,000		1,200,000,000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의 취득	6,875,000		-	
유형자산의 취득	509,657,475,243		632,739,598,613	
무형자산의 취득	-		590,818,200	
종속기업투자주식의 취득	97,245,694,108		355,806,000	
종속기업투자주식의 처분	2,031,898,928			
관계기업투자의 취득	296,000,000,000		195,995,686,650	
공동기업투자의 취득	50,000,000,000		-	
III.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131,062,032,943)		(1,121,161,212,997)
1.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2,015,871,186,492		2,198,691,202,338	
단기차입금의 차입	1,497,945,249,449		1,996,821,832,338	
장기차입금의 차입	113,005,000,000		-	
사채의 발행	398,949,640,000		199,440,060,000	
파생상품거래의 정산으로 인한 현금유입	2,064,022,730		2,429,310,000	
금융보증수익의 수취	3,907,274,313		-	
2.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3,146,933,219,435)		(3,319,852,415,335)	
단기차입금의 상환	1,544,822,660,196		2,122,901,967,673	
사채의 상환	-		776,210,120,000	
금융리스부채의 상환	15,057,041,768		-	
유동성장기부채의 상환	429,246,080,000		-	
유동성사채의 상환	590,000,000,000		-	
이자의 지급	42,103,007,079		50,644,346,412	
배당금의 지급	359,891,899,500		359,891,899,500	
지급보증이행으로 인한 현금유출	164,205,240,892			

과생상품거래의 정산으로 인한 현금유출	1,607,290,000		10,204,081,750	
IV.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 (I + II + III)		68,256,738,384		(453,278,630,904)
V. 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457,664,455,133		910,110,351,183
VI. 외화표시 현금및현금성자산 환율변동효과		6,038,620,564		832,734,854
VII. 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		531,959,814,081		457,664,455,133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제 44기 2019년 01월 01일 부터 제 43기 2018년 01월 01일 부터
2019년 12월 31일 까지 2018년 12월 31일 까지
처분예정일 2020년 03월 25일 처분확정일 2019년 03월 27일

(단위: 천원)				
과 목	제 44(당) 기		제 43(전) 기	
1. 미처분이익잉여금		391,743,169		1,462,005,655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2,005,655		2,090,990	
회계정책의 변경	-		47,201,272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4,638,364)		(13,564,648)	
당기순이익	394,375,878		1,426,278,041	
2. 임의적립금 등의 이입액		-		16,000,000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	-		16,000,000	
합 계		391,743,169		1,478,005,655
3. 이익잉여금처분액		389,740,000		1,476,000,000
사업확장적립금	160,093,693		1,114,708,100	
기타 임의적립금	-		1,400,000	
현금배당 (주당배당금(물): 당기 6,700원(134%) 전기 10,500원(210%))	229,645,307		359,891,900	
4.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2,003,169		2,005,655

- 별도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1. 회사의 개요

롯데케미칼 주식회사(이하 "당사")는 1976년 3월 16일에 설립되어 석유화학제품의 제조·판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여수, 대산 및 울산 석유화학단지 내에 공장을 두고 있으며, 서울본사·부산·대구·대전지점에서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1991년 5월 30일에 주식을 한국거래소(구,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개설한 KRX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였습니다.

당사는 2009년 1월 1일을 합병기일로 하여 주식회사 롯데대산유화를 흡수합병하였으며, 2012년 12월 27일을 합병기일로 하여 주식회사 케이피케미칼을 흡수합병하고 사명을 호남석유화학 주식회사에서 롯데케미칼 주식회사로 변경하였습니다.

한편, 당기말 현재 당사의 주요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주명	소유주식수	지분율
롯데지주(주)	8,145,201 주	23.76%
롯데물산(주)	6,855,084 주	20.00%
Lotte Holdings Co., Ltd.	3,186,000 주	9.30%
기 타	16,089,134 주	46.94%
계	34,275,419 주	100.00%

2. 재무제표 작성기준 및 유의적 회계정책

2-1 재무제표 작성기준

당사의 재무제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당사의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에 따른 별도재무제표로서 지배기업, 관계기업의 투자자 또는 공동기업의 참여자가 투자자산을 피투자자의 보고된 성과와 순자산에 근거하지 않고 직접적인 지분 투자에 근거한 회계처리로 표시한 재무제표입니다. 당사는 종속기업과 관계기업 및 공동지배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을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에 따른 원가법에 따라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으로부터의 배당금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은 아래 기술되어 있으며, 당기 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은 아래에서 설명하는 기준서나 해석서의 도입과 관련된 영향을 제외하고는 전기 재무제표 작성시 채택한 회계정책과 동일합니다.

재무제표는 매 보고기간말에 재평가금액이나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특정 비유동자산과 금융자산을 제외하고는 역사적 원가주의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역사적 원가는 일반적으로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대가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1) 당기에 새로 도입된 기준서 및 해석서와 그로 인한 회계정책의 변경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는 기준서 제1017호 '리스', 해석서 제2104호 '약정에 리스가 포함되어 있는지의 결정', 해석서 제2015호 '운용리스: 인센티브', 해석서 제2027호 '법적 형식상의 리스를 포함하는 거래의 실질에 대한 평가'를 대체합니다. 이 기준서는 리스의 인식, 측정, 표시, 공시 원칙을 제시하며, 리스이용자가 대부분의 리스에 대하여 자산과 부채를 인식하는 단일모형에 따라 회계처리하도록 요구합니다.

기준서 제1116호에서 리스제공자의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에서와 유의적으로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리스제공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에서와 유사한 원칙을 사용하여 리스를 운용리스 또는 금융리스로 계속 분류할 것입니다.

당사는 2019년 1월 1일을 최초 적용일로 하여 수정소급법을 사용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를 적용하였습니다. 수정소급법에 따르면 최초 적용일에 이 기준서의 최초 적용 누적효과를 소급 적용합니다. 당사는 최초 적용일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 및 해석서 제2104호에 따라 최초 적용일 이전에 이미 리스로 식별된 계약에 대하여만 이 기준서를 적용하는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당사는 리스개시일에 리스기간이 12개월 이하이고 매수선택권이 존재하지 않는 리스('단기리스')와 리스계약의 기초자산이 소액인 리스('소액자산')에 대하여는 인식 면제를 적용하기로 선택하였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최초 적용에 따라 2019년 1월 1일 재무상태표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증가(감소)
자산	
사용권자산	61,256,164
유형자산	(11,317,821)
총자산	49,938,343
부채	
이자부차입금	59,199,977
기타부채	(9,261,634)
총부채	49,938,343
자본	
이익잉여금	-
총자본	-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최초 채택 효과

기준서 제1116호를 채택하기 전에 당사는 당사가 리스이용자인 각 리스에 대해 리스약정일을 기준으로 금융리스 또는 운용리스로 분류하였습니다.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이 당사에 이전되는 리스는 금융리스로 분류되었으며 그 외의 리스는 운용리스로 분류되었습니다. 금융리스의 경우 리스약정일에 측정된 최소리스료의 현재가치와 리스자산의 공정가치 중 작은 금액을 리스기간개시일에 금융리스자산과 금융리스부채로 각각 인식하였습니다. 매기 지급되는 최소리스료는 금융원가와 리스부채의 상환액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운용리스에서 리스료는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손익계산서에 비용으로 인식하였습니다. 선급되었거나 미지급된 리스료는 선급금 또는 기타 미지급금으로 각각 인식하였습니다.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를 적용함에 따라 단기리스와 소액자산리스를 제외하고 당사가 리스이용자인 모든 리스에 대해 단일의 인식 및 측정 방법을 적용합니다. 동 기준서는 당사가 적용한 구체적인 경과규정 요구사항 및 실무적 간편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 종전에 금융리스로 분류한 리스

당사가 종전에 금융리스로 분류하였던 리스의 최초 적용일 현재 사용권자산 및 리스부채의 장부금액은 해당일 직전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를 적용하여 측정된 리스자산 및 리스부채의 장부금액입니다. 당사는 그 리스에 대하여 최초 적용일부터 이 기준서를 적용하여 회계처리합니다.

- 종전에 운용리스로 분류한 리스

당사는 종전에 운용리스로 분류하였던 리스에 대해 단기리스와 소액자산리스를 제외하고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인식하였습니다. 대부분의 리스에 대한 사용권자산은 최초 적용일 현재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로 할인한 것을 제외하고는 리스개시일부터 이 기준서를 적용해 온 것처럼 측정한 장부금액으로 인식되었습니다. 일부 리스의 경우 사용권자산은 리스부채와 동일한 금액으로 인식하고 최초 적용일 직전에 재무상태표에 인식된 리스와 관련하여 선급하거나 발생한 리스료 금액을 조정하였습니다. 리스부채는 최초 적용일 현재 증분차입이자율로 할인한 나머지 리스료의 현재가치로 측정되었습니다.

당사가 적용한 실무적 간편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특성이 상당히 비슷한 리스 포트폴리오에 단일 할인율을 적용
- 최초적용일 직전에 리스가 손실부담계약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으로써 손상 검토 수행 대체
- 최초적용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리스기간에 종료되는 리스에 대해 단기리스 인식면제를 적용
- 최초적용일의 사용권자산 측정에서 리스개설직접원가를 제외
- 연장 또는 종료 선택권을 포함하는 리스계약의 리스기간을 산정하는 경우 사후판단을 사용

(2) 새로운 회계정책의 요약

당사가 최초 적용일부터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를 채택하면서 적용하는 새로운 회계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용권자산

당사는 리스개시일(즉, 기초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 날)에 사용권자산을 인식합니다. 사용권자산은 원가로 측정하고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측정하며, 리스부채의 재측정이 발생하는 경우 조정합니다. 사용권자산의 원가에는 리스부채 인식금액, 리스개설직접원가 발생액이 포함되며, 리스개시일이나 그 전에 지급한 리스선급금이나 인센티브는 가감합니다. 당사는 리스기간 종료시점에 리스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얻을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예측되지 않는다면, 사용권자산은 추정내용연수와 리스기간 중 더 짧은 기간에 걸쳐 정액 기준으로 감가상각합니다. 당사는 사용권자산에 대한 손상 검토를 수행합니다.

• 리스부채

당사는 리스개시일에 그날 현재 지급하지 않은 리스료의 현재가치로 리스부채를 측정합니다. 리스료에는 받을 리스 인센티브를 제외한 고정리스료(실질적인 고정리스료를 포함),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와 잔존가치 보증에 따라 당사가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이 포함됩니다. 또한 당사는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 그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리스기간이 당사의 종료선택권 행사를 반영하는 경우에 그 리스를 종료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을 리스료에 포함합니다.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 변동리스료는 리스료를 지급하는 사건이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당사는 리스료의 현재가치를 계산할 때,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리스개시일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합니다. 당사는 리스개시일후에 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를 반영하여 리스부채의 장부금액을 증액하고, 지급한 리스료를 반영하여 리스부채의 장부금액을 감액합니다. 또한 당사는 리스의 변경을 반영하거나 실질적인 고정리스료의 변경을 반영하거나 리스 기간의 변경 또는 기초자산 매수선택권 평가의 변경이 있는 경우 이 변경을 반영하여 리스부채를 재측정합니다.

• 단기리스 및 소액자산리스

당사는 단기리스(예, 리스 기간이 리스개시일로부터 12개월 이하이고 매수선택권이 없는 리스)에 대해 인식면제를 적용합니다. 또한, 가치가 낮은 장비(예, US\$ 5,000 이하인 리스)에 대해 소액자산리스로 인식면제를 적용합니다. 단기리스와 소액자산리스에 대한 리스료는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비용을 인식합니다.

• 연장선택권이 있는 계약에서 계약기간을 결정할 때 중요한 판단

당사는 리스의 해지불능기간에 리스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 그 선택권의 대상 기간과 리스 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 그 선택권의 대상 기간을 포함하여 리스기간을 산정합니다. 당사는 일부 리스에 대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연장선택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 선택권의 행사가능성이 상당히 확실한지를 평가할 때 판단을 적용합니다. 즉,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경제적 유인이 생기게하는 모든 관련 요소를 고려합니다. 리스개시일 이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나 상황이 변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상황에 변화가 발생하여 선택권의 행사가능성(또는 행사하지 않을 가능성)에 영향을 미친다면(예를 들어, 사업 전략의 변경), 당사는 리스 기간을 재평가합니다.

2)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3호 '법인세 처리의 불확실성' (제정)

이 해석서는 법인세 처리에 불확실성이 있을 때 기준서 제1012호의 인식 및 측정 요구사항을 어떻게 적용할지를 다룹니다. 그러나 이 해석서는 기준서 제1012호의 적용범위가 아닌 세금 또는 부담금에 적용되지 않으며 불확실한 법인세 처리와 관련되는 이자와 벌과금에 관련된 요구사항을 다루지 않습니다. 이 해석서는 다음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 기업이 불확실한 법인세처리를 개별적으로 고려할지
- 법인세 처리에 대한 과세당국의 조사에 관한 기업의 가정
- 기업이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 세무기준액, 미사용 세무상결손금, 미사용 세액공제, 세율을 어떻게 산정할지
- 기업이 사실 및 상황의 변화를 어떻게 고려할지

당사는 불확실한 법인세처리 각각을 개별적으로 고려할지 아니면 하나 이상의 다른 불확실한 법인세처리와 함께 고려할지를 판단합니다. 접근법 중 불확실성의 해소를 더 잘 예측하는 접근법을 사용합

니다. 동 해석서는 당사의 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개정) - 부의 보상을 수반하는 중도상환특성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고(SPPI 요건) 분류에 적절한 사업모형에서 보유되는 채무상품은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될 수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개정은 계약의 조기청산을 발생시키는 사건이나 상황과 무관하고, 당사자가 계약의 조기청산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을 하거나 받는 지와 관계없이 SPPI 조건을 충족하는 금융자산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사항이 당사의 재무상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4)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 (개정) - 확정급여제도의 개정, 축소, 정산

개정사항은 보고기간 중 제도의 개정, 축소, 정산이 일어났을 때의 회계처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당사가 보고기간 중 확정급여제도의 개정, 정산, 축소, 정산이 발생한 경우 제도의 변경 이후 잔여기간에 대한 당기근무원가는 순확정급여부채(자산)를 재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보험수리적 가정을 사용하여 결정하여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순확정급여부채(자산)를 재측정하는 경우 제도의 개정, 축소, 정산 후 잔여 연차보고기간에 대한 순이자재 측정하는 순확정급여부채(자산) 금액과 이를 재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할인율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당사에 제도의 개정, 축소, 정산이 발생한 경우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당사의 재무상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5)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개정) -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장기투자지분

개정사항은 기업이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해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는 금융상품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하여야 하며 이러한 금융상품에는 실질적으로 기업의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순투자의 일부를 구성하는 장기투자지분이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의 기대신용손실모델이 그러한 장기투자지분에 적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또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하면서 기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의 적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장기투자지분의 장부금액 조정사항인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의 손실이나 순투자에 대한 손상차손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당사는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장기투자지분이 없으므로 동 개정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6) 2015-2017 연차개선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개정)

이 개정은 공동약정의 한 당사자가 공동영업과 관련된 자산에 대한 권리와 부채에 대한 의무를 보유하다가 해당 공동영업(사업의 정의 충족)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할 경우 해당 거래는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결합에 대한 요구사항을 적용하여야 하며, 이 때 취득자는 공동영업에 대하여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지분 전부를 재측정하여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 이후에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결합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으며, 조기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동 개정사항이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 '공동약정' (개정)

공동영업에 참여는 하지만 공동지배력을 보유하지 않은 공동영업 당사자가 그 공동영업(활동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에서 정의하는 사업에 해당)에 대한 공동지배력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이 개정

은 이러한 경우 그 공동영업에 대해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지분은 재측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 이후에 공동지배력을 획득하는 거래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으며, 조기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동 개정사항이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개정)

이 개정은 배당의 법인세효과는 소유주에 대한 분배보다는 분배가능한 이익을 창출하는 과거의 거래나 사건에 보다 직접적으로 연관된다는 것을 명확히 합니다. 따라서 기업은 과거의 거래나 사건과 관련하여 원래 인식하였던 항목에 따라 배당의 법인세효과를 당기손익, 기타포괄손익 또는 자본으로 인식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개정 내용을 최초로 적용하는 경우, 가장 이른 비교기간 이후에 인식된 배당의 법인세효과에 이 개정 내용을 적용합니다. 당사의 현행 회계처리는 개정 내용과 차이가 없으므로,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3호 '차입원가' (개정)

이 개정은 기업이 적격자산을 후속적으로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할 준비가 되었을 때, 그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모든 차입금이 일반적인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에 포함되는 것을 명확히 합니다. 기업은 처음 이 개정 내용을 적용하는 회계연도 이후에 생기는 차입원가에 적용합니다. 이 개정 내용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처음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당사의 현행 회계처리는 개정 내용과 차이가 없으므로,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2) 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은 회계기준

당사의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현재 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아 당사가 채택하지 않은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의 기준서 및 해석서의 제·개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개정- 사업의 정의

2018년10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기업이 취득한 활동과 자산의 집합이 사업인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의 '사업의 정의'를 개정하였습니다. 개정 사항은 사업의 정의를 충족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사항을 명확히 하고 '시장참여자가 누락된 투입물을 대체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취득한 '과정'이 실질적인지를 기업이 평가할 수 있는 지침을 추가하였으며, 사업 및 산출물의 정의를 좁히고 선택적 집중테스트를 신설하였습니다. 동 개정에 따라 새로운 적용사례가 추가되었습니다. 동 개정 사항은 최초적용일 이후에 발생하는 거래 또는 사건에 대하여 전진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개정일에 이 개정사항이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와 제1008호 개정 - 중요성의 정의

2018년10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와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의 중요성 정의를 일치시키고 정의의특정 측면을 명확하게 개정하였습니다. 새 정의에 따르면, 특정 보고기업에 대한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일반목적재무제표에 정보를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하거나 불분명하게 하여, 이를 기초로 내리는 주요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다면 그 정보는 중요합니다. 이 중요성의 정의 개정 사항이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2-2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당사는 석유화학제품을 제조 및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고객과의 계약에서 당사는 재화나 용역의 통제가 고객에 이전되었을 때, 해당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 대가를 반영하는 금액으로 수익을 인식합니다. 당사는 고객과의 계약에서 재화나 용역을 고객에게 제공하기 전에 정해진 각 재화나 용역을 통제하므로 본인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1) 변동대가

계약이 변동대가를 포함한 경우에 당사는 고객에 약속한 재화를 이전하고 그 대가로 받을 금액을 추정합니다. 변동대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나중에 해소될 때, 이미 인식한 누적 수익 금액 중 유의적인 부분을 되돌리지(환원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정도까지만 변동대가를 계약의 개시 시점에 추정하고 거래가격에 포함합니다.

(2) 유의적인 금융요소

일반적으로 당사는 고객으로부터 단기선수금을 수령합니다. 기준서 제1115호의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여, 당사는 계약을 개시할 때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는 시점과 고객이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시점 간의 기간이 1년 이내일 것이라고 예상된다면 약속한 대가(금액)에 유의적인

금융요소의 영향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3) 보증 의무

당사는 법의 요구에 따라 판매 시점에 결함이 존재하는 제품을 수리하는 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보증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에 따라 회계처리합니다.

(4) 계약 잔액

- 계약자산

계약자산은 고객에게 이전한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그 대가를 받을 권리입니다. 고객이 대가를 지급하기 전이나 지급기일 전에 당사가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는 경우 그 대가를 받을 기업의 권리로 그 권리에 시간의 경과와의 조건이 있는 자산은 계약자산입니다.

- 매출채권

수취채권은 무조건적인 당사의 권리를 나타냅니다. 시간의 경과에 따라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자산 관련 회계정책은 주석 2-9 참고).

- 계약부채

계약부채는 당사가 고객에게서 이미 받은 대가(또는 지급기일이 된 대가)에 상응하여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여야 하는 기업의 의무입니다. 만약 당사가 재화나 용역을 고객에게 이전하기 전에 고객이 대가를 지불한다면, 지급이 되었거나 지급기일 중이른 시점에 계약부채를 인식합니다. 계약부채는 당사가 계약에 따라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2-3 리스

당사는 계약에서 대가와 교환하여,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 통제권을 일정기간 이전하게 하는지를 고려하여 계약의 약정시점에, 계약자체가 리스인지, 계약이 리스를 포함하는지를 판단합니다.

(1) 리스이용자

당사는 단기리스와 소액 기초자산 리스를 제외한 모든 리스에 대하여 하나의 인식과 측정 접근법을 적용합니다. 당사는 리스로 지급의무를 나타내는 리스부채와 기초자산의 사용권을 나타내는 사용권자산을 인식합니다.

• 사용권자산

당사는 리스개시일(즉, 기초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 날)에 사용권자산을 인식합니다. 사용권자산은 원가로 측정하고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측정하며, 리스부채의 재측정이 발생하는 경우 조정합니다. 사용권자산의 원가에는 리스부채 인식금액, 리스개설직접원가 발생액이 포함되며, 리스개시일이나 그 전에 지급한 리스선금금이나 인센티브는 가감합니다. 당사는 리스기간 종료시점에 리스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얻을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예측되지 않는다면, 사용권자산은 추정내용연수와 리스기간 중 더 짧은 기간에 걸쳐 정액 기준으로 감가상각합니다. 당사는 사용권자산에 대한 손상 검토를 수행합니다.

• 리스부채

당사는 리스개시일에 그날 현재 지급하지 않은 리스료의 현재가치로 리스부채를 측정합니다. 리스료에는 받을 리스 인센티브를 제외한 고정리스료(실질적인 고정리스료를 포함),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

라지는 변동리스료와 잔존가치 보증에 따라 당사가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이 포함됩니다. 또한 당사는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 그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리스기간이 당사의 종료선택권 행사를 반영하는 경우에 그 리스를 종료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을 리스료에 포함합니다. 지수나 요율에 따라달라지지 않는 변동리스료는 리스료를 지급하는 사건이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당사는 리스료의 현재가치를 계산할 때,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리스개시일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합니다. 당사는 리스개시일후에 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를 반영하여 리스부채의 장부금액을 증액하고, 지급한 리스료를 반영하여 리스부채의 장부금액을 감액합니다. 또한 당사는 리스의 변경을 반영하거나 실질적인 고정리스료의 변경을 반영하거나 리스 기간의 변경 또는 기초자산 매수선택권 평가의 변경이 있는 경우 이 변경을 반영하여 리스부채를 재측정합니다.

· 단기리스 및 소액자산리스

당사는 단기리스(예, 리스 기간이 리스개시일로부터 12개월 이하이고 매수선택권이 없는 리스)에 대해 인식면제를 적용합니다. 또한, 가치가 낮은 장비(예, US\$ 5,000 이하인 리스)에 대해 소액자산리스로 인식면제를 적용합니다. 단기리스와 소액자산리스에 대한 리스료는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비용을 인식합니다.

· 연장선택권이 있는 계약에서 계약기간을 결정할 때 중요한 판단

당사는 리스의 해지불능기간에 리스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 그 선택권의 대상 기간과 리스 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 그 선택권의 대상 기간을 포함하여 리스기간을 산정합니다. 당사는 일부 리스에 대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연장선택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 선택권의 행사가능성이 상당히 확실한지를 평가할 때 판단을 적용합니다. 즉,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경제적 유인이 생기게 하는 모든 관련 요소를 고려합니다. 리스개시일 이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나 상황이 변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상황에 변화가 발생하여 선택권의 행사가능성(또는 행사하지 않을 가능성)에 영향을 미친다면(예를 들어, 사업 전략의 변경), 당사는 리스 기간을 재평가합니다.

(2) 리스제공자

당사는 기초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 않는 리스를 운용리스로 분류합니다. 리스료 수익은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 기준으로 인식하며, 영업 성격에 따라 손익계산서에서 매출에 포함됩니다. 운용리스 체결과정에서 부담하는 리스개설 직접원가를 기초자산의 장부금액에 더하고 리스료 수익과 같은 기준으로 리스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조건부 임대료는 임대료를 수취하는 시점에 매출로 인식합니다.

2-4 외화환산

당사는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의 통화(기능통화)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해 당사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는 당사의 기능통화이면서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표시통화인 '원'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기능통화 외의 통화(외화)로 이루어진 거래는 거래일의 환율로 기록됩니다. 매 보고기간 종료일에 화폐성 외화항목은 보고기간 종료일의 환율로 재환산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공정가치가 결정된날의 환율로 재환산하지만, 역사적 원가로 측정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재환산하지 않습니다.

화폐성 항목의 외환차이는 다음을 제외하고는 발생하는 기간의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미래 생산에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중인 자산과 관련되고, 외화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 조정으로 간주되는 자산의 원가에 포함되는 외환차이

- 특정 외화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위험회피회계정책에 대해서는 주석 2-15 참고)

- 해외사업장과 관련하여 예측할 수 있는 미래에 결제할 계획도 없고 결제될 가능성도 없는 채권이나 채무로서 해외사업장순투자의 일부를 구성하는 화폐성항목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

이러한 외환차이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순투자의 전부나 일부 처분시점에서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2-5 차입원가

당사는 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제조와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를 적격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이를 때까지 당해 자산원가의 일부로 자본화하고 있습니다. 적격자산이란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될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 상당한기간을 필요로 하는 자산을 말합니다.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차입한 당해 차입금에서 발생하는 일시적 운용 투자수익은 자본화가능차입원가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기타 차입원가는 발생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6 퇴직급여비용과 해고급여

확정기여형퇴직급여제도에 대한 기여금은 종업원이 이에 대하여 지급받을 자격이 있는 용역을 제공한 때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확정급여형퇴직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확정급여채무는 독립된 보험계리법인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을 이용하여 매 보고기간말에 보험수리적 평가를 수행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보험수리적손익과 사외적립자산의 수익(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 제외) 및 자산인식상한효과의 변동으로 구성된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는 재측정요소가 발생한 기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재무상태표에 즉시 반영하고 있습니다.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한 재측정요소는 이익잉여금으로 즉시 인식하며, 후속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아니합니다.

과거근무원가는 제도의 개정이 발생한 기간에 인식하고, 순이자자는 기초시점에 순확정급여부채(자산)에 대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출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원가의 구성요소는 근무원가(당기근무원가와 과거근무원가 및 정산으로 인한 손익)와 순이자비용(수익) 및 재측정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근무원가와 순이자비용(수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제도의 축소로 인한 손익은 과거근무원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상 확정급여채무는 확정급여제도의 실제 과소적립액과 초과적립액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산으로 산출된 초과적립액은 제도로부터 환급받거나 제도에 대한 미래 기여금이 절감되는 방식으로 이용가능한 경제적효익의 현재가치를 가산한 금액을 한도로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해고급여에 대한 부채는 당사가 해고급여의 제안을 더 이상 철회할 수 없게 된 날 또는 당사가 해고급여의 지급을 수반하는 구조조정에 대한 원가를 인식한 날 중 이른날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2-7 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당기법인세

당기 법인세부담액은 당기의 과세소득을 기초로 산정됩니다. 다른 과세기간에 가산되거나 차감될 손익항목 및 비과세항목이나 손금불인정항목 때문에 과세소득과 포괄손익계산서상 세전손익은 차이가 발생합니다. 당사의 당기 법인세와 관련된 부채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 및 세법에 근거하여 계산됩니다.

(2) 이연법인세

이연법인세는 재무제표상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과세소득 산출시 사용되는 세무기준액과의 차이인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인식됩니다. 이연법인세부채는 모든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인식됩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모든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인식됩니다.

그러나 가산할 일시적차이가 영업권을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거나,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가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에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경우 이연법인세부채는 인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가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인식하지 않습니다.

당사가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으며,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속기업과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의 투자지분에 관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합니다. 또한 이러한 투자자산 및 투자지분과 관련된 차감할 일시적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일시적차이의 혜택을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인식합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말에 검토하고, 이연법인세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회수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않은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 및 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부채가 결제되거나 자산이 실현되는 회계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합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측정할 때에는 보고기간말 현재 당사가 관련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에 따른 법인세효과를 반영하였습니다.

당사는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권리를 가지고 있고 과세대상기업이 동일한 경우 혹은 과세대상기업은 다르지만 당기법인세부채와 자산을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거나, 유의적인 금액의 이연법인세부채가 결제되거나 이연법인세자산이 회수될 미래의 각 회계기간마다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가 동일한 과세당국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만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상계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3)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의 인식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는 동일 회계기간 또는 다른 회계기간에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으로 직접 인식되는 거래나 사건 또는 사업결합으로부터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익이나 비용으로 인식하여 당기손익에 포함합니다. 사업결합시에는 법인세효과는 사업결합에 대한 회계처리에 포함되어

반영됩니다.

2-8 재고자산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원가는 미착품(개별법)을 제외하고는 평균법에 따라 결정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전환원가 및 재고자산을 이용가능한 상태로 준비하는데 필요한 기타 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순실현가능가치는 정상적인 영업과정의 예상판매가격에서 예상되는 추가완성원가와 판매비용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매출원가는 재고자산 판매에 따른 수익을 인식하는 기간에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으로 인식하며, 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한 평가손실과 모든 감모손실은 감액이나 감모가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의 상승으로인한 재고자산평가손실의 환입은 환입이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된 재고자산의 매출원가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2-9 금융상품 - 최초 인식과 후속 측정

금융상품은 거래당사자 어느 한쪽에게는 금융자산이 생기게 하고 거래상대방에게 금융부채나 지분상품이 생기게 하는 모든 계약입니다.

(1) 금융자산

1) 최초 인식과 측정

금융자산은 최초 인식 시점에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그리고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됩니다.

최초 인식 시점에 금융자산의 분류는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과 금융자산을 관리하기 위한 당사의 사업모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포함되지 않거나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는 매출채권을 제외하고는, 당사는 금융자산을 최초에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경우가 아니라면 거래원가를 가감합니다.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포함되지 않거나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는 매출채권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결정된 거래가격으로 측정합니다.

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SPPI)되어야 합니다. 이 평가는 SPPI 테스트라고 하며, 개별 상품 수준에서 수행됩니다.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당사의 사업모형은 현금흐름을 발생시키기 위해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방법과 관련됩니다. 사업모형은 현금흐름의 원천이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인지, 매도인지 또는 둘 다 인지를 결정합니다.

시장의 합의나 규제에 의해 설정된 기간 프레임 내에서 금융자산을 이전하는 것이 요구되는 금융자산의 매입 또는 매도(정형화된 거래)는 거래일에 인식됩니다. 즉, 당사가 금융자산을 매입하거나 매도하기로 약정한 날을 의미합니다.

2) 후속 측정

후속 측정을 위해 금융자산은 아래 네 가지의 범주로 분류됩니다.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채무상품)
- 누적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재순환하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채무상품)
- 제거시 누적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재순환하지 않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지분상품)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①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채무상품)

당사는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
- 금융자산의 계약 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 잔액에 대한 이자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 발생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은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EIR)법을 사용하여 측정되며, 손상을 인식합니다. 자산의 제거, 변경 또는 손상에서 발생하는 이익과 손실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②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채무상품)

당사는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채무상품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으로 측정합니다.

-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
- 금융자산의 계약 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 발생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에서, 이자수익, 외화환산손익, 그리고 손상 또는 환입은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과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되어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나머지 공정가치 변동 부분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금융자산의 제거 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공정가치 누적 변동분은 당기손익으로 재순환됩니다.

③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지분상품)

최초 인식 시점에,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에서의 지분의 정의를 충족하고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지 않은 지분상품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하는 취소 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재순환되지 않습니다. 배당은 당사가 금융자산의 원가 중 일부를 회수하여 이익을 얻는 경우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되며, 이를 제외하고는 받을 권리가 확정되었을 때 손익계산서상 기타수익으로 인식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은 손상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당사는 비상장지분상품에 대해서도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④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은 단기매매항목, 최초 인식 시에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지정된 금융자산 또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요구되는 금융자산을 포함합니다. 단기간 내에 매도하거나 재구매할 목적으로 취득한 금융자산은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됩니다. 분리된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한 파생상품은 효과적인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됩니다. 현금흐름이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지 않은 금융자산은 사업모형에 관계없이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 및 측정됩니다. 상기 문단에서 서술된 것과 같이 채무상품이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됨에도 불구하고 회계 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유의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면 채무상품을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은 재무상태표에 공정가치로 표시되며, 공정가치의 순변동은 손익계산서에서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이 범주는 파생상품과 공정가치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하는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하지 않은 상장 지분상품을 포함합니다. 상장 지분상품에 대한 배당은 권리가 확정된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복합계약에 내재된 파생상품은 경제적인 특성과 위험이 주계약에 밀접하게 관련되지 않고, 내재파생상품과 동일한 조건인 별도의 상품이 파생상품의 정의를 충족하며, 복합계약이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는다면 주계약으로부터 분리하여 별도의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합니다. 내재파생상품은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공정가치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현금흐름을 유의적으로 변경시키는 계약 조건의 변경이 있거나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범주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만 재평가가 발생합니다.

주계약이 금융자산인 복합계약에서 내재파생상품은 분리하여 회계처리하지 않습니다. 주계약인 금융자산과 내재파생상품은 상품 전체를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합니다.

3) 제거

금융자산 (또는, 금융자산의 일부 또는 비슷한 금융자산의 집합의 일부)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제거됩니다.

-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을 수취할 권리 소멸
- 당사가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을 수취할 권리를 양도하거나 양도(pass-through) 계약에 따라 수취한 현금흐름 전체를 중요한 지체 없이 제3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에 당사는 금융자산의 보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거나 금융자산의 보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도 보유하지도 않으나 자산에 대한 통제를 이전

당사가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을 수취할 권리를 이전하거나 양도(pass-through) 계약을 체결할 때, 자산을 소유함에 따른 위험과 보상을 유지하는지를 평가합니다. 당사가 금융자산의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지도 이전하지도 않았다면, 해당 금융자산에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까지 그 금융자산을 계속 인식합니다. 이 경우에, 당사는 관련된 부채를 인식합니다. 양도된 자산과 관련된 부채는 당사가 보유한 권리와 의무를 반영하여 측정합니다.

보증을 제공하는 형태인 지속적 관여는, 양도된 자산의 장부금액과 수취한 대가 중 상환을요구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됩니다.

4) 금융자산의 손상

금융자산의 손상과 관련된 자세한 공시 사항은 아래 주석에 제공됩니다.

- 유의적인 가정에 대한 공시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채무상품
- 계약자산을 포함한 매출채권

당사는 당기손익-공정가치 항목을 제외한 모든 채무상품에 대하여 기대신용손실(ECL)에 대한 충당금을 인식합니다. 기대신용손실은 계약상 수취하기로 한 현금흐름과 당사가 수취할 것으로 예상하는 모든 현금흐름의 차이를 최초의 유효이자율로 할인하여 추정합니다. 예상되는 현금흐름은 보유한 담보를 처분하거나 계약의 필수 조건인 그 밖의 신용 보강으로부터 발생하는 현금흐름을 포함합니다.

기대신용손실은 두 개의 stage로 인식합니다. 최초 인식 이후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가 없는 신용 익스포저에 대하여, 기대신용손실은 향후 12개월 내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채무불이행 사건으로부터 발생하는 신용손실(12개월 기대신용손실)을 반영합니다. 최초 인식 이후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가 있는 신용 익스포저에 대하여, 손실충당금은 채무불이행 사건이 발생하는 시기와 무관하게 익스포저의 남은 존속기간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도록 요구됩니다.

매출채권과 계약자산에 대하여, 당사는 기대신용손실 계산에 간편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는 신용위험의 변동을 추적하지 않는 대신에, 각 결산일에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인식합니다. 당사는 특정 채무자에 대한 미래전망정보와 경제적 환경을 반영하여 조정된 과거 신용손실 경험에 근거하여 충당금 설정률표를 설정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에 대하여, 당사는 낮은 신용위험 간편법을 적용합니다. 매 결산일에, 당사는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사용하여 채무상품이 낮은 신용위험을 가지고 있다고 고려되는지를 평가합니다. 이러한 평가를 위해서, 당사는 채무상품의 내부 신용 등급을 재평가합니다. 또한, 당사는 계약상의 지급이 30일을 초과하였을 때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가 있는지를 고려합니다.

당사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이 최상위 투자등급에 해당하는 상장채권만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낮은 신용 위험 투자자산으로 평가됩니다. 당사의 정책은 이러한 상품을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측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초 인식 이후에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가 있다면 손실충당금은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근거하여 산출됩니다. 당사는 채무상품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했는지를 결정하고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기 위해 신용평가기관의 등급을 사용합니다.

당사는 계약상 지급이 90일을 초과하여 연체되는 경우에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특정 상황에서, 당사는 내부 또는 외부 정보가 당사에 의한 모든 신용보강을고려하기 전에는 당사는 계약상의 원금 전체를 수취하지 못할 것을 나타내는 경우에 금융자산에 채무불이행 사건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금융자산은계약상 현금흐름을 회수하는 데에 합리적인 기대가 없을 때 제거됩니다.

(2) 금융부채

1) 최초 인식과 측정

금융부채는 최초 인식 시점에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대출과 차입, 미지급금 또는 효과적인 위험회피 수단으로 지정된 파생상품으로 적절하게 분류됩니다.

모든 금융부채는 최초에 공정가치로 인식되고, 대여금, 차입금 및 미지급금의 경우에는 직접 관련된 거래원가를 차감합니다.

당사의 금융부채는 매입채무와 기타 미지급금 및 기타 금융부채를 포함합니다.

2) 후속 측정

금융부채의 측정은 아래에서 언급된 분류에 따릅니다.

①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는 단기매매금융부채와 최초 인식 시점에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지정된 금융부채를 포함합니다.

금융부채가 단기간 내에 재매입되는 경우에는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됩니다. 이 범주는 또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 정의된 위험회피관계에 있는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은 파생상품을 포함합니다. 또한 분리된 내재파생상품은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됩니다.

단기매매항목인 금융부채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항목으로 지정된 금융부채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최초 인식 시점에만 지정됩니다. 당사는 어떤 금융부채도 당기손익-공정가치항목으로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② 대여금 및 차입금

최초 인식 이후에, 이자부 대여금과 차입금은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됩니다. 부채가 제거되거나 유효이자율 상각 절차에 따라 발생하는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상각후원가는 유효이자율의 필수적인 부분인 수수료나 원가에 대한 할인이나 할증액을 고려하여 계산됩니다. 이 범주는 일반적으로 이자부 대여나 차입에 적용됩니다.

3) 제거

금융부채는 지급 의무의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에 제거됩니다. 기존 금융부채가 대여자는 동일하지만 조건이 실질적으로 다른 금융부채에 의해 교환되거나, 기존 부채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이러한 교환이나 변경은 최초의 부채를 제거하고 새로운 부채를 인식하게 합니다. 각 장부금액의 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3) 금융상품의 상계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는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 가능한 상계 권리를 현재 가지고 있거나, 차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 재무상태표에서 상계하여 순액으로 표시됩니다.

2-10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원가로 측정하고 있으며 최초 인식 후에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원가는 당해 자산의 매입 또는 건설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발생한 지출로서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와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최초에 추정되는 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상적인 수선·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 중 토지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이를 제외한 유형자산은 아래에 제시된 개별자산별로 추정된 경제적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구 분	내용연수
건 물	10~50년
구 축 물	15~40년
기 계 장 치	7~15년
차 량 운 반 구	4년
비 품	4년
공 구 와 기 구	4년
기타의유형자산	1~5년

유형자산을 구성하는 일부의 원가가 당해 유형자산의 전체원가에 비교하여 중요하다면, 해당 유형자산을 감가상각할 때 그 부분은 별도로 구분하여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을 처분하거나 사용이나 처분을 통한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해당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을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 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유형자산이 제거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11 투자부동산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을 얻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은 취득시 발생한 거래원가를 포함하여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하며, 최초 인식 후에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후속지출에 의해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상적인 수선·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 중 토지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토지를 제외한 투자부동산은 경제적 내용연수에 따라 40~50년을 적용하여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을 처분하거나, 투자부동산의 사용을 영구히 중지하고 처분으로도 더 이상의 미래경제적 효익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 투자부동산의 장부금액을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투자부동산이 제거되는 시점의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12 무형자산

(1) 개별취득하는 무형자산

내용연수가 유한한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인식하며, 추정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의 내용연수 및 상각방법은 매 보고기간 종료일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인식합니다.

(2)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 - 연구 및 개발원가

연구활동에 대한 지출은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개발활동(또는 내부프로젝트의 개발단계)과 관련된 지출은 해당 개발계획의 결과가 새로운 제품의 개발이나 실질적 기능 향상을 위한 것이며 당사가 그 개발계획의 기술적, 상업적 달성가능성이 높고 소요되는 자원을 신뢰성있게 측정가능한 경우에만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그 무형자산이 위에서 기술한 인식조건을 최초로 충족시킨 시점 이후에 발생한 지출의 합계이며,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으로 인식되지 않는 개발원가는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은 최초 인식 후에 취득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3) 무형자산의 제거

무형자산을 처분하거나 사용이나 처분을 통한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해당 무형자산의 장부금액을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 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무형자산이 제거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4) 무형자산의 내용연수

무형자산 중 회원권은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이를 제외한 무형자산은 아래에 제시된 개별자산별로 추정된 경제적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구 분	내용연수
산업재산권	5~10년
기타의 무형자산	4~5년

2-13 영업권을 제외한 유·무형자산의 손상

영업권을 제외한 유·무형자산은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매 보고기간말마다 검토하고 있으며,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 경우에는 손상차손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개별 자산별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으며, 개별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자산은 합리적이고 일관된 배분기준에 따라 개별 현금창출단위에 배분하며, 개별 현금창출단위로 배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합리적이고 일관된 배분기준에 따라 배분될 수 있는 최소 현금창출단위 집단에 배분하고 있습니다.

비한정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 또는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은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와 관계없이 매년 손상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개별 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으로 측정하며, 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자산(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장 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감소시키고 감소된 금액은 당기손익으로인식하고 있습니다.

과거기간에 인식한 손상차손을 환입하는 경우 개별자산(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은 수정된 회 수가능액과 과거기간에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다면 현재 기록되어 있을 장부금액 중 작은 금액으 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손상차손환입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14 충당부채

충당부채는 과거의 사건으로 인한 현재의무(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로서, 당해 의무를 이행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의무의 이행에 소요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을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관련된 사건과 상황에 대한 불가피한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현재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각 보고기간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입니다.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가 중요한 경우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할인율은 부채의 고유한 위험과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세전 이자율입니다. 시간경과에 따른 충당부채의 증가는 발생시 금융비용으로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를 결제하기 위해 필요한 지출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 3 자가 변제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당사가 의무를 이행한다면 변제를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하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변제금액을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말마다 충당부채의 잔액을 검토하고, 보고기간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여 조정하고 있습니다. 의무이행을 위하여 경제적효익이 내재된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더이상 높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충당부채를 환입하고 있습니다.

2-15 파생금융상품과 위험회피회계

(1) 최초 인식 및 후속 측정

당사는 외화위험, 이자율위험, 상품 가격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통화선도계약, 이자율스왑, 상품선도계약과 같은 파생금융상품을 이용합니다. 이러한 파생금융상품은 파생계약이 체결된 시점인 최초 인식일에 공정가치로 인식되고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재측정됩니다. 파생상품은 공정가치가 0보다 클 때 금융자산으로 인식되며, 공정가치가 0보다 작을 때는 금융부채로 인식됩니다.

위험회피회계의 목적에 따라 위험회피는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 인식한 자산이나 부채 또는 미인식된 확정계약의 공정가치 변동에 대한 위험을 회피하는 공정가치 위험회피
- 인식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특정위험에 기인하는 현금흐름의 변동,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 예상 거래의 현금흐름 변동 또는 미인식된 확정계약의 외화위험에 대한 위험을 회피하는 현금흐름위험회피
- 해외사업장순투자의 위험회피

위험회피관계의 개시 시점에 당사는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고자 하는 위험회피관계와 위험관리목적 및 위험회피전략을 공식적으로 지정하고 문서화합니다.

2018년 1월 1일 이전에, 문서화는 위험회피수단, 위험회피대상항목, 회피대상위험의 성격 및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나 현금흐름의 변동위험을 위험회피수단이 상쇄하는 효과를 평가하는 방법 등을 포함하였습니다. 이 위험회피는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공정가치나 현금흐름의 변동을 상쇄하는 데 있어 높은 위험회피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위험회피효과를 위험회피기간에 계속적으로 평가하며 위험회피로 지정된 재무보고기간 전체에 걸쳐 실제로 높은 위험회피효과가 있었는지 결정하였습니다.

2018년 1월 1일부터 문서화는 위험회피수단, 위험회피대상항목, 회피대상위험의 특성 및 위험회피관계가 위험회피효과에 대한 규정을 충족하는지를 평가하는 방법(위험회피에 비효과적인 부분의 원

인 분석과 위험회피비율을 결정하는 방법을 포함)을 포함합니다. 위험회피관계는 다음의 위험회피효과에 대한 규정을 모두 충족합니다.

-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 사이에 '경제적 관계'가 있습니다.
- 신용위험의 효과가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의 경제적 관계에서 생긴 '가치 변동의 대부분'을 차지하지 않는다.
- 위험회피관계의 위험회피비율은 기업이 실제로 위험을 회피하는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수량과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수량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당사가 실제 사용하는 위험회피수단의 수량의 비율과 같다.

위험회피회계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위험회피는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됩니다.

1) 공정가치위험회피

위험회피수단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회피대상위험에 기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변동은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장부금액에 포함되며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항목에 대한 공정가치위험회피에서 장부금액 조정액은 위험회피가 존속하는 기간에 걸쳐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됩니다. 유효이자율 상각은 조정액이 생긴 직후에 시작할 수 있으며, 늦어도 위험회피 손익에 대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조정을 중단하기 전에는 시작해야 합니다.

위험회피대상항목이 제거된 경우에 상각되지 않은 공정가치는 즉시 제거하고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미인식된 확정계약이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되었다면, 회피대상 위험에 기인한 확정계약의 공정가치 누적 변동분을 자산이나 부채로 인식하고, 이에 상응하는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 현금흐름위험회피

위험회피수단에서 발생한 손익의 효과적인 부분은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 범위 내에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며, 비효과적인 부분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은 위험회피수단의 손익 누계액과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 변동 누계액 중 적은 금액으로 조정합니다.

당사는 미래의 예상거래나 확정계약의 외화위험 익스포저에 대한 통화선도계약과 상품 가격의 변동성에 대한 상품선도계약을 통해 위험회피할 수 있습니다. 통화선도계약과 관련된 비효과적인 부분은 기타비용으로 인식되며, 상품선도계약과 관련된 비효과적인 부분은 기타영업수익 또는 기타영업비용으로 인식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석 22를 참조합니다.

2018년 1월 1일 이전에, 당사는 모든 선도계약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했습니다.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변동에서 발생하는 모든 손익은 현금흐름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을 제외하고는 즉시 당기손익으로 처리되었으며, 현금흐름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되고 위험회피대상항목이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때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었습니다.

2018년 1월 1일부터 당사는 선도계약의 특정 요소를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선도요소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되며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으로서 별도 자본 항목으로 인식됩니다.

기타포괄손익에 누적된 금액(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은 위험회피거래의 특성에 따라 회계처리됩니다.

다. 위험회피대상 거래가 후속적으로 비금융항목을 인식하게 된다면,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은 제거되고 관련된 자산이나 부채의 최초 인식 금액에 포함합니다. 이것은 재분류조정이 아니며, 기타포괄손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것은 비금융자산 또는 비금융부채에 대한 위험회피대상 거래가 후속적으로 공정가치위험회피 회계를 적용하는 확정계약이 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현금흐름위험회피에서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은 위험회피대상 현금흐름이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조정됩니다.

만약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가 중단된 경우에, 위험회피대상 예상현금흐름이 여전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은 기타포괄손익에 남겨 둡니다. 그렇지 않다면,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은 재분류조정으로 즉시 당기손익으로 처리됩니다. 중단 이후에 위험회피대상 예상현금흐름이 발생한다면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은 위에서 설명된 것과 같이 기초 거래의 특성에 따라 회계처리되어야 합니다.

3) 해외사업장순투자의 위험회피

해외사업장순투자의 위험회피는 순투자의 일부분으로 회계처리되는 화폐성항목에 대한 위험회피를 포함하며, 현금흐름위험회피와 유사한 방법으로 회계처리됩니다. 위험회피수단에서 발생하는 손익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되며, 비효과적인 부분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해외사업장의 제거 시, 자본으로 인식된 누적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이전됩니다.

2-16 공정가치

공정가치는 가격이 직접 관측가능한지 아니면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여 추정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면서 수취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하게 될 가격입니다.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추정함에 있어 당사는 시장참여자가 측정일에 자산이나 부채의 가격을 결정할 때 고려하는 자산이나 부채의 특성을 고려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주식기준보상거래,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 '리스'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리스거래,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 및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의 사용가치와 같이 공정가치와 일부 유사하나 공정가치가 아닌 측정치를 제외하고는 측정 또는 공시목적상 공정가치는 상기에서 설명한 원칙에 따라 결정됩니다.

또한 재무보고목적상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의 관측가능한 정도와 공정가치측정치 전체에 대한 투입변수의 유의성에 기초하여 다음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공정가치측정치를 수준 1, 2 또는 3으로 분류합니다.

- | | |
|--|---|
| (수준 1) 측정일에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접근 가능한 활성시장의(조정되지 않은) 시가 | 공 |
| 가 | 시 |
| (수준 2) 수준 1의 공시가격 이외에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관 | 측 |
| 가능한 투입변수 | |
| (수준 3)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 |

2-17 현금배당

당사는 배당을 지급하기 위해 분배가 승인되고 더 이상 당사에겐 재량이 없는 시점에 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주주에 대한 분배는 주주에 의한 승인을 필요로 합니다. 대응되는 금액은 자본에 직접 반영하고 있습니다.

2-18 중요한 판단과 추정불확실성의 주요 원천

주석 2에서 기술된 당사의 회계정책을 적용함에 있어서, 경영진은 다른 자료로부터 쉽게 식별할 수 없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에 대한 판단, 추정 및 가정을 하여야 합니다. 퇴직급여부채 등의 추정과 관련 가정은 역사적 경험과 관련성이 있다고 간주되는 기타 요인들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결과는 이러한 추정치들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추정과 기초적인 가정은 계속하여 검토됩니다. 회계추정에 대한 수정은 그러한 수정이 오직 당해 기간에만 영향을 미칠 경우 수정이 이루어진 기간에 인식되며, 당기와 미래 기간 모두 영향을 미칠 경우 수정이 이루어진 기간과 미래 기간에 인식됩니다.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구 분	제 44 기	제 43 기
주당배당금 (원)	6,700	10,500
배당총액 (원)	229,645,307,300	359,891,899,500
시가배당율 (%)	2.9	3.7

※ 시가배당율 산정시 시가는 주주명부폐쇄일 2거래일 전 과거 1주일간의 종가를 산술평균한 주가를 사용 하였습니다.

※ 상세한 재무제표 사항은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추후 공시 예정인 당사의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	-	-

- 해당사항 없음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2조(목적) 1. ~ 19. 생략 20. 전자 상거래 및 인터넷 관련 사업 21. ~ 28. 생략 29. 위 각호에 관련되는 일체의 사업	제2조(목적) 1. ~ 19. 생략 <u>20. 각 호에 관련되는 전자 상거래 및 통신판매 관련 사업</u> 21. ~ 28. 생략 <u>29. 토목 및 건설자재의 제조, 가공, 판매 및 시공업</u> <u>30. 위 각호에 관련되는 일체의 사업</u>	각 호와 관련되는 판매 형태의 다양성 확보 및 건자재 사업 영위를 위하여 정관상 용어 변경 및 사업 목적 추가
제 39조 (위원회) ① 본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이사회 내에 다음 각호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6.03.18> 1. (삭제 2016.03.18) 2. 감사위원회 3.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4. 투명경영위원회 <신설 2016.03.18> 5.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	제 39조 (위원회) ① 본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이사회 내에 다음 각호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0.03.25> 1. (삭제 2016.03.18) 2. 감사위원회 3.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4. 투명경영위원회 <신설 2016.03.18> <u>5. 보상위원회 <신설 2020.03.25></u> 6.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	이사회 내 위원회 명문화
제31조 (이사의 수) ① 본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 9명 이하로 한다 <개정 2016.03.18>	제31조 (이사의 수) ① 본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 <u>11명</u> 이하로 한다. <개정 2020.03.25>	이사회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이사의 수 증원
<신 설>	부 칙 (2020.03.25) 제1조 (시행일) 본 정관은 <u>2020년 3월 25일</u> 부터 시행한다.	정관시행일: 2020. 3. 25(예정) - 정기주주총회일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이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 · 생년월일 · 추천인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사외이사후보자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이영준	1965.09.13	사내이사	-	이사회
전운배	1960.02.17	사외이사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이금로	1965.09.10	사외이사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강정원	1965.11.10	사외이사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최현민	1958.10.13	사외이사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정중원	1956.02.09	사외이사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오성엽	1960.05.27	기타비상무이사	계열회사 임원	이사회
총 (7) 명				

* 롯데케미칼(주) 최대주주는 롯데지주(주)임.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이영준	롯데케미칼(주) 첨단소재사업 대표	2020. ~ 현재 2016. ~ 2019. 2014. ~ 2016. 2013. ~ 2014. 2012. ~ 2013. 2009. ~ 2012.	롯데케미칼(주) 첨단소재사업 대표 롯데첨단소재(주) PC사업본부장 삼성SDI 소재부문 PC사업부장 제일모직 여수사업장 공장장 제일모직 개발팀 팀장 제일모직 케미칼 연구소장	없음
전운배	법무법인 광장 고문	2019. ~ 현재 2017. ~ 2019. 2013. ~ 2016. 2011. ~ 2013. 2009. ~ 2011.	법무법인 광장 고문 한국기술교육대 고용노동연수원 원장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 고용노동부 노사정책국장	없음
이금로	법무법인 솔 대표변호사	2019. ~ 현재 2018. ~ 2019. 2017. ~ 2018. 2015. ~ 2017. 2015. ~ 2015. 2013. ~ 2015. 2012. ~ 2013. 2011. ~ 2012.	법무법인 솔 대표변호사 대전고등검찰청 및 수원고등검찰청 검사장 법무부 차관(장관 직무대행)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대전고등검찰청 차장검사 서울중앙지검 및 대구지검 차장검사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수사기획관	없음
강정원	고려대학교 화공생명공학과 교수	2002. ~ 현재 2020. ~ 현재 2018. ~ 2018. 2017. ~ 2019.	고려대학교 화공생명공학과 교수 대한 연구환경안전협회 회장 한국화학공학회 부회장 고려대 테크노컴플렉스 부원장	없음
최현민	세무법인 다솔리더스 대표세무사	2020. ~ 현재 2017. ~ 2019. 2016. ~ 2016. 2015. ~ 2015. 2014. ~ 2014. 2013. ~ 2013. 2012. ~ 2012. 2011. ~ 2011. 2010. ~ 2010.	세무법인 다솔리더스 대표세무사 세무법인 이원 대표세무사 부산지방국세청 청장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국세청 자산과세국장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장 국방대학원 안보과정(연수) 대구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국세청 종합부동산세 과장	없음

정중원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	2016. ~ 현재 2018.3 ~ 2020.2 2017.3 ~ 2019.10 2012. ~ 2014. 2012. ~ 2014. 2011. ~ 2012. 2011. ~ 2011. 2008. ~ 2010.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 (주)팜스코 사외이사 롯데손해보험(주) 사외이사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경쟁위원회 부의 장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장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조정관	없음
오성엽	롯데지주(주) 커뮤니케이션실장	2017. ~ 현재 2016. ~ 2017. 2013. ~ 2016. 2012. ~ 2013. 2010. ~ 2012.	롯데지주(주) 커뮤니케이션실장 롯데정밀화학(주) 대표이사 롯데케미칼(주) 모노머사업본부장 롯데케미칼(주) 기획부문장 롯데케미칼(주) 기획, 재무/회계 담당임원	없음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이영준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전운배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이금로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강정원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최현민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정중원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오성엽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전운배 후보자(사외이사 후보) 1. 사외이사의 기본적 역할 및 직무 수행 사외이사의 선임이 법률 규정에 따라 강제되는 것은, 소액주주를 포함한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존재하는 상장회사의 경영이 적법하고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외이사에게 감시자로서의 역할 수행을 기대하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외이사의 역할을 고려할 때, 저는 롯데케미칼의 사외이사 후보자로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저는 이사회 의 일원으로서 이사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결정이 오로지 회사의 이익을 위해 최선의 방향으로 이루어지도록 전문성 및 역량을 발휘하도록 하겠습니다. 롯데케미칼의 사외이사로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화학회사로서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을 통해 인류의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에 기여하기 위한 롯데케미칼의 경영 목표에 따라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회사의 기업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맡은바 임무를 다 하겠습니다.

회사의 성장을 위해서는 각 구성원이 각자 부담하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저는 사외이사로서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한 모든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각 사안에 대한 충분한 이해 하에 실질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법령이나 정관에 반함이 없이 회사의 이익을 위한 적법한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중히 판단하겠습니다.

2. 사외이사의 의무와 책임

저는 롯데케미칼의 사외이사로서의 직무 수행 과정에서 저의 지위를 이용하여 저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합니다. 법령상 규정에 따라 자기거래, 경영, 회사기회 유용 등 회사와 이해가 상충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직무 수행 과정에서 회사에 관해 지득한 비밀 기타 정보를 공개하거나 제3자에게 전달하지 않고, 저 또는 제3자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이용하지 않겠습니다.

사외이사는 경영진이나 특정 주주의 대리인이 아닌 회사의 수임인이라는 점을 명확히 이해하고 있으며, 독립적인 지위에서 회사의 경영이 적법, 건전하게 이루어지는지 철저히 감독하고, 특히 다른 이사 및 경영진의 업무집행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는지 면밀하게 감시하여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다 하고자 합니다.

3. 사외이사로서의 전문성

1976년 설립된 롯데케미칼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화학회사로서 국내 주요 석유화학 단지인 여수, 대산, 울산에 국제적 규모의 생산시설을 보유하고, 현재 글로벌 Top 7 화학 회사로의 도약을 목표로 글로벌 시장 개척에 힘쓰고 있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회사의 성장의 배경에는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생산시설의 증설과 사업확장, 친환경 제품 개발과 미래 신성장 동력의 확보를 위한 치밀한 연구와 제품개발,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수많은 경영판단이 있었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저는 경제학, 행정학, 노사관계학을 전공한 후,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및 한국기술교육대 고용노동연수원장을 역임하였습니다. 저의 노사 정책에 대한 다양한 경험은 글로벌 화학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대내외적으로 급격한 환경변화에 유연성을 갖고 다양한 정책을 적극 수용하고 있는 롯데케미칼의 사외이사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저는 이와 같은 전문성을 살려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통해 이사회 내에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자 합니다.

저는 앞으로 롯데케미칼의 사업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에서의 저의 경험과 전공자로서의 지식을 적극 활용하여 롯데케미칼의 다음 단계로의 도약을 도모할 수 있도록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고, 의사결정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 사외이사로서의 독립성

저에게 상법상의 결격사유 등 사외이사로서의 직무수행에 해가 될만한 사정은 없으며, 향후 직무 수행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인하여 혹시라도 회사 이익과 저의 이해관계가 상충될 우려가 있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회사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자진하여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

겠습니다.

또한, 저는 롯데케미칼의 사외이사로서 윤리의식과 책임의식을 갖고 독립적인 지위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조화를 모색하는 한편, 회사 및 전체 주주의 이익을 우선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것입니다.

이금로 후보자(사외이사 후보)

1. 사외이사의 기본적 역할 및 직무 수행

사외이사의 선임이 법률 규정에 따라 강제되는 것은, 소액주주를 포함한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존재하는 상장회사의 경영이 적법하고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외이사에게 감시자로서의 역할 수행을 기대하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외이사의 역할을 고려할 때, 저는 롯데케미칼의 사외이사 후보자로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저는 이사회 의 일원으로서 이사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결정이 오로지 회사의 이익을 위해 최선의 방향으로 이루어지도록 전문성 및 역량을 발휘하도록 하겠습니다. 롯데케미칼의 사외이사로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화학회사로서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을 통해 인류의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에 기여하기 위한 롯데케미칼의 경영 목표에 따라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회사의 기업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맡은바 임무를 다 하겠습니다.

회사의 성장을 위해서는 각 구성원이 각자 부담하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저는 사외이사로서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한 모든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각 사안에 대한 충분한 이해 하에 실질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법령이나 정관에 반함이 없이 회사의 이익을 위한 적법한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중히 판단하겠습니다.

2. 사외이사의 의무와 책임

저는 롯데케미칼의 사외이사로서의 직무 수행 과정에서 저의 지위를 이용하여 저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합니다. 법령상 규정에 따라 자기거래, 경영, 회사기회 유용 등 회사와 이해가 상충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직무 수행 과정에서 회사에 관해 지득한 비밀 기타 정보를 공개하거나 제3자에게 전달하지 않고, 저 또는 제3자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이용하지 않겠습니다.

사외이사는 경영진이나 특정 주주의 대리인이 아닌 회사의 수임인이라는 점을 명확히 이해하고 있으며, 독립적인 지위에서 회사의 경영이 적법, 건전하게 이루어지는지 철저히 감독하고, 특히 다른 이사 및 경영진의 업무집행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는지 면밀하게 감시하여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3. 사외이사로서의 전문성

1976년 설립된 롯데케미칼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화학회사로서 국내 주요 석유화학단지인 여수, 대산, 울산에 국제적 규모의 생산시설을 보유하고, 현재 글로벌 Top 7 화학 회사로의 도약을 목표로 글로벌 시장 개척에 힘쓰고 있는 부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회사의 성장의 배경에는 판매 시장의 다변화를 위한 치밀한 연구와 제품개발,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수많은 경영판단이 있었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저는 법학을 전공한 후, 수원고등검찰청 검사장 및 법무부 차관 등 역임하였습니다. 다양한 법률적

경험을 바탕으로 글로벌 화학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대내외 급격한 환경변화에 유연성을 갖고 다양한 정책을 적극 수용하고 있는 롯데케미칼의 사외이사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저는 이와 같은 전문성을 살려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통해 이사회 내에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자 합니다.

저는 앞으로 롯데케미칼의 사업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에서의 저의 경험과 전공자로서의 지식을 적극 활용하여 롯데케미칼의 다음 단계로의 도약을 도모할 수 있도록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고, 의사결정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 사외이사로서의 독립성

저에게 상법상의 결격사유 등 사외이사로서의 직무수행에 해가 될만한 사정은 없으며, 향후 직무수행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인하여 혹시라도 회사 이익과 저의 이해관계가 상충될 우려가 있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회사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자진하여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는 롯데케미칼의 사외이사로서 윤리의식과 책임의식을 갖고 독립적인 지위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조화를 모색하는 한편, 회사 및 전체 주주의 이익을 우선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것입니다.

강정원 후보자(사외이사 후보)

1. 사외이사의 기본적 역할 및 직무 수행

사외이사의 선임이 법률 규정에 따라 강제되는 것은, 소액주주를 포함한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존재하는 상장회사의 경영이 적법하고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외이사에게 감시자로서의 역할 수행을 기대하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외이사의 역할을 고려할 때, 저는 롯데케미칼의 사외이사 후보자로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저는 이사회의 일원으로서 이사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결정이 오로지 회사의 이익을 위해 최선의 방향으로 이루어지도록 전문성 및 역량을 발휘하도록 하겠습니다. 롯데케미칼의 사외이사로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화학회사로서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을 통해 인류의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에 기여하기 위한 롯데케미칼의 경영 목표에 따라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회사의 기업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맡은바 임무를 다 하겠습니다.

회사의 성장을 위해서는 각 구성원이 각자 부담하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저는 사외이사로서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한 모든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각 사안에 대한 충분한 이해 하에 실질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법령이나 정관에 반함이 없이 회사의 이익을 위한 적법한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중히 판단하겠습니다.

2. 사외이사의 의무와 책임

저는 롯데케미칼의 사외이사로서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저의 지위를 이용하여 저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합니다. 법령상 규정에 따라 자기거래, 경영, 회사기회 유용 등 회사와 이해가 상충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직무수행 과정에서 회사에 관해 지득한 비밀 기타 정보

를 공개하거나 제3자에게 전달하지 않고, 저 또는 제3자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이용하지 않겠습니다.

사외이사는 경영진이나 특정 주주의 대리인이 아닌 회사의 수임인이라는 점을 명확히 이해하고 있으며, 독립적인 지위에서 회사의 경영이 적법, 건전하게 이루어지는지 철저히 감독하고, 특히 다른 이사 및 경영진의 업무집행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는지 면밀하게 감시하여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3. 사외이사로서의 전문성

1976년 설립된 롯데케미칼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화학회사로서 국내 주요 석유화학단지인 여수, 대산, 울산에 국제적 규모의 생산시설을 보유하고, 현재 글로벌 Top 7 화학 회사로의 도약을 목표로 글로벌 시장 개척에 힘쓰고 있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회사의 성장의 배경에는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생산시설의 증설과 사업확장, 친환경 제품 개발과 미래 신성장 동력의 확보를 위한 치밀한 연구와 제품개발,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수많은 경영판단이 있었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저는 현재 고려대학교 공과대학 화학생명공학과 교수로서 학술 활동을 지속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저의 전공 및 실무적 경험은 글로벌 화학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미래 트렌드 대응과 제품 개발을 최우선시 하는 롯데케미칼의 사외이사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저는 이와 같은 전문성을 살려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통해 이사회 내에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자 합니다.

저는 앞으로 롯데케미칼의 사업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에서의 저의 경험과 전공자로서의 지식을 적극 활용하여 롯데케미칼의 다음 단계로의 도약을 도모할 수 있도록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고, 의사결정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 사외이사로서의 독립성

저에게 상법상의 결격사유 등 사외이사로서의 직무수행에 해가 될만한 사정은 없으며, 향후 직무 수행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인하여 혹시라도 회사 이익과 저의 이해관계가 상충될 우려가 있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회사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자진하여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는 롯데케미칼의 사외이사로서 윤리의식과 책임의식을 갖고 독립적인 지위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조화를 모색하는 한편, 회사 및 전체 주주의 이익을 우선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것입니다.

최현민 후보자(사외이사 후보)

1. 사외이사의 기본적 역할 및 직무 수행

사외이사의 선임이 법률 규정에 따라 강제되는 것은, 소액주주를 포함한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존재하는 상장회사의 경영이 적법하고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외이사에게 감시자로서의 역할 수행을 기대하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외이사의 역할을 고려할 때, 저는 롯데케미칼의 사외이사 후보자로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저는 이사회 의원으로 이사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결정이 오로지 회사의 이익을 위해 최선의 방향으로 이루어지도록 전문성 및 역량을 발휘하도록 하겠습니다. 롯데케미칼의 사외이사로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화학회사로서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을 통해 인류의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에 기여하기 위한 롯데케미칼의 경영 목표에 따라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회사의 기업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맡은바 임무를 다 하겠습니다.

회사의 성장을 위해서는 각 구성원이 각자 부담하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저는 사외이사로서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한 모든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각 사안에 대한 충분한 이해 하에 실질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법령이나 정관에 반함이 없이 회사의 이익을 위한 적법한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중히 판단하겠습니다.

2. 사외이사의 의무와 책임

저는 롯데케미칼의 사외이사로서의 직무 수행 과정에서 저의 지위를 이용하여 저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합니다. 법령상 규정에 따라 자기거래, 경영, 회사기회 유용 등 회사와 이해가 상충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직무 수행 과정에서 회사에 관해 지득한 비밀 기타 정보를 공개하거나 제3자에게 전달하지 않고, 저 또는 제3자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이용하지 않겠습니다.

사외이사는 경영진이나 특정 주주의 대리인이 아닌 회사의 수임인이라는 점을 명확히 이해하고 있으며, 독립적인 지위에서 회사의 경영이 적법, 건전하게 이루어지는지 철저히 감독하고, 특히 다른 이사 및 경영진의 업무집행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는지 면밀하게 감시하여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3. 사외이사로서의 전문성

1976년 설립된 롯데케미칼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화학회사로서 국내 주요 석유화학단지인 여수, 대산, 울산에 국제적 규모의 생산시설을 보유하고, 현재 글로벌 Top 7 화학 회사로의 도약을 목표로 글로벌 시장 개척에 힘쓰고 있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회사의 성장의 배경에는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생산시설의 증설과 사업확장, 친환경 제품 개발과 미래 신성장 동력의 확보를 위한 치밀한 연구와 제품개발,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수많은 경영판단이 있었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저는 경영학을 전공한 후, 국세청 국장 및 부산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하였습니다. 저의 전공 및 다양한 세무 정책에 대한 경험은 글로벌 화학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대내외적으로 급격한 환경변화에 유연성을 갖고 다양한 정책을 적극 수용하고 있는 롯데케미칼의 사외이사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저는 이와 같은 전문성을 살려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통해 이사회 내에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자 합니다.

저는 앞으로 롯데케미칼의 사업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에서의 저의 경험과 전공자로서의 지식을 적극 활용하여 롯데케미칼의 다음 단계로의 도약을 도모할 수 있도록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고, 의사결정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 사외이사로서의 독립성

저에게 상법상의 결격사유 등 사외이사로서의 직무수행에 해가 될만한 사정은 없으며, 향후 직무 수

행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인하여 혹시라도 회사 이익과 저의 이해관계가 상충될 우려가 있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회사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자진하여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는 롯데케미칼의 사외이사로서 윤리의식과 책임의식을 갖고 독립적인 지위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조화를 모색하는 한편, 회사 및 전체 주주의 이익을 우선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것 입니다.

정중원 후보자(사외이사 후보)

1. 사외이사의 기본적 역할 및 직무 수행

사외이사의 선임이 법률 규정에 따라 강제되는 것은, 소액주주를 포함한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존재하는 상장회사의 경영이 적법하고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외이사에게 감시자로서의 역할 수행을 기대하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외이사의 역할을 고려할 때, 저는 롯데케미칼의 사외이사 후보자로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저는 이사회 의 일원으로서 이사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결정이 오로지 회사의 이익을 위해 최선의 방향으로 이루어지도록 전문성 및 역량을 발휘하도록 하겠습니다. 롯데케미칼의 사외이사로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화학회사로서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을 통해 인류의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에 기여하기 위한 롯데케미칼의 경영 목표에 따라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회사의 기업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맡은바 임무를 다 하겠습니다.

회사의 성장을 위해서는 각 구성원이 각자 부담하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저는 사외이사로서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한 모든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각 사안에 대한 충분한 이해 하에 실질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법령이나 정관에 반함이 없이 회사의 이익을 위한 적법한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중히 판단하겠습니다.

2. 사외이사의 의무와 책임

저는 롯데케미칼의 사외이사로서의 직무 수행 과정에서 저의 지위를 이용하여 저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합니다. 법령상 규정에 따라 자기거래, 경영, 회사기회 유용 등 회사와 이해가 상충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직무 수행 과정에서 회사에 관해 지득한 비밀 기타 정보를 공개하거나 제3자에게 전달하지 않고, 저 또는 제3자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이용하지 않겠습니다.

사외이사는 경영진이나 특정 주주의 대리인이 아닌 회사의 수임인이라는 점을 명확히 이해하고 있으며, 독립적인 지위에서 회사의 경영이 적법, 건전하게 이루어지는지 철저히 감독하고, 특히 다른 이사 및 경영진의 업무집행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는지 면밀하게 감시하여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3. 사외이사로서의 전문성

1976년 설립된 롯데케미칼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화학회사로서 국내 주요 석유화학단지인 여수, 대산, 울산에 국제적 규모의 생산시설을 보유하고, 현재 글로벌 Top 7 화학 회사로의 도약을 목표로

글로벌 시장 개척에 힘쓰고 있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회사의 성장의 배경에는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생산시설의 증설과 사업확장, 친환경 제품 개발과 미래 신성장 동력의 확보를 위한 치밀한 연구와 제품개발,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수많은 경영판단이 있었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저는 법학을 전공한 후,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 국장 및 상임위원과 롯데손해보험(주)의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을 역임하였습니다. 이러한 대기업의 공정거래 정책 개발/운영 및 금융사의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의 경험을 바탕으로 글로벌 화학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대내외 급격한 환경변화에 유연성을 갖고 특히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적극적으로 추진, 운영하고 있는 롯데케미칼의 사외이사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저는 이와 같은 전문성을 살려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통해 이사회 내에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자 합니다.

저는 앞으로 롯데케미칼의 사업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에서의 저의 경험과 전공자로서의 지식을 적극 활용하여 롯데케미칼의 다음 단계로의 도약을 도모할 수 있도록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고, 의사결정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 사외이사로서의 독립성

저에게 상법상의 결격사유 등 사외이사로서의 직무수행에 해가 될만한 사정은 없으며, 향후 직무수행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인하여 혹시라도 회사 이익과 저의 이해관계가 상충될 우려가 있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회사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자진하여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는 롯데케미칼의 사외이사로서 윤리의식과 책임의식을 갖고 독립적인 지위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조화를 모색하는 한편, 회사 및 전체 주주의 이익을 우선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것입니다.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이영준 후보자(사내이사 후보)

- 후보자는 당사 첨단소재사업의 폭넓은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주요 업무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균형있는 시각을 보유하고 대규모 조직을 이끈 경험과 리더십을 갖추고 있어 안정적인 조직운영에 기여할 수 있음.

전운배 후보자(사외이사 후보)

- 후보자는 관련법상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기타 사외이사로서의 독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사정도 존재하지 않아 적법하게 사외이사 자격을 갖추고 있음.

- 향후 사외이사로서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고용노동연수원장 및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한 노사 전문가로서 폭넓은 실무 경험을 활용하여, 회사의 주요 사업과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이금로 후보자(사외이사 후보)

- 후보자는 관련법상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기타 사외이사로서의 독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사정도 존재하지 않아 적법하게 사외이사 자격을 갖추고 있음.

- 향후 사외이사로서 법무부 차관 및 고등검찰청 검사장을 역임한 법률 전문가로서 폭넓은 실무 경험을 활용하여, 회사의 주요 사업과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으로 생각됨.

강정원 후보자(사외이사 후보)

- 후보자는 관련법상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기타 사외이사로서의 독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사정도 존재하지 않아 적법하게 사외이사 자격을 갖추고 있음.
- 향후 사외이사로서 고려대학교 화공생명공학과 교수로서 해당분야 전문가로서 다수의 연구와 폭넓은 지식 및 경험을 활용하여, 회사의 주요 사업과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최현민 후보자(사외이사 후보)

- 후보자는 관련법상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기타 사외이사로서의 독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사정도 존재하지 않아 적법하게 사외이사 자격을 갖추고 있음.
- 향후 사외이사로서 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회계/세무분야 전문가로서 폭넓은 실무 경험을 활용하여, 회사의 주요 사업과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정중원 후보자(사외이사 후보)

- 후보자는 관련법상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기타 사외이사로서의 독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사정도 존재하지 않아 적법하게 사외이사 자격을 갖추고 있음.
- 향후 사외이사로서 공정거래 법률 전문가로서 폭 넓은 실무 경험을 활용하여, 회사의 주요 사업과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오성엽 후보자(기타비상무이사 후보)

후보자는 롯데케미칼 본부장, 롯데정밀화학(주) 대표이사 및 롯데지주(주) 커뮤니케이션 실장 등 다양한 업무 경험과 전문적인 역량을 갖추고 있어 회사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경영전략 등 수립 과정에서 거시적인 관점에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

확인서

확 인 서

후보자 본인은 본 서류에 기재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3-15조 제3항 제3호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사항이

사실과 일치함을 확인합니다.

2020. 3. 4.

보고자

이 영준

(서명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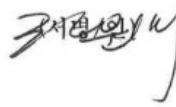
확 인 서

후보자 본인은 본 서류에 기재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3-15조 제3항 제3호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사항이

사실과 일치함을 확인합니다.

2020. 3. 4.

보고자 전 문 배 

확 인 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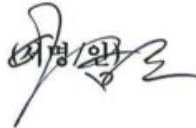
후보자 본인은 본 서류에 기재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3-15조 제3항 제3호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사항이

사실과 일치함을 확인합니다.

2020. 3. 4.

보고자

이 금 로 

확 인 서

후보자 본인은 본 서류에 기재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3-15조 제3항 제3호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사항이

사실과 일치함을 확인합니다.

2020. 3. 4.

보고자

강 정원

(서명/인)



확 인 서

후보자 본인은 본 서류에 기재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3-15조 제3항 제3호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사항이

사실과 일치함을 확인합니다.

2020. 3. 4.

보고자

최현민

확 인 서

후보자 본인은 본 서류에 기재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3-15조 제3항 제3호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사항이

사실과 일치함을 확인합니다.

2020. 3. 4.

보고자

정 중 원  (서명/인)

확 인 서

후보자 본인은 본 서류에 기재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3-15조 제3항 제3호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사항이

사실과 일치함을 확인합니다.

2020. 3. 4.

보고자

오 성 영

(서명/인)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 · 생년월일 · 추천인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사외이사후보자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최현민	1958.10.13	사외이사	없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정중원	1956.02.09	사외이사	없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총 (2)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최현민	세무법인 다솔리더스 대표세무사	2020. ~ 현재 2017. ~ 2019. 2016. ~ 2016. 2015. ~ 2015. 2014. ~ 2014. 2013. ~ 2013. 2012. ~ 2012. 2011. ~ 2011. 2010. ~ 2010.	세무법인 다솔리더스 대표세무사 세무법인 이원 대표세무사 부산지방국세청 청장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국세청 자산과세국장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장 국방대학원 안보과정(연수) 대구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국세청 종합부동산세 과장	없음
정중원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	2016. ~ 현재 2018.3 ~ 2020.2 2017.3 ~ 2019.10 2012. ~ 2014. 2012. ~ 2014. 2011. ~ 2012. 2011. ~ 2011. 2008. ~ 2010.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 (주)팜스코 사외이사 롯데손해보험(주) 사외이사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경쟁위원회 부의 장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장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조정관	없음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최현민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정중원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 추천 사유

최현민 후보자(사외이사인 감사위원 후보자)

- 후보자는 감사위원으로서의 결격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기타 회사와의 거래 관계등 감사위원의 독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전혀 없으므로, 경영진 등의 영향력을 받지않는 독립적인 지위에서 책임감을 갖고 감사위원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기대함.
- 회계/세무분야 전문가로서 관련 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경영현안에 대한 의사결정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수 있도록 기여할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정중원 후보자(사외이사인 감사위원 후보자)

- 후보자는 감사위원으로서의 결격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기타 회사와의 거래 관계등 감사위원의 독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전혀 없으므로, 경영진 등의 영향력을 받지않는 독립적인 지위에서 책임감을 갖고 감사위원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기대함.
- 공정거래 법률 전문가로서 특별히 계열회사 간 내부거래의 공정성에 대하여 감사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확인서

확 인 서

후보자 본인은 본 서류에 기재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3-15조 제3항 제3호 가목, 다목, 라목의 사항이 사실과 일치함을
확인합니다.

2020. 3. 4.

보고자

최 현 민 (자명)

확 인 서

후보자 본인은 본 서류에 기재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3-15조 제3항 제3호 가목, 다목, 라목의 사항이 사실과 일치함을
확인합니다.

2020. 3. 4.

보고자

정 중 원

(서명인)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이사의 수 · 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단위 : 억원)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11 (6)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102

(전 기)

(단위 : 억원)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9 (5)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58
최고한도액	441

※ 기타 참고사항

- 1) 이사의 수 : 상기 이사의 수는 등기이사의 수임
- 2)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전기) : 등기이사 9명에 대한 실제 지급보수 총액임
- 3) 최고한도액(전기)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당기)
 - 전기(2019년도) : 등기이사 9명 및 미등기임원 전체 보수 최고한도액임
 - 당기(2020년도)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은 등기이사에 한함

□ 기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

가. 의안 제목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 변경의 건

나. 의안의 요지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1. 목적 이 규정은 임원의 퇴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롯데케미칼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임원에 대한 퇴직위로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변경 - 회사명 기재 - 퇴직금 → 퇴직위로금 용어 변경

2. 정의 임원은 주주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선임된 이사 및 감사로서 상근하는 자와 제3조에 열거된 집행임원을 말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이 규정에서 임원이라 함은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상무보 A, B를 포함한다)의 직급에 있는 자로서 상시 회사를 위해 사무처리를 하면서 매월 정기적으로 보수를 지급 받는 자를 말한다. ② 이 규정에서 퇴직위로금은 임원이 퇴직 시점에 재임기간 동안의 수고를 위로하기 위하여 회사에서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	* 변경 - 임원의 정의 명확화 - 퇴직위로금 용어 정의																		
(신설)	제3조 퇴직 시점 ① 임원의 퇴직 시점은 임기만료에 따른 퇴임, 사임, 상당역(고문 또는 자문) 선임 등 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한 때로 한다. ② 임원이 계열회사로 진출하는 경우에는 계열사로 전입한 날의 직전일을 퇴직 시점으로 한다.	* 신설																		
4. 계산기준 퇴직금 산출은 퇴직시의 보수월액에 퇴직금 지급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5. 보수 월액 보수 월액은 매월 지급되는 기본 보수에서 업무활동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제4조 퇴직위로금 산출 방법 임원의 퇴직위로금은 퇴직 당시의 연간 기본급을 월할한 금액에 재임기간과 제6조에 따른 퇴직위로금 지급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하며, 퇴직위로금 산정의 기초금액인 기본급에는 역할급이나 직책급, 변동급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단, 전문임원의 업적급은 중위등급으로 산정하여 기본급에 가산한다.	* 변경 - '계산 기준'과 '보수 월액' 조항을 '퇴직위로금 산출 방법'으로 통합 - 산출방식 구체화																		
6. 근속년수 계산 근속년수의 계산은 선임일로부터 기산하여 최종근무 한 날까지로 하되 년 미만은 월할하고 월 미만은 1월로 한다.	제5조 재임기간 산정 임원의 재임기간은 등기여부를 불문하고 임원으로 최초 선임된 날부터 퇴직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며, 재임 년수에 1년 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에는 월할계산하고 1개월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1개월로 계산한다. 단, 계열회사로 진출하는 경우에는 만 1년 미만 재임한 경우에도 월할계산하여 재임기간을 산정한다.	* 변경 - 조항 이동 6조 → 5조 - 근속년수 계산 구체화 - 재임기간 산정방식 세분화, 계열회사 진출시 재임기간 산정방식 구체적으로 명시																		
3. 지급 기준 3.1 임원이 퇴직하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의하여 퇴직금을 지급한다. 다만, 총임은 계속 근무로 본다.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th>근속년수</th><th>지급률</th></tr> </thead> <tbody> <tr> <td>회장, 부회장, 사장, 대표이사</td><td>근속 매 1년</td><td>3.0</td></tr> <tr> <td>부사장, 전무, 상무, 상무보A, 상무보B, 감사</td><td>근속 매 1년</td><td>2.5</td></tr> </tbody> </table> 단, 이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 임원은 개별 위임계약서에 명시된 지급률에 따른다. 3.2 고문(상근, 비상근), 촉탁, 자문은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구분	근속년수	지급률	회장, 부회장, 사장, 대표이사	근속 매 1년	3.0	부사장, 전무, 상무, 상무보A, 상무보B, 감사	근속 매 1년	2.5	제6조 퇴직위로금 지급률 ① 퇴직위로금 지급률은 각 직급에 따라 다음 표와 같이 적용한다. <table border="1"> <thead> <tr> <th>직급</th><th>근속년수</th><th>지급률</th></tr> </thead> <tbody> <tr> <td>회장, 부회장, 사장</td><td>근속 매 1년</td><td>3.0</td></tr> <tr> <td>부사장, 전무, 상무, 상무보A, 상무보B, 상근 감사</td><td>근속 매 1년</td><td>2.5</td></tr> </tbody> </table> ② 부사장 이하 직급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 직책급이 지급되는 임원에게는 사장 이상의 퇴직위로금 지급률을 적용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제1항 내지 제2항의 지급률의 한도 내에서 이와 다른 퇴직위로금 지급률을 정하여 임원과 개별 위임계약서를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개별 위임계약서에 명시된 지급률에 따른다.	직급	근속년수	지급률	회장, 부회장, 사장	근속 매 1년	3.0	부사장, 전무, 상무, 상무보A, 상무보B, 상근 감사	근속 매 1년	2.5	* 변경 - 조항 이동 3조 → 6조 - 지급기준 → 퇴직위로금 지급률 명칭변경 - 대표이사 지급률 적용 대상 명확화 - 개별위임계약서에 따른 퇴직위로금 지급률 한도 설정 - 고문, 촉탁, 자문 관련 규정 삭제
구분	근속년수	지급률																		
회장, 부회장, 사장, 대표이사	근속 매 1년	3.0																		
부사장, 전무, 상무, 상무보A, 상무보B, 감사	근속 매 1년	2.5																		
직급	근속년수	지급률																		
회장, 부회장, 사장	근속 매 1년	3.0																		
부사장, 전무, 상무, 상무보A, 상무보B, 상근 감사	근속 매 1년	2.5																		

<신 설>	제7조 계열회사 전입·전출시 퇴직위로금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원이 계열회사로 전출하거나 계열회사로부터 전입하는 경우 전출 또는 전입회사와 협의하여 퇴직위로금을 이관함으로써 재임기간이 합산될 수 있도록 한다. 단, 임원 본인이 희망할 경우 계열회사 전출 또는 전입시점에 퇴직위로금을 정산할 수 있다.	* 신설 - 계열회사 전입 전출시 퇴직위로금 산정기준 신설, 명확화
7. 특별 공로금 지급 퇴직하는 임원으로서 재직 중 회사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임원에 대하여는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3조(지급 기준)에 의한 퇴직금 이외에 특별 공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특별공로금 재임기간중 회사발전에 공로가 있는 임원에 대하여는 이사회 결의로 퇴직위로금 범위 내에서 추가로 특별공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 변경 - 조항 이동 7조 → 8조 - 특별공로금권한 주주총회 의결에서 이사회 결의로 변경 - 특별공로금한도는 퇴직위로금 범위로 명시
(신설)	제9조 지급제한 임원이 본인의 위임 업무에 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귀책사유로 회사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거나 손실을 초래함으로써 법령 또는 회사의 다른 규정에 따라 해임되는 경우(주주총회의 해임결의 또는 법원의 해임판결을 받아 퇴임하는 경우 포함)에는 이사회 또는 이사회가 위임한 위원회의 결의로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신설

※ 참고사항

▶ 코로나 19 관련 안내에 관한 사항

-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하여 중앙방역대책본부 및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집단행사 방역관리 지침과 총회장 건물 보건안전수칙에 따라 총회장 건물 출입 시 열화상 카메라로 검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해당 건물 내에서는 마스크를 미착용시 출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자체적으로 참석주주분들께 총회장 입장 전 체온계를 이용해 체온 측정을 진행할 예정이며, 손소독제 비치 등 방역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총회에 참석하시는 주주분들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진행요원의 안내에 적극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주총 집중일 주총 개최 사유

- 해당 사항 없음